

연구보고 201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2012. 10.

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책임자 : 김 영 옥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윤 덕 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종 속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김 은 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이 남 희 (서울대 여성연구소 책임연구원)

유 정 미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연구교수)

최 윤 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여성가족부

본 보고서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여성가족부의 연구용역 의뢰를 받아 수행한 연구의 결과입니다. 보고서의 내용은 전적으로 연구진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목 차

I. 서론	1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3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5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16
II.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31
1. 비전과 목표	33
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35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36
4. 주요 지표 전망	40
III. 정책과제	47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9
2.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기반구축	65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80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02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20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8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57
부 록	171
1. 정책과제 일람표	173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184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191

표 목 차

<표 I-1>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 기본계획들	4
<표 I-2> 제2차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6
<표 III-1> 가정폭력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82
<표 III-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수	121
<표 III-3> 정부위원회 여성비율(2010~2011)	122
<표 III-4> 남녀불평등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138
<표 III-5> 교육 및 문화 분야 정책 인지도 및 평가	139
<표 III-6> 시도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연구·시범학교(2006년 이후)	141

그림 목 차

[그림 I-1]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17
[그림 I-2]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혈연가구 대비)	17
[그림 I-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18
[그림 I-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2000~2011년)	19
[그림 I-5]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20
[그림 I-6]	지니계수 추이(도시2인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21
[그림 I-7]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 기준)	22
[그림 I-8]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비	24
[그림 I-9]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25
[그림 III-1]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2000~2010년)	49
[그림 III-2]	차별 경험	50
[그림 III-3]	영유아보육 정책 우선순위(1순위)	66
[그림 III-4]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81
[그림 III-5]	성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3
[그림 III-6]	가정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3
[그림 III-7]	성매매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84
[그림 III-8]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비율	105
[그림 III-9]	우리나라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120
[그림 III-10]	국공립대학의 교수 채용에서 성별·전공계열별 임용률	123
[그림 III-11]	초·중등학교 관리직 교원의 성별 비율	124
[그림 III-12]	고등교육 여학생 비율 추이(1980년-2011년)	142
[그림 III-13]	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158
[그림 III-14]	총괄 담당자가 인식하는 환류 추진의 어려움	158
[그림 III-15]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어려움	159



서론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3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5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16

1.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수립근거와 의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본법」 제7조에 근거하여¹⁾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이 수립·시행되어 왔으며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이 올해로 마무리됨에 따라 새 계획의 수립을 앞두고 있다.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된 이래 15년이 흐르면서 호주제 폐지, 고용차별의 금지 및 적극적 고용조치의 시행,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금지법 제정 등 법·제도의 측면에서 성과가 있었다. 따라서 이제는 여성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지 않는가 하는 성급한 견해가 등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다가올 미래를 조망하면 여성정책기본계획에게 부여된 역할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다.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고용 없는 성장’ 추세가, 중장기적으로는 출산율 저하와 인구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의 둔화가 전망되고 있으며, 청년실업, 노인빈곤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평등과 사회통합을 위한 국가계획으로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이 갖는 의미가 더욱 커진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처음 수립될 때는 ‘취약여성의 보호’에 중점을 두었지만 점차 성평등의 추구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면서 여성과 무관해 보이는 정책들의 젠더합의를 찾고, 인력개발 및 고용정책, 산업정책, 재정정책 등 다양한 영역으로 여성정책의 외연이 확대되었다. 이 역할은 저출산·고령화, 고용 없는 성장 추이와 글로벌 경제의 불안정, 기후변화와 거대한 자연재해 등 정책환경의 변화 속에서 이전과는 다른 성장해법을 찾아야 하는 이 때 더욱 중요해진다. 왜냐하면 다양한 요인들이 연계되고 중층화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개별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한적인 효과를 낼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된 남녀의 역할과 지위를 의미하는 젠더관계가 특정 영역의 개별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교차이슈(cross-cutting issues)로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 고유정책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표면적으로는 그 프로그램들과 관련이 없어 보일지라도 교차이슈를 항상 고려하는 소위 주류화(mainstreaming)가 필요하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젠더관계를 교차이슈로 간주

1) 여성가족부 장관은 여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여성발전기본법 제7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동법 제8조)하여야 함.

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하여 개별 정책에서 젠더의 함의를 찾고 보완·수정함으로써 기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우리 사회에서 가시화되고 있는 새로운 위험들에 대한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정책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표 I-1> 여성정책기본계획과 관련 기본계획들

제1차 기본계획('98-'02)	제2차 기본계획('03-'07)	제3차 기본계획('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98-'02) · 제1차 성노동인육성기본계획('01-'05) · 여성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1999년 이래 매년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차 남녀고용평등기본계획('03-'07) · 제2차 성노동인육성기본계획('0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기본계획('08-'12) · 제3차 성노동인육성기본계획('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차 성과과학기술인력육성기본계획 ('04-'08) · 제1차 건강가족기본계획 ('06-'10) · 제1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새싹플랜('06-'08) · 제1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0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2차 성과과학기술인력육성기본계획 ('09-'13) · 제2차 건강가족기본계획 ('11-'15) · 제2차 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 보육정책 중장기계획 아이사랑플랜('09-'12) · 제2차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 ('11-'15) · 제1차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기본계획('10-'14) · 제1차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 ('10-'12)

젠더의제가 교차이슈로 작동함에 따라 고유정책과의 관계 설정 및 연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부상한다. <표 I-1>과 같이 여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온 15년 동안 본 계획 이외에 여성을 주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의 이해에 직결되는 기본계획이 10여개에 이른다.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성평등 달성을 목표로 하므로 단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뿐만이 아니라 모든 정책의 성별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 및 실행방향을 모색하게 된다. 따라서 여성정책기본계획은

여성과 무관해 보이는 각종 정책과 기본계획들이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s)을 갖춰서 목표로 하는 결과를 산출하도록 가이드 역할을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 이처럼 여성정책기본계획이 특정 영역의(sector specific) 정책 수립 및 운용의 방향타 역할을 수행하도록 국내의 각종 기본계획들과 연계하되, 중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2.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과제

가. 지난 15년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변화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1998-2002)」은 여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종합적 계획으로서 전 부처가 참여하여 처음 수립한 ‘국가계획’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1차 기본계획은 6대 기본전략과 20대 정책과제로 구성되었는데, 6개 기본전략 중 여성취업과 여성복지 향상분야의 과제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은 “실질적 남녀평등사회의 실현”이라는 비전 하에 “성 주류화”와 “협력체계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성 주류화가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 명시적으로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당시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는 여성정책 추진방향으로서 분리주의적이고 여성을 피해자로 인식하는 기존의 주변화된 성격을 탈피하여 여성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분야로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러한 바탕 하에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모든 정부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을 통합한다는 전략기조를 세우게 된 것이다. 이처럼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정책대상의 측면에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젠더관계)를 포괄하는 정책으로, 행정기구 내 정책 추진 주체의 측면에서 여성정책 전담부서만의 주변화된 접근을 넘어서서 모든 행정부처로 확대되었다는 점에 있다. 성 주류화 전략을 위한 정책도구로서 성별분리통계의 생산과 활용, 성별영향평가, 성 인지 예산, 공무원 성 인지 교육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었고, 이를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에 와서는 추진전략이 제시되지 않았고, ‘성숙한 성평등 사회’의 비전 아래 ‘여성의 역량 강화’와 ‘다양성과 차이 존중’을 전략목표로 하는 간결한 구조를 갖게 되었다. 정책과제영역도 인력, 권익, 성평

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등정책의 3개로 축소되었고, 과제간 구조를 보면 여성인력활용분야의 과제가 가장 우선분야로 배치된다. 이처럼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가치의 지향성이 약화되고 실용적 성격이 강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표 I-2〉 제2차와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3~2007)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비전	실질적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	비전	성숙한 성평등 사회
목표	1. 남녀의 조화로운 동반자 관계 형성 2. 지식기반 사회 여성의 경쟁력 강화 3. 사회 각 분야 여성의 대표성 제고 4. 여성의 복지증진 및 인권보호 강화	전략 목표	1. 여성의 역량 강화 2. 다양성과 차이 존중
추진 전략	성 주류화 협력체계 구축	정책 과제	3대 정책과제 14개 중과제 45개 소과제
정책 과제	10대 핵심 정책과제 115개 세부과제		
10대 과제	1. 정책에 양성평등 관점 통합 2.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 제고 3. 여성 인적자원의 개발과 활용 4.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 5. 사회·문화 분야 여성참여 확대 6. 평화·통일·국제협력에서의 여성의 기여 확대 7.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 8. 여성에 대한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9.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기반 조성 10. 평등문화 및 의식의 확산	3대 과제	여성인력 활용 2. 여성권의 보호 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강화

나.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

▶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새로운 정책집단의 설정 등 여성취업 지원

고용없는 성장과 금융위기 상황을 맞이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일자리 만들기에 중점이 두어졌고, 여성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특히 2008년에 제정된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촉진법」을 기반으로 재취업 훈련과 취업상담을 연동함으로써 일자리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둔다. 동 법을 근거로 하여 추진된 ‘여성새로일하기’ 사업은 경력단절 여성들을 취업 취약계층으로 간주하여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각종 직업상담 및 훈련, 취

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2012년 현재, 전국 약 100여개소의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운영). 이것은 주로 훈련정책에 집중되었던 과거의 여성 인력정책이 통합적 고용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전환된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2006년에 도입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경우, 2008년에는 기존의 1,0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대상사업장이 확대되었다.

▶ 남·녀 근로자를 모두 대상으로 하는 일·가정 양립지원 제도의 발전

제3차 계획기간 중의 커다란 변화는 직장과 가정생활의 양립 지원 의제가 전면 부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으로 개정함으로써 육아휴직급여와 대상자 확대 등 육아휴직제도 개선,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가족돌봄 휴직 청구권 등 모성보호를 넘어 남·녀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시행되었다.

※ 동 기간중 육아휴직제도 개선 사항

- 대상자 확대: 생후 3년 미만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09) →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11)
- 육아휴직급여 증액: 월 50만원 정액제(’09) → 통상임금의 100분의 40인 정률제(상한액: 월100만원, 하한액: 월50만원)(’11)

또한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 ※ 사업주는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근로자의 육아 지원을 위해 업무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 등을 할 수 있음.

기업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 활용을 촉진하고자 가족친화인증제도를(’08) 도입했고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어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시간제근무 활성화가 추진되었다.

▶ 여성·아동에 대한 폭력방지대책의 강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신상공개제도 도입, 아동·청소년부분 친고죄 폐지, 미성년자 성폭력범죄 공소시효 정지 등을 시행하였다. 특히 2011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부터 분리입법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폭력피해 보호시설 입소자와 가족 구성원의 생계비, 아동교육 지원비, 아동양육비,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취학 등의 지원근거가 새롭게 마련되었으며,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수사 등 종합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아동을 독립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정책 의제가 부상함에 따라 2008년 이후 여성·아동보호 대책 추진단 및 지역연대를 구성하고 아동에 대한 폭력범죄 예방과 안전 증진과제를 새로이 추진하였다. 즉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합동의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이 구성됨에 따라 ‘아동·여성 보호 종합대책’(’08.4),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09.10), ‘정부의 아동안전보완대책’(’10.6) 등이 차례로 마련되었다.

가정폭력 관련 정책으로는 피해자 보호정책 개선이 두드러진다. 2009년 가정폭력피해자보호법 개정을 통해 가정폭력피해자의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부여 및 여성긴급전화센터 1366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사자 보수교육을 의무화하였다.

성매매 대책은 유사·변종 성매매의 심각성이 계속되고, 성매매업소의 뚜렷한 감소추세가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성매매피해여성을 위한 보호·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자립·자활을 유도하는데 집중하였다. 성매매피해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조치도 이루어졌다.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 프로그램(Youth Keeper)의 개발 및 각급 학교와 PC방에서의 설치·운영(’10.6),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처벌수준의 강화(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4) 등이 그것이다.

▶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새로운 과제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산모도우미, 소외계층 가사 및 돌봄 지원

서비스 등의 세부과제가 추진되었다. 이는 돌봄 비용의 사회화(탈상품화) 및 돌봄의 공식화(탈가족화)를 통해 오랫동안 가족 내 여성이 수행해 왔던 돌봄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노인돌봄의 부담증가로 장기요양보험제도가 '08년 도입됨으로써 돌봄비용의 사회화 및 돌봄의 공식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전체 노인중 요양급여 수급자 비율: 3.9%('08년) → 5.9%('10)). 또한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서비스수요자의 입장에서 이용방식을 다변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이 실시되었다(※ '07 노인종합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08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가사간병지원사업, '09년 장애재활치료사업, '10년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이 도입되어 현재 7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양육 수당 등 시설 및 아동별 지원 확대로 2005년부터 보육예산은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1년 현재 GDP 대비 0.51%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육시설이용아동수, 보육료지원아동수도 함께 증가하여 왔으며 2012년부터 만 0-2세 무상보육이 시행되고 있다. 2007년부터는 양육자의 질병이나 야근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상황에서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시간제 돌봄 뿐 아니라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서비스도 다양화되어 왔다.

- ※ 0~5세 아동 중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 989,390명('05) → 1,348,729명('11)
- 보육료 지원 아동수: 342,604 ('05) → 991,310 ('11)
- 보육 예산 : 15,956억원('05) → 57,450억원('1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예산 : 22억('07) → 402억('11)
-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아동수 : 137천명('07) → 1,388천명('10)

▶ 취약집단을 세분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 경주

이 시기에는 다양한 가족과 여성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졌는데, 특히 한부모가족과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서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모자복지법에서 출발하여 모부자복지법('02), 한부모가족지원법('07)으로 범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대상자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왔다.

10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또한 최근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사업이 도입되어 청소년미혼모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다.

- ※ 2012년 현재 만12세미만 아동까지 아동양육비 지원
조손가족 및 미혼모가 양육하는 5세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시설생활 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 등 신규급여 도입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자금 용자규모 확대 : 20억원('08) → 40억원('10)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
- ※ 24세 미만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및 자립촉진수당 등 지급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어(「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08년)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이 확대되고 있으며 주요 서비스전달체계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21개소('06년) → 200개소('11년)로 확대되었다.

▶ 여성의원, 여성공무원의 소폭 증가

여성국회의원의 비율은 비례대표 여성할당제 도입으로 13.0%('04)로 증가한 이래 정체 상태를 보였다. 공직선거법에서 지역구의 30% 여성할당제를 규정하고 있으나 노력사항이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의 15%를 여성에게 의무할당한 결과, 지역구 의원중 여성비율이 7.7%(18대의 5.7%)로 증가함으로써 전체 국회의원중 여성비율이 15.7%로 증가하게 되었다(18대 13.7%).

지방의회 여성의원의 비중은 14.5%('06)이었으나 기초의회 중선거제와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여성 50% 의무할당제 도입 등에 힘입어 20.3%('10)로 증가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 40.8%('08)에서 41.8%('11)로 증가추세가 완만해지고 있다. 여성공무원 비율은 지방정부보다는 중앙정부에서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편이다. 중앙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은 46.1%('08) → 47.0%('11)로 증가하는 반면, 지방정부 여성공무원 비율은 29.3%('08) → 30.0%('11)로 증가한다.

▶ 성인지 예산제도의 시행과 성별영향평가의 확대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등 성 주류화 관련 제도가 법률에 근거하여 추진되면서 양적인 측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었다.

성별영향평가는 2004년 9개 기관 10개 과제를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 53개 기관 85개 과제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2006년도부터 행정안전부 국정시책합동평가 지표에 성별영향평가 과제수가 포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12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참여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된 총 과제수는 9,923개에 이른다(2011년 293개 기관, 2,954개 과제).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됨으로써(2012년 3월부터 시행) 대상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고, 평가결과가 정책개선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확대되었다.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성인지 예산제도 역시 양적 측면에서 성과가 적지 않았다.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는 29개 중앙행정기관의 195개 사업에 대해 작성되었으며, 2011년도 성인지 예산서에는 기금을 포괄하면서 전년도보다 기관과 사업이 확대되어 34개 기관 245개 사업에 대해 작성되었다(「국가재정법」의 개정으로('10) 일반예산 뿐 아니라 '기금'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11)으로 2012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다.

성인지 통계 생산을 확대하기 위해 2007년 「통계법」을 제정하면서 통계 생산의 사전 승인 항목으로 “성별 구분”을 포함시킨 데 이어, 2010년 통계책임관의 사무규정 개정을 통해 성인지 통계 생산에 대한 책임을 보다 강화하였다(“통계 중 자연인이 포함된 경우 성별로 구분한 성별 통계”를 작성하고 보급해야 한다는 규정 추가).

▶ ‘여성친화도시’를 통한 新 지역여성정책거버넌스 모형 시도

이제까지 민간부문, 여성단체와의 협력체계는 여성단체를 지원하거나, 정책 수행의 협조자로서 여성단체를 참여시키는 수준에 머물렀는데, 3차 계획기간에서는 성평등 정책목표를 다양한 주체들이 협력하여 추진하는 체계인 젠더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하고 실질적으로 가동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

히 정책 개발, 평가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여 새롭고 실제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고 사업추진 주체로서 여성단체, 사회적 기업 등과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는 협력체계가 구현되는 실제 틀로서 '여성친화도시' 모형이 시도되었고 전국의 30여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았다.

다.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한계

▶ 여성고용률 정체 등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변화의 지체

남녀고용평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제고하기 위한 과제들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지만, 실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010년 49.1%)과 남녀임금비(2010년 남성임금 100일 때 여성임금 63.9)의 개선은 느리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3차 기간동안 모성보호 법제 강화와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서비스가 개발·실행되었으나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력단절 완화 효과는 미미한 편이다. 지난 10년간 연령대별 여성고용의 변화에서 나타나듯이 35~39세 여성들의 고용률은 타 연령대와 달리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같이 경력단절 여성 문제는 여전히 여성노동시장의 특징으로 남아있다.

또한 취업 촉진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이고, 여성임금근로자의 40%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등 비정규직 중심의 여성 일자리 확대로 여성고용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비정규직과 영세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 미가입, 모성보호 미적용 등 정책서비스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고, 이 사각지대의 규모가 실질적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에 외형적인 제도 개선이 아니라 수혜 대상자를 늘리는 등 실질적 성과를 산출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제3차 계획 기간 중에는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남녀 통합형으로 제공되었는데,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요구된다. 직업훈련 제도가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계좌제로 전환되면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계좌발급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량배정 방식이 감소함과 동시에 계좌발급이 제한될 경우 여성훈련이 위축되는 결과가 나타나므로 다양한 훈련 방식을 일정기간, 일정 대상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 지역단위의 훈련사업도 고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통합조정되어 왔으나 지역

여성의 취업지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남녀간 통합으로 인하여 정책전달의 효율성은 제고되었으나 수요자 측면에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정책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 재정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보육서비스 만족도

미취학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는 양적 확대가 이루어졌으나, 주로 수요자 지원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었다. 향후 지속적인 예산 투입은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정책방향의 점검과 우선순위의 정비가 필요하다. 보육서비스가 보육수요에 맞게 확대되고 있는지를 재점검하고, 수요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고 실수요자에 맞는 우선순위 기준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 성별고정관념의 유지로 반쪽짜리 일가정양립지원 성과

가사와 양육의 일차적 책임은 여성에게 있다는 성별분업 의식이 유지되면서 행동의 변화가 지체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남성의 가사 및 육아분담 확대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남성 및 맞벌이 부모의 자녀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등 성별분업 완화를 위한 과제가 포함되었으나, 추진 성과가 미흡하다.

▶ 관련법제의 마련에도 불구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

제3차 계획기간동안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관련하여 법과 정책 마련이 활발했지만 현실에서의 여성에 대한 폭력 증가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아동·여성대상 폭력에 관한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이 마련되었으나 동 대책은 아동에 대한 심각한 성폭력사건을 계기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아동 성폭력에 중점을 두었고, 성인 성폭력 문제에 대한 대책과 처벌은 미흡하였다. 성폭력범죄 신고건수 증가에 반해 법원에서의 처벌은 저조하고, 2차 피해방지를 위한 제도 역시 미흡하며 담당자들의 인권감수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이 양적으로 크게 확충되었으나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미흡한 실정이어서 피해단계부터 자립단계까지 피해자별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등 지원서비스의 효과성 제고가 필요하다.

성매매의 경우 다양한 성매매 알선 경로에 의한 성매매가 잔존하고 있는 상태

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가 요구되는 한편, 성구매자에 대한 대처방안과 성매매피해자의 보호지원 및 처분 등의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탈성매매여성의 자립자활을 위해서는 적절한 일자리를 통한 사회적응이 필수적이므로 일자리·주거 등 실질적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 다양한 여성·가족의 요구 대응 부진

고령화로 인한 여성노인을 비롯하여 여성장애인, 미혼모, 여성한부모, 일본군 위안부,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 여성결혼이민자, 여성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가족이 다양해지고 그 규모도 증가하면서 정책요구가 부각되었으나, 각각을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포괄하여 소득보장·사회적응·모성보호·인권보호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노인에 대한 정책과제 발굴이 부진하였고, 여성장애인의 경우에도 사회참여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지만 적절하게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여성북한이탈주민 및 여성수용자 등 주변적 위치에 있는 집단은 일반적인 정책서비스로 충족되기 어려운 특별한 요구를 갖고 있다. 여성내부에서도 불평등이 심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놓인 여성집단들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들을 세심하게 발굴할 필요가 있다.

▶ 모성보건 중심의 여성건강 정책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주로 모성건강과 관련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여성대상별로 맞춤형 체력강화 및 건강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체육활동이 적은 여학생, 체육활동참여가 어려운 미취학아동 부모, 건강검진 접근성이 낮은 전업주부 여성들을 위한 체육·건강활동 접근성을 높이는 정책이 맞춤형으로 발굴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여성건강과 관련된 인프라를 확충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수준에서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네트워크가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모성건강의 경우 단순히 임신·출산과 관련된 지원 뿐 아니라 생식기능 및 예방과 관련된 정책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한다. 특히 제3자인 전문가집단을 중심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임신중절이나 피임에 대해 당사자인 여성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 남녀차별 구제 및 예방과 성희롱피해구제 관련 업무의 약화

남녀차별 업무가 여성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사무로 이관되었고, 국가인권위는 여러 차별유형 중 하나로 성차별 이슈를 다루게 되었다. 사회내의 다양한 차별문제를 통합적으로 다룸으로써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지만, 특정 차별이슈에 필요한 전문성과 구제 및 예방 사무의 적극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3차 계획기간 중에 남녀차별 구제 및 성희롱 피해 구제 업무가 약화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해있다.

특히 명백한 차별행위는 개선되고 있지만, 암묵적이며 간접적인 차별관행이 목인되는 상황을 감안할 때 보다 강력하게 성차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문 전담기구에서 다루는 것이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인권위의 시정권고에 있을 경우 장애차별은 노동부가, 연령차별은 법무부가 담당하고 있으나 성차별에 대한 부분은 소송이 아니면 행정벌을 부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성가족부의 행정벌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 문화미디어 정책영역의 실종

제1차 기본계획에서는 성평등 확산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에 주목하여 관련과제를 포함하였다. 즉 통합방송법에 남녀평등 규정 신설, 종사자 가이드라인 작성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나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노력을 찾아보기 어렵다. 성차별적 고정관념 개선에 미디어를 능동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고, 여성문화 활동지원, 여성문화유산 발굴, 여성정보화 부문도 제3차로 오면서 담보상태에 머물렀다. 아울러 SNS 확산 속에서 정보역량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관련 정책은 부재상태이다.

▶ 여성정책 추진역량의 정체

정부 부처의 제반 정책에 성평등 시각이 통합되기 위해서는 부처간 정책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 현재 중앙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공식기구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부터 현재까지(2012년 7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7번 열렸고 그 중 2번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개최되는 등 활성화

화되지 못했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등이 안전으로 논의되지 않는 등 정책의제가 적극적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함으로써 여성정책의 조정능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표가 개발되었지만, 아직 지표의 인지도와 활용도가 낮으므로 성평등정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성평등 지표 강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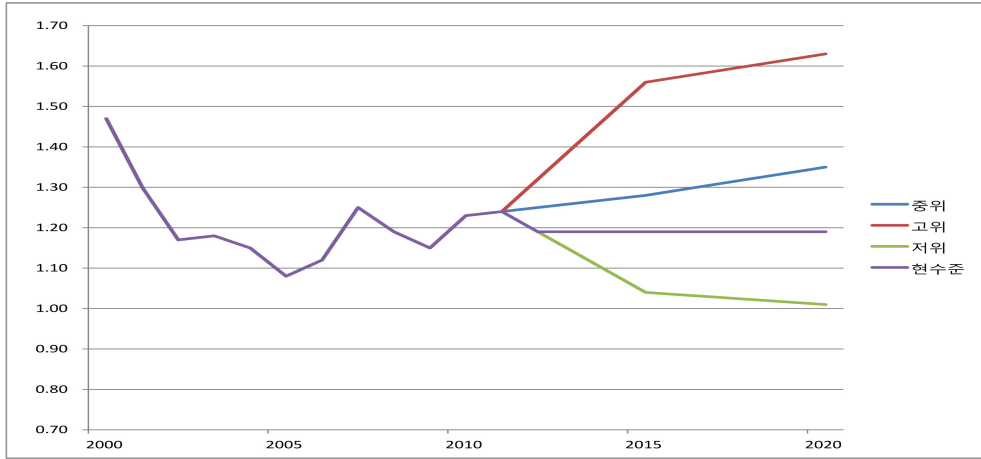
이제까지 여성정책기본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받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제출한 실적을 단순, 취합한 정도에 그쳐온 것이 사실이다. 설정된 과제별로 정책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지를 파악하는 성과관리가 요구된다.

아울러 여성단체 및 시민사회와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협치(거버넌스)를 실현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과 대응

가. 초저출산·고령화와 가족의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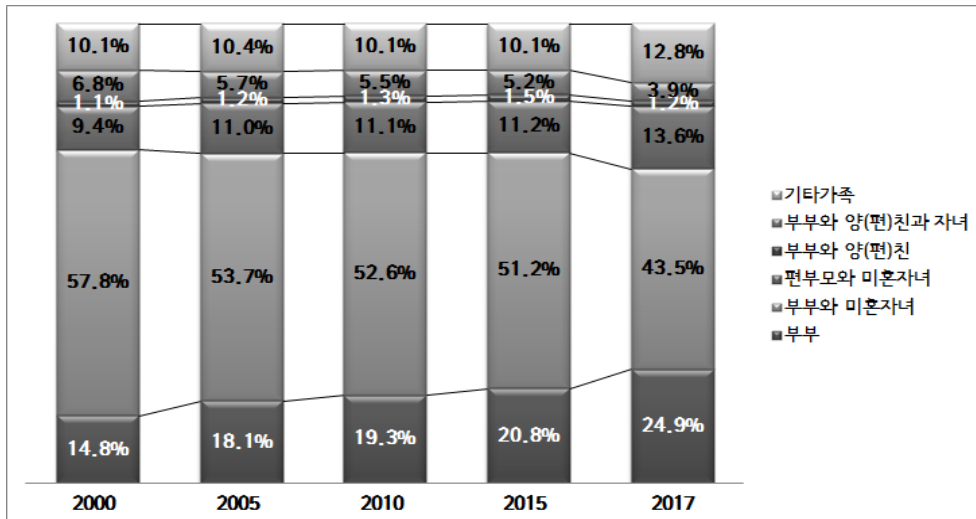
- 지난 10년간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상태로 유지된 초저출산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합계출산율은 1.47('00)→1.15('09)→1.24('11)로 급감 후 다소 회복하였으며, 2020년에는 1.01(하위 추계)~1.63(고위추계) 사이로 낮은 출산율이 전망되고 있다.



자료: 2000-2010년은 통계청(각년도) 『인구동향조사』, 2010년 이후는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그림 I-1] 합계출산율 추이 및 전망

- 아울러 3세대 이상의 확대가족 비율이 감소하고 핵가족화가 지속될 전망이다. 부+양(편)친+자녀로 구성된 3세 대가족의 비율은 6.8%(’00)→5.7%(’05)→3.9%(’17)로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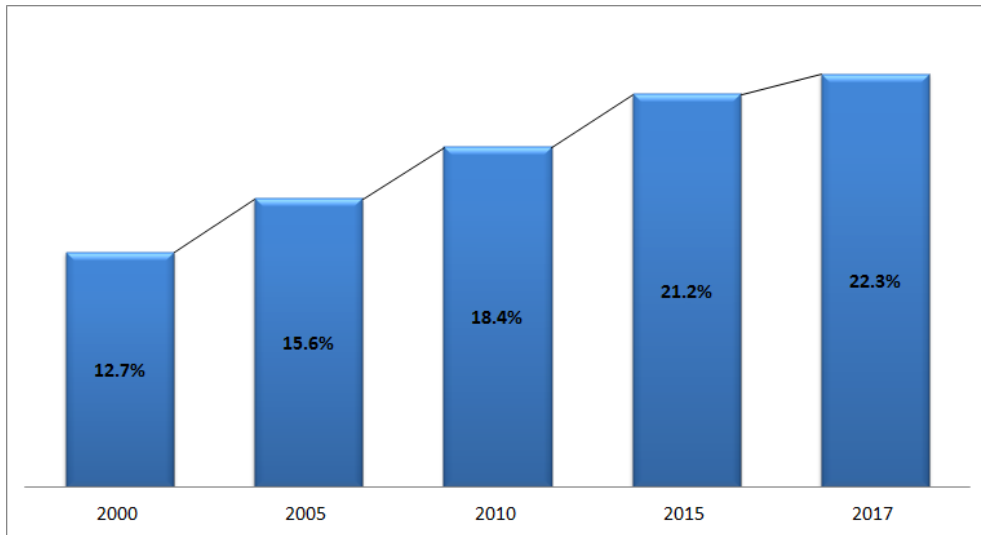


자료: 2000-2010년은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2011년 이후는 통계청(2011) 『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

[그림 I-2] 가족의 형태별 분포 추이 및 전망(혈연가구 대비)

18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 이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 무자녀가구의 증가, 유자녀가족의 자녀수 감소 등으로 평균 가구원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3.21명('00)→2.94명('05)→2.69명('10)으로 가족이 소규모화되고 있다.
- 맞벌이가족, 한부모가족등 신사회위험에 취약한 집단이 증가하고 있다.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은 12.7%('00)→15.6%('05)→22.3%('17)로 재생산을 담당하는 가족형태로서 한부모가족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최근에는 이혼, 사별 뿐 아니라 미혼으로 인한 한부모가구 역시 증가추세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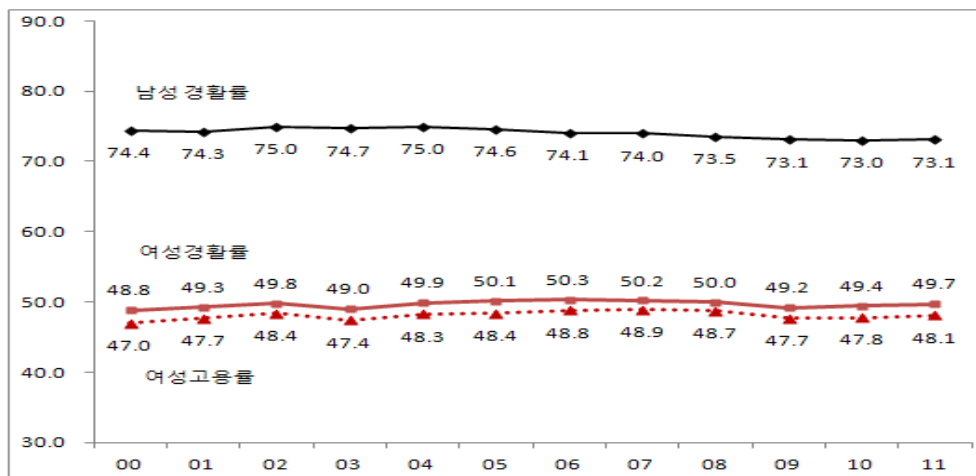
자료: 2000-2010년은 통계청(각년도) 「인구총조사」, 2011년 이후는 통계청(2011) 「장래가구추계」에서 재계산.

[그림 I-3] 유자녀가구 대비 한부모가구 비율 추이 및 전망

- 이와 같은 한국사회 가족의 변화는 신사회위험의 부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가족의 규모 축소와 가족구조의 변화로 돌봄의 공백문제는 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험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지원과 함께 가족돌봄 책임의 사회적 분담기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가족이 짊어지고 있는 부담을 덜고 원하는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나. 여성의 취업욕구 확대와 노동공급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필요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취업욕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젊은 세대 뿐 아니라 중장년 여성들의 노후 소득보장 등으로 인한 취업욕구가 강화되어 실질적으로 전 연령대의 취업욕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 2011년 통계청에서 실시한 한국의 사회조사 결과, 우리나라 15세 이상 인구의 84.3%가 여성취업에 대해서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라는 견해를 보였고 여성이 ‘가정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하였다.
 - 여성들의 취업욕구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와 실업자 비율)과 고용률(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중 취업자 비율)은 정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으며 특별한 조치가 없는 한 현 추세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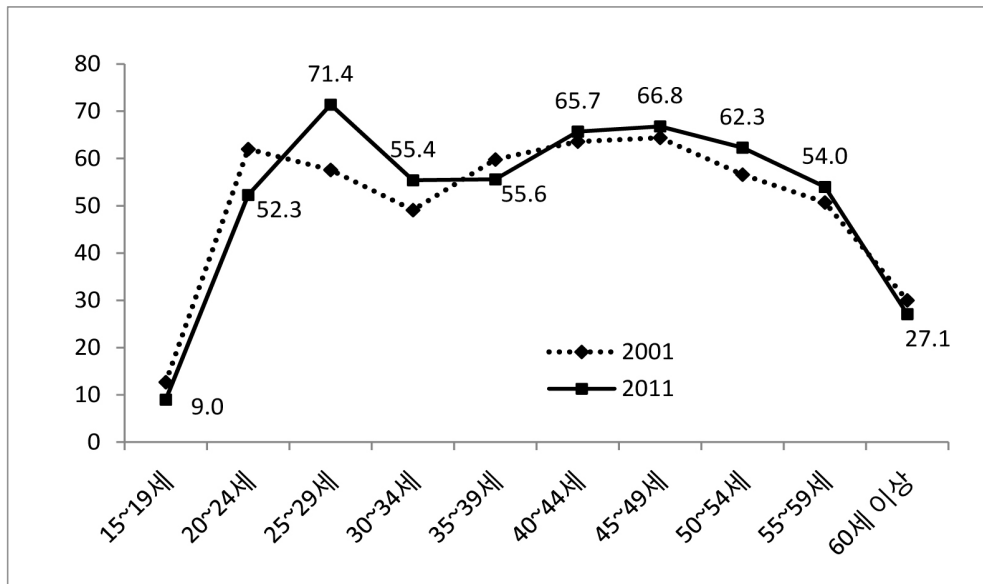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I-4] 성별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 추이(2000~2011년)

- 여성노동공급 구조가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4차 계획기간은 여성코호트의 변화로 인하여 베이비 부머가 본격적으로 고령자로 진입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의 여성 고령자 인력공급이 증가하여 상당기간 여성 고령자를 중심

으로 하는 고용확대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경력단절 시점은 후행하여 35~39세 연령대의 고용율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아래 그림에서 2001년에는 30~34세 연령층에서 저점을 기록했으나 2011년에는 저점의 연령층이 35~39세까지 연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여성관리자 등 유리천정 극복을 위한 여성집단의 풀이 축소되어 고용상의 구조 개선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I-5] 여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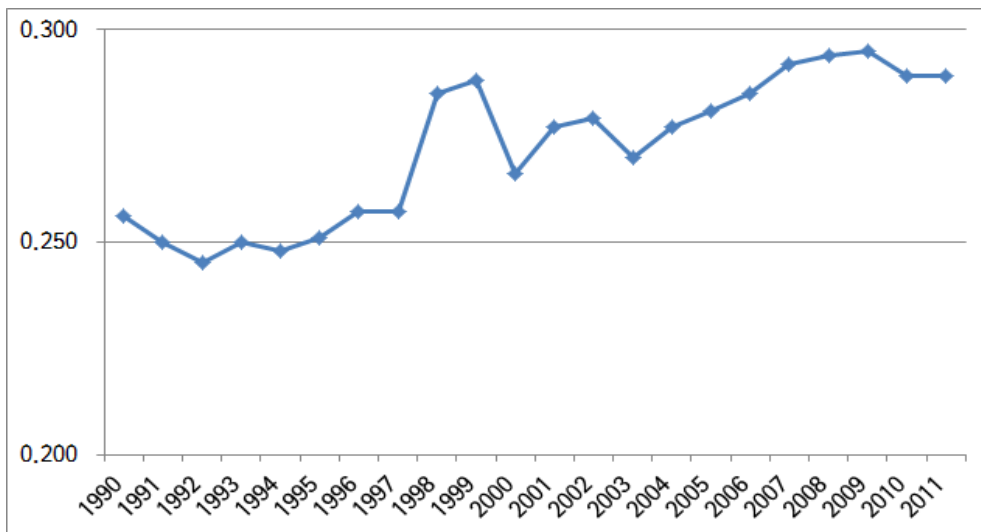
- 한편 부문별 격차의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내부의 여성 격차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자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저부가가치 부문의 기업들에서는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며 저임금, 불안정한 일자리도 상당기간 유지될 수 있어 기업내부의 격차와 양극화가 확대될 것이다.
- 여성인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인력관리는 산업화 시대의 남성중심적 인력관리 방식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또한 단기적 이익에 우선하여 여성인력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 낡을 장기적 이익을 감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여성인력 활용에 따른 기업부담을 덜어줌과 동시에 기업의 여성인력 채용과 승진을 촉진할 인센티브 조치가 요구된다.

- 또한 최근의 기술변화와 개방경제 체제 속에서 첨단산업이나 전통산업을 막론하고 고숙련 근로자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인력 활용의 핵심은 기업의 인력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는 고숙련 여성인력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술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속될 것이며 이에 더해 여 의료, 법률 등 지식서비스 시장의 개방 등 무역환경이 변화할 것이므로, 산업 부문별 여성인력의 고숙련화 및 특화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다. 취약계층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호정책 필요

- 지난 20년간 지니계수 추이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사회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 2인 이상 가구의 가처분소득을 대상으로 분석해보면, 1990년 0.256수준의 지니계수가 2011년에는 0.289수준으로 악화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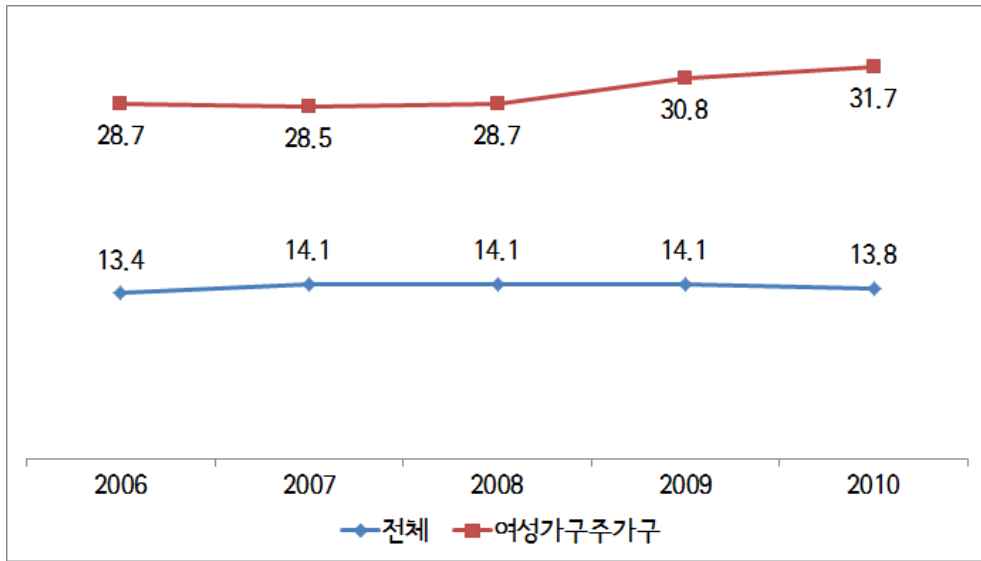
출처: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도시가계조사(1990~2002), 가계조사(2003~2007), 가계동향조사(2008~2010)

[그림 I-6] 지니계수 추이(도시 2인 이상 가구, 가처분소득 기준)

- 이와 같은 불평등의 심화는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 등 여성의 빈곤에 더욱 심

2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중위소득 50%의 상대빈곤선을 기준으로 빈곤추이를 살펴보면, 전체빈곤율은 2006년 13.4%에서 2010년 13.8%로 큰 변동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율은 2006년도에도 이미 전체의 2배 수준인 28.7%에 달했으며, 빈곤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에는 31.7%에 달하여 3가구 중의 1가구가 빈곤한 것으로 나타난다.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그림 I-7] 빈곤율 추이(중위소득 50%, 가처분소득 기준)

- 결혼이주자들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및 북한이탈여성의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증가하는 취약계층 여성과 더불어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영세 자영업 종사자는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사회적 위험에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다.
- 우리사회에서의 복지는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고 그러한 토대 위에 정책과제가 설정된 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보편적 복지논쟁이 사회적·정책적으로 전면화되면서 과거와 같은 시혜적이고 잔여적인 복지에서 탈피할 수 있는, 제도적 진일보가 가능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고위험집단을 대상으로, 이들의 특수한 욕구를 위한

지원 정책에 집중해 왔다면, 이제는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구축·운영되는 다양한 복지정책프레임에서 양성평등과 취약계층 여성들을 위한 제도 마련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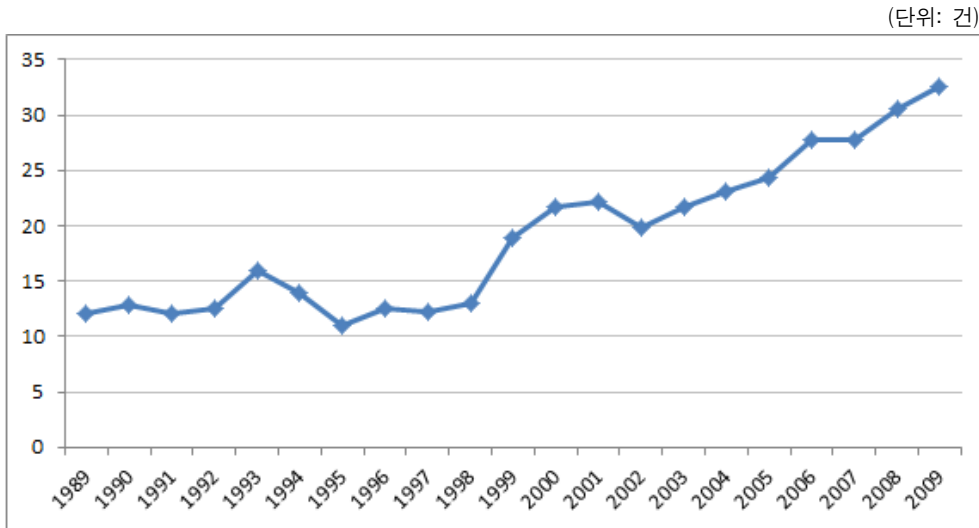
- 한편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복지요구들이 봇물처럼 터지고, 공약으로 수렴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복지욕구가 정치적 이슈로 부각되는 경향이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빈곤층의 규모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다른 한편으로는 고령화 경향이 지속되어 복지에 대한 요구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의 확장이 가져올 젠더효과를 주목하고, 성인지적 관점에 따른 여성친화적 복지정책을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다.

라. 여성·아동의 안전에 대한 욕구 증대

-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는데 형법범죄만 추출하면 그 증가폭이 더 높아진다. 1989년 발생한 인구 10만명당 형법범죄 발생비가 572건이었는데 2009년에는 1,995건으로 3.7배 이상 증가하였다. 형법범죄를 강력범죄·살인, 강도, 성폭력 범죄로 나뉘보면 특히 성폭력 범죄의 증가율이 높다.²⁾
- 강간으로 통칭되는 성폭력범죄를 살펴보면, 1989년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범죄 발생비는 12건이었으나 2009년 발생비는 32.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1989년부터 1998년까지는 소폭의 증감이 반복되었지만 1994년 성폭력 특별법이 제정되고 감소추세에 있던 성폭력법은 1999년에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비가 18.9건으로 급속히 증가하였고, 이후 증가 추세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상승폭도 크다.
-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 적용대상이었으므로 사건이 공소제기되는데 있어 피해자와 그 밖의 법률에 정한 사람의 고소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는 범죄발생 집계에 피해자의 신고의지가 필수였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친고죄가 사실상 폐지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시점인 2010년 이후 성폭력 범죄 보고는 더 증가할 것이다.³⁾

2) 대검찰청의 범죄백서,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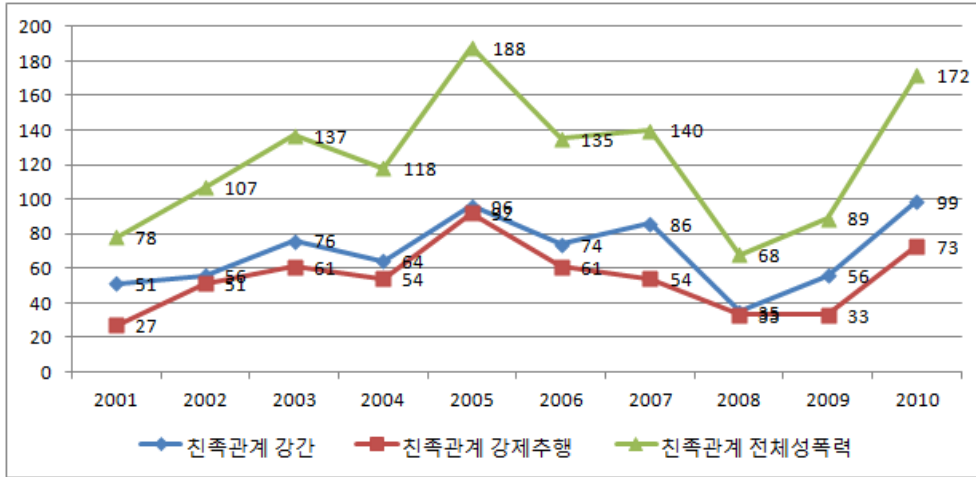
3) 김두열외(2011),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KDI.



주: 발생비는 인구 10만명당 발생건수를 지칭.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그림 I-8] 우리나라의 성폭력 범죄 발생비

- 한편 새로운 폭력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전망이다.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지적장애 아동·청소년의 성폭력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혼자 사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여성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의 내실화가 요구된다.
 - 기존 여성폭력관련법의 개정과 더불어 새로이 도입된 성폭력 재범방지 수단(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제도,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등)의 시행결과를 환류하여 정착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 또한 여성·아동의 폭력범죄에 대한 안전강화 요구에 부응하여 지역사회의 안전강화 시스템의 구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범죄로부터의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자료: 여성가족부(2011),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0)」.

[그림 I-9] 친족관계 성폭력범죄의 연도별 추세

- 학내 성희롱 및 성폭력도 중요한 부분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현재 사회환경 추세로 볼 때, 향후에도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이 인터넷, SNS 등 사이버 공간에 범람하고 있는 음란물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학생 간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놀이문화화 하는 등 학교내 성폭력, 성희롱 등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학교 성교육이 유명무실한 가운데 학교 성폭력이 빈발하고 중고등학교의 경우 집단 성폭력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청소년의 성문제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띤다. 특히, 여성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한 교육적 차원의 대책과 학교 성폭력 예방활동이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 성폭력·가정폭력의 증가추세에 대응하여 지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이 요구될 전망이다. 따라서,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현행과 같이 기금사업으로 편성되는 것에서 부처간 협의를 통해 여성가족부 일반회계예산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여성폭력피해 상담자의 교육 지원 등 자격강화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 성매매에 대해서는 피해자 인권보호 강화, 성매수 공직자 강력한 처벌 및 신·변종 성매매업소 규제대책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 경찰, 검찰에서 진정, 고소를 한 여성들이나 상담소에서 법률지원을 통해 의견서, 진술서, 고소장 등에서 선불금을 빌미로 성매매강요가 이루어지는 정황을 증거로 첨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매매강요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다고 하며 성매매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공무원, 정치권력, 법 집행기관의 성매매 관련 행위는 조직범죄와 연결되거나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등 시민안전과 경제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그러나 공직자들의 성매매와 성접대에 대해 실제 징계나 처벌은 경미하거나 퇴직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직윤리규정 등에 구체적 처분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 신·변종 성매매업소의 난립에도 형사처벌 이외에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마. 공공부문과 대외협력에서 여성의 대표성 보장

- 정치 및 공공 분야의 여성대표성 과제는 그동안의 꾸준한 정책적 개입에도 불구하고 비율 제고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여성의 대표성 등을 나타내는 국제지표에 한국은 순위가 낮아 적극적인 도약이 필요한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2009년과 2011년 UNDP가 발표한 국회의원 여성비율과 행정관리직 여성비율의 국가 간 비교결과, 한국은 비교국가 중 61위를 차지한 바 있다.
- 그동안 정당법 개정 등으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주로 비례대표 의석에 치중되었고, 지역구 공천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증가는 향후 담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치 분야에 팽배한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해소되어야 하며, 특히 주요 당직자들 중 낮은 여성비율은 정치제도의 선진화 및 성 평등을 달성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향후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시행기간인 2013~2017년 중 2014년은 제7차 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될 예정이어서 여러 선거와 맞물려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성평등한 정치문화를 제고할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의 필요성이 가시화될 전망이므로 통일과 남북교류과정에서의 여성역할이 보다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각 교류협력기구 및 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 보장, 통일

대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의 정책과제가 부상한다. 남북여성교류는 남북왕래행사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제3국 접촉과 국제기구 등을 통한 상호정보교환과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 분단극복과 관련하여 활동 중인 여성단체와 협의 및 지원을 위한 정부의 독자적 담당기구를 설치하여 관련 행사의 지속성을 도모하고 다양한 주제 및 의제 개발을 위한 안정적 토대를 마련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분단국가로서, 지역여성의 역량 강화 및 여성에 대한 폭력 철폐를 위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과 국가행동계획 수립이 요구된다.

-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OECD/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UN Women 초대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이 있었으나, 국제협력부문이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08~2012)」 내에 정책과제로 설정되지 않아 국내 관련활동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이 미흡하였다. 2011년 11월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한국은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하였고 향후에도 한국은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의 변화 경험을 토대로 한 독자적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국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젠더전문가 양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Beijing+20가 되는 2015년을 앞두고 MDGs 성과와 도전과제를 점검하며, 성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표들이 개발되고 이에 대한 각국의 실행이 요청될 전망이다. 관련하여 UN Women, 여성지위위원회(UN CSW) 등 국제기구와의 체계적인 협력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바. 평등문화 수용자 집단의 다양화

- 맞벌이 부부의 증가, 1인 가구·한부모 가족의 증가 등 인구·가족의 변화는 전통적인 성역할 구분을 가능하게 하지 않을 것이며 가정, 직장, 사회 내 평등문화 확산의 요구가 분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친환경, 상생, 녹색 등 대안적 생활방식에 대해 관심이 증대하고 있고, 경쟁위주 삶의 방식을 지양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여성들의 활동이 증가할 전망이다.
- 다이어트와 성형을 부추기는 사회문화가 범람하는 가운데 여성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와 활동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미디어와 문화환경의 조성이 요구되는 한편, 다음과 같이 새로운 세대와 새로운 정책고객의 등장은 각각의 문화

육구에 부합하는 정책을 필요로 할 것이다.

▶ 2030 여성

- 제4차 기본계획기간은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새로운 세대의 여성들은 기성세대에 비해 보다 평등한 환경에서 성장하여 성평등 의식 수준이 높다. 동시에 취업이나 사회적 성취 육구가 높을 뿐 아니라, 결혼과 성에 관한 가치관도 기성세대와는 다르다.
-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으로 경쟁력이 높아졌기 때문에 여성의 사회참여나 노동시장 참여도 양적인 증대를 넘어서서 질적인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이다. 새로운 세대들의 성평등 의식이나 기대 수준이 높아지는 만큼 여성정책이 보다 섬세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 젊은 세대가 익숙한 사이버 공간은 성별의 구분을 뛰어넘는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공간인 동시에 상품화된 성이나 왜곡된 여성관이 난무하는 남성중심적 공간이기도 하다.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사이버 문화가 성평등 의식을 확산시키거나 정책에 대한 호응을 이끌어내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진다.
- 나아가 젊은 여성뿐 아니라 취업 여부, 계층별로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와 기대가 반영되어야 한다. 정책 방향에서 특정 여성집단에 치우치거나 혹은 특정 여성집단을 배제하지 않는지, 이에 대한 지속적 점검과 성찰이 필요하다.

▶ 성평등 정책의 파트너로서 남성

- 할당제 등 적극적 조치의 도입 때마다 여성정책에 대한 저항이 수면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에 성평등 가치에 대한 남성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의제 발굴이 필요할 것이다
- 남성 1인 생계부양자-여성 전업주부라는 근대적 가족형태와 성별분업 이데올로기는 한국사회의 산업화 기간 내내 이상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왔다. 그러나 1997년 IMF 금융위기와 2008년 세계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남성 1인 생계부양자(breadwinner) 모델이 붕괴하고, 남성들도 성역할 혼돈을 경험하고 있다. 아울러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시작되면서 행복한 노년에 대한 요구

가 증가하고 있다.

- 한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아버지 학교’, 프렌디 클럽⁴⁾ 등 육아에 관심 있는 젊은 층 남성들도 등장하고 있다. 또한, 2010년 9.2%(159만5,000가구)에 해당하는 한부모 가정의 증가는 아버지와 남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성을 높인다. 많은 남성들이 아버지와 남편으로서 자신의 욕구를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도록 장려하고, 양성이 함께하는 참여하는 육아문화 조성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이들 남성들을 성평등의 새로운 고객으로 적극 포섭하고 협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사. 여성정책 거버넌스 방식의 변화

▶ 시민사회의 발전과 정책주체의 다원화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시민들의 정치 및 사회참여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 나아가 권리의식의 상승으로 향후 정부와 시민사회, 개인 시민들 간의 소통 방식의 변화, 나아가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한 거버넌스 구성방식의 새로운 변화 역시 감지되고 있다. 정보화와 전지구화의 진전으로 국가의 기능은 점차 유연화되고 시민사회와의 네트워크와 정책결정 행위자간 협력을 촉진하는 거버넌스의 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 여성정책의 효율성과 대응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회, 시민사회의 중요한 축이자 많은 여성들의 요구를 결집하고 대변하는 여성단체, 전문가 등 다양한 정책형성 주체들의 수평적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정부와 시민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은 정책의 기획·입안·결정·집행의 전 과정에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협력과 공존의 파트너십을 형성해야 할 것이다.
- 향후 여성정책에서는 일방적 의사소통모델에서 벗어나 사회 변화의 방향에 맞추어 시민들이 주체적인 소통을 통해 평등문화의 비전을 찾고 일상적 실천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정부는 정책행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다원화를 통해 의사결정을 분권화하고 서로 다른 활동기반의 참여자들이 협력을 통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의 변화를 꾀해야 할 것이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가치 공유와

4) Friend와 Daddy의 합성어로 친구같은 아버지를 의미하는 조어

신뢰를 바탕으로 여성정책이 직면한 과제를 해결하고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는 동반자로서의 파트너십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 **성평등 책무성에 대한 높은 요구**

- 성평등 정책도구로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일반정책을 성인지적으로 바꾸는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증가하고 있다. 대상과제수 등의 양적인 발전에서 벗어나 성평등 책무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제도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이다.

▶ **중앙과 지방과의 연계 강화를 위한 新전략 필요**

- 분권화의 진전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행정서비스 전달과 아래로부터 지역주민의 요구를 반영하는 생활정치의 실현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된다.
- 지방분권화 시대에 다양한 지역 여성의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자생적 지역 여성정책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과 조정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전망이다. 여성가족부의 주도하에 각 지자체로 확산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여성들이 자신의 생활터전에서 구체적으로 여성정책을 실현함으로써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컨설팅이 요구된다.

II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개요

1. 비전과 목표	33
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35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36
4. 주요 지표 전망	40

1. 비전과 목표

비전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평등사회

목표

OECD 평균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달성

촉촉한 안전망의 구축과 삶의 질 제고

성별 격차의 해소와 동등한 참여의 보장

정책과제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인권 의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가족 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	------------------------------	------------------------	---------------------------	-----------------------------	------------------------	---------------------------

가. 비전

□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평등사회

- 성평등은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의 하나이며, 대부분의 시민들은 성평등의 추구를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으로 승인함. 그러나 현재의 상황이 평등에 가까운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며, 성평등을 남녀간의 제로섬게임으로 인지하여 피로감을 느끼는 현상도 나타남.
- 세계경제포럼의 젠더격차지수와 UNDP의 젠더권한지수 등에서의 국가순위가 하위권임에도 성평등은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퍼져, 성평등의 보편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말 걸어야 할지 난감할 뿐 아니라 성 불평등한 현상을 설명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함.
- 제4차 계획기간에는 성평등의 가치를 새롭게 확산시킴으로써 성평등 사회가 양성의 차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고 조화롭게 공존하며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임을 강조하기 위해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성평등사회’를 비전으로 제시.
- 성평등사회는 남성과 여성이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기회를 제공받고, 사회의 모든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완전하게 실현할 수 있는 사회이자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공유하는 사회임. 4차 계획기간에는 ‘여성과 남성간의 관계를 둘러싼 사회구조 변화’의 지향성을 보다 강화하여 여성정책이 실질적인 젠더정책으로 이동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의 가치가 통용될 수 있는 언어로서 우리 사회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함.

나. 목표

□ 목표 1 : OECD 평균 수준의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달성

- 여성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저출산·고령화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높아져야 하나 지금까지 정체를 면치 못하고 있음. 2011년 현재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15~64세) 54.9%이므로 2017년까지 OECD 회원국의 평균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인 6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이며 강력한 정책도입을 필요로 할 것임.
- 4차 기본계획의 비전을 실현하도록 하는 첫 번째 목표로 여성경제활동참가

율의 측면에서 구체적인 수량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4차 기본계획의 책무성을 높이고 성과관리를 견인할 상징적 의미가 더해짐.

□ **목표 2 : 촘촘한 안전망의 구축과 삶의 질 제고**

- 여성과 아동이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로부터 보호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
- 일차적으로 여성과 가족의 책임으로 간주되어 왔던 돌봄 노동의 부담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고, 남성의 돌봄권을 보장하여 남성과 여성이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함.

□ **목표 3 : 성별 격차의 해소와 동등한 참여의 보장**

- 교육·훈련, 경제활동, 보건복지서비스의 수혜, 의사결정 과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아직도 존재하는 양적, 질적 측면에서의 남녀 격차를 해소하고 여성의 접근과 참여를 보장하는 사회시스템을 확립함.
-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성역할 분업을 극복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함.

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구조

-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은 7대 분야의 28개 중과제 및 100개 소과제로 구성됨. 7대 분야는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돌봄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정책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임.
- 이와 같은 계획구조는 두가지 노력의 산물임. 첫째, 다가올 5년의 여건 전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둘째, 지난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평가를 토대로 하여 성과가 미진한 과제들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근거 법제와 전달체계를 마련하고 성과지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3.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특징

가. 여성 일자리-인권정책의 강화

▶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를 우선 과제로

- 생애주기별 정책 발굴: 3차 기본계획과 달리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생애주기를 보다 촘촘하게 구분하였음. 특히 경력단절의 기간에 대한 고려, 초기 연소노인 등 최근 사회변화와 인구변화를 고려하였음.
- 정책대상의 확대 및 제도 환경 변화를 반영: 귀농귀촌 여성들,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으로 정책대상을 확대. 또한 협동조합기본법, 사회보장기본법 등 새로운 법제도의 환경과 정책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였음.
- 노동공급자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책의 대상과 분야를 확대: 기존 정책이 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에 집중되어 있었다면 본 계획에서는 여성을 지원하는 제도와 환경에 초점을 맞추었음. 여성 인력활용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등급자 중심의 정책지원은 한계를 갖기 때문임. 아울러 제도와 환경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발굴에 집중하였음.

▶ “여성에 대한 폭력 종식과 인권 보호” 강화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각종 폭력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내실화’라는 2개의 중과제를 제시하였으나 제4차에서는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및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등을 신규로 포함하여 총 6개의 중과제로 구성함.
- 성매매 방지정책의 경우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도과제로 제시하였지만, 여성 폭력 피해자 지원 및 가해자 처벌의 통합 접근을 위해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및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의 중과제 속에 세부과제들을 포함 시켰음.
-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관련법 제정, 여성 폭력 방지관련 국가통계생산체계 구축,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 등을 제안하였음.

나. 새 정책영역의 부각

▶ “여성의 복지 및 건강권 보장”을 주요 정책과제로 설정

- 복지관련 정책이 제3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권익보호’ 영역 내의 하위과제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권리’가 아닌 ‘보호’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회귀하는 경향이 있었음. 4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가족형태별 기초생활보장체계 수립, 근로연계복지제도간 연계성 강화 등을 새로 제안함.
-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안하였음.
- 또한 여성건강이슈로 모성건강만을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건강권 보장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였음.

▶ “통일 등 대외협력에서 여성참여 확대”를 별도 과제로 부각

- 지속적인 추진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여성 대표성 과제에 더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와 관련된 과제들을 별도과제로 부각하였음. 또한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과제는 유엔 차원의 결의를 우리나라가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의무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포함됨.

다. 다양한 정책고객의 포함

▶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을 같이 묶음

- 일·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과제를 돌봄지원 과제와 같이 묶음으로써 정책대상은 여성만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임을 명확히 함. 남성의 양육권을 보장하고, 여성과 남성의 돌봄의 공유를 가능케 하는 제도와 조직문화를 구축하는 과제를 제안함.
- 또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그간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돌봄지원에 대해 정책방향성을 점검하여 보완하고 체계화하는데 초점을 둬. 보육 및 아이돌봄정책, 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 등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였음. 또한 3차 기간동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데에 대응하여 기존의 가족유형별 지원 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임.

▶ **평등문화와 교육 확산을 위한 과제 개발**

- 우리 사회는 집약성장과정을 통과하면서 ‘피로사회’의 징후를 보이고 있음. 성공시대의 남성모델을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느리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미시적 움직임을 지원하고자 함. 기존의 관주도 방식이 아니라 돌봄의 공유와 사회화를 위한 풀뿌리 여성운동 및 지역운동과의 결합을 통한 방식을 추구함.
- 과도한 성형과 다이어트, 외모 중심, 왜곡된 성의식 속에서 무방비 상태로 노출된 미래세대의 육성을 위해 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함.
- 한편 제3차 여성정책에서는 여성교육분야의 과제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으나 성평등한 교육환경의 달성을 위한 과제가 산적함. 이에 본 4차 계획에서는 ① 교육과정, 교원정책, 양성평등 교육, 학교에서의 성교육 등의 정책들을 향후 여건전망에 맞게 재조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을 제안하였고, ② 그동안 제안된 적이 없었던 고등교육 분야의 정책과제를(대학운영 방식, 안전문제, 대표성 제고 등) 제안하였고음.
- 또한 교육통계연보에 지표 삽입, 교원능력평가제와의 연동, 각종 대학평가 및 사업 심사 지표에 삽입, 대학정보공시 성별분리통계 제시 등 교육분야의 여성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을 강화함.

▶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 개발**

- 4차 기본계획은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서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정책을 포함함. 경직된 성역할은 남녀 모두의 잠재력과 선택을 제한함. 모든 영역에서 평등한 성역할을 촉진함으로써 남성과 여성에 기회와 선택의 폭을 보장하게 됨.
-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이슈는 육아와 돌봄에의 남성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안에서부터 남성들에게 도전과제인 문맹율, 학업중퇴, 직업보전, 건강 등에서의 성불평등을 완화하는 정책까지 펼쳐짐. 나아가 남성성이나 반 폭력성 연구 등도 남성을 위한 성평등 의제로 포함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남성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종식 방안도 도출될 수 있기 때문임. 4차 기본계획은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남성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 하에 새로운 아버지와 남편상을 부각하는 과제를 포함하고, 대중적인

홍보 전략을 제시함.

핀란드에서의 남성과 성평등 관련 이슈들

- 핀란드를 필두로 한 북구 유럽 국가들은 성평등 사회 실현에 있어 남성의 의식과 행동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으로부터, 젠더 전략에 파트너이며 협력자로 남성을 상징함. “이는 여성의, 여성을 위한, 여성에 의한 정책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는 여성정책의 한계를 넘어 남성과 여성, 나아가 다양한 집단이 공히 참여하는 정책의제를 개발하고 실천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임.
- 핀란드에서 남성과 젠더 이슈에 관한 유의미한 조치는 성평등위원회(Council for Gender Equality)가 남성과 젠더 평등 소위원회를 처음 만든 1988년에 이루어졌음. 핀란드 정부는 남성과 젠더 평등이라는 주제는 “3가지 관점에서 출발해야 하는데, 첫째, 남성은 젠더 평등 정책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주체로 간주되어야 하며, 둘째, 성 주류화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 모두의 관점에서 출발한 계획된 실행의 평가(assessment of planned action)가 요구되며, 셋째, 남성들이 직면한 몇몇 문제는 젠더 평등 정책과 관련된다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함(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2011: 18)”을 강조함.
- 핀란드와 다른 서구국가들에서 논의되는 남성과 젠더 평등의 주제에 연계된 잘 알려진 5가지 주제는 첫째, 남성들의 일과 가족생활의 조화, 그리고 남성의 부모됨임, 둘째, 남성의 여성에 대한 폭력(특히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셋째, 남성들과 건강, 넷째, 남성들과 이혼, 다섯째, 소년들과 학교에 관한 젠더 평등 정책임.⁵⁾

라. 정책관리 수단의 확보 및 젠더 거버넌스 강화

▶ 여성정책조정기능의 강화 및 지표관리 등

- 기본계획내 정책과제들의 달성 여부와 진전도를 평가 또는 점검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가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함. 특정 과제에 대해서는 성평등 지표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정책 추진의 엄밀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제안하고 있음.
- 여성정책조정기구의 기능과 위상 강화를 위한 과제를 포함시킴.

5)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2006). *Men and Gender Equality - Conference Report*, Ministry of Social Affairs and Health, Finland.

▶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의 ‘내실화’에 집중**

- 이제까지 양적 확대 성과에 대해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제도화된 것들이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내실화’에 초점을 둔. 아울러 “성인지 정책 도구 간의 연계”를 하나의 과제로 제시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간의 연계를 모색함.

▶ **시민과 직접 소통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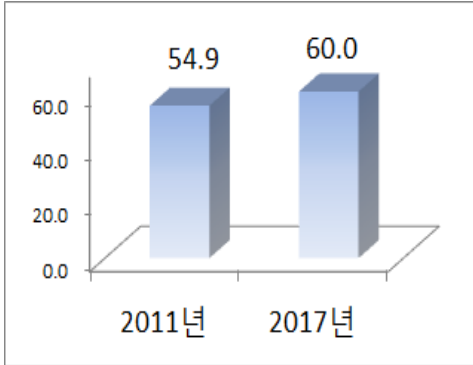
- 정책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에 대한 정책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를 별도 설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4차 계획을 수립하는 현재 시민과 직접 소통이 가능한 여러 매체가 발달해있고, 시민들 역시 자신들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고자 하는 요구가 성숙해있기 때문임.
-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구성 및 활성화”, “정책 이슈별 시민공청회 활성화” 등 성평등 정책에 대한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신규과제로 제시함.

4. 주요 지표 전망

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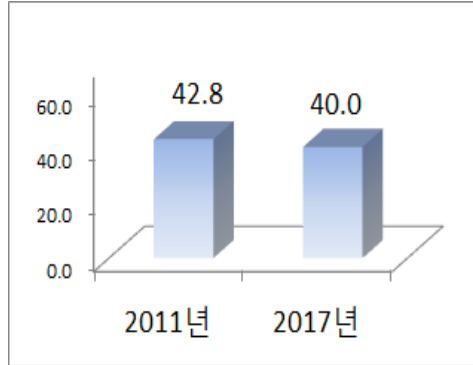
-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15세~64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011년 54.9%에서 2017년에 60.0%로 증가할 것임.
- 여성 비정규직 감소: 여성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2011년 8월 42.8%에서 2017년 8월 40.0%로 감소할 것임.
- 성별 임금 격차 감소: 남성대비 여성 임금이 2010년 63.9에서 2017년 70.0으로 증가할 것임.
- 여성의 직업 지위 향상: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이 2011년 20.9%에서 2017년 25.0%로 증가할 것임.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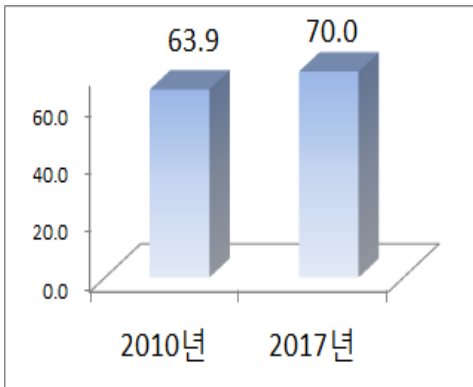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임금 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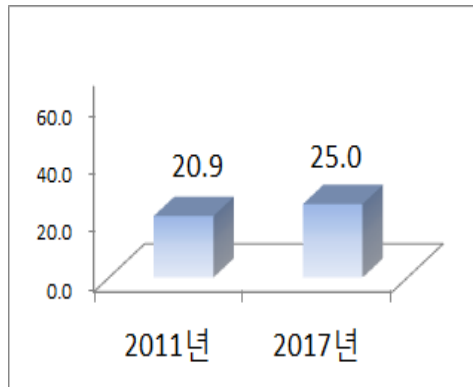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여성취업자 중 전문직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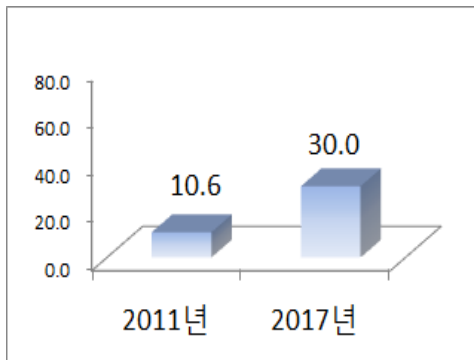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월 부가조사

나.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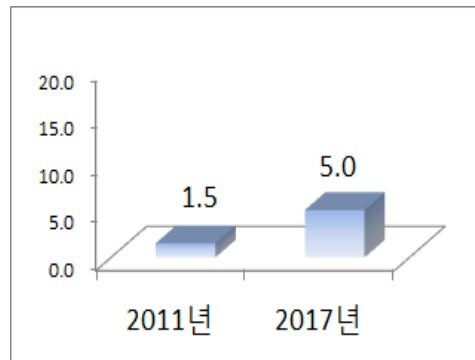
- 국공립 보육시설 보육분담율 증가: 2011년 10.6%에서 2017년에 30.0%로 증가할 것임.
-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비율 증가: 2011년 1.5%에서 2017년에 5.0%로 증가할 것임.
- 남성육아휴직자 수 증가: 2011년 2.4%에서 2017년에 5.0%로 증가할 것임.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분담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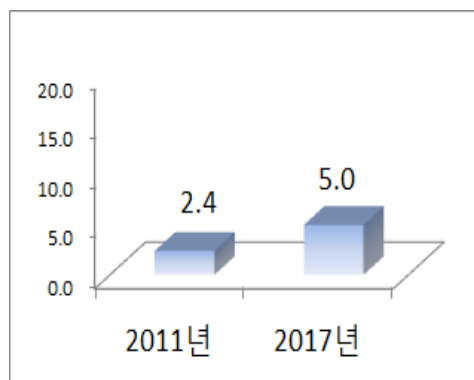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자료: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육아휴직 이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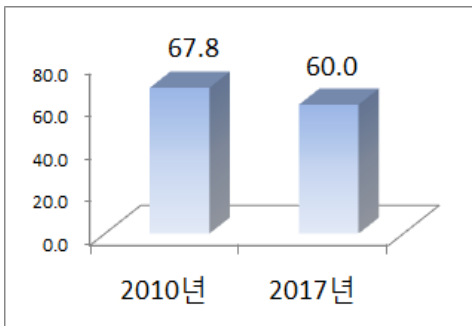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통계

다.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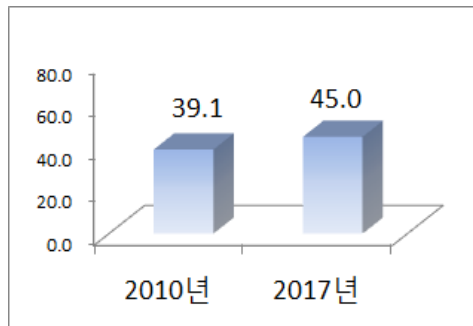
- 범죄의 위협에 대한 인식 향상: 범죄의 위협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여성의 비중이 2010년 67.8%에서 2017년 60.0%로 감소할 것임.
- 야간보행에 대한 안전도 증가: 야간보행시 두려운 곳이 없다고 느끼는 여성의 비중이 39.1%에서 45.0%로 증가할 것임.
- 인구 10만명당 성폭력 발생건수 감소: 2010년 32.5건에서 2017년 30건으로 감소할 것임.
- 강력범죄(흉악) 피해자중 여성비율 감소: 살인, 강도, 강간을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이 2010년 77.3%에서 2017년 70.0%로 감소할 것임.

범죄 위협에 대해 불안하게 느끼는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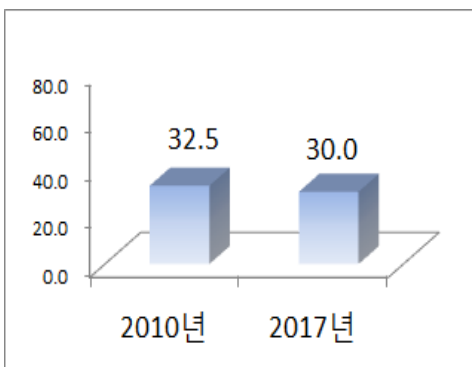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야간보행 안전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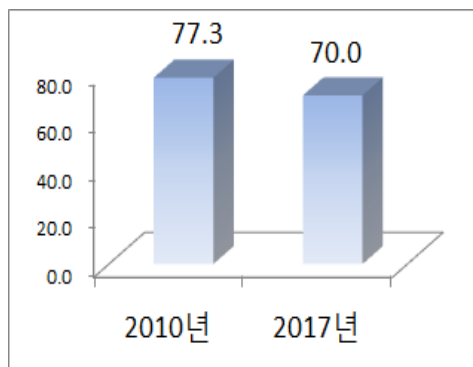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인구10만명당 성폭력발생건수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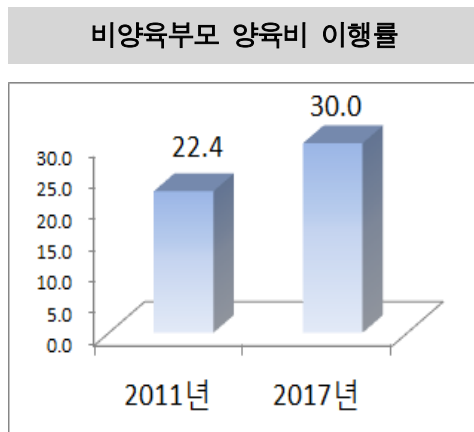
강력범죄 피해자중 여성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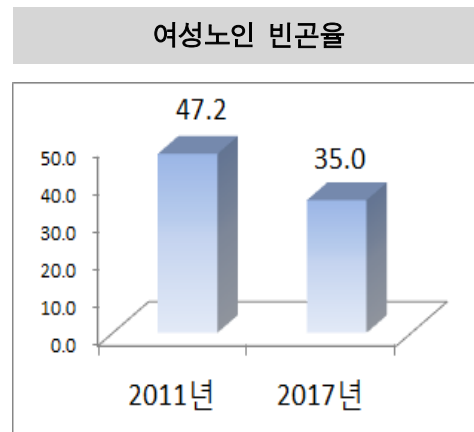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라.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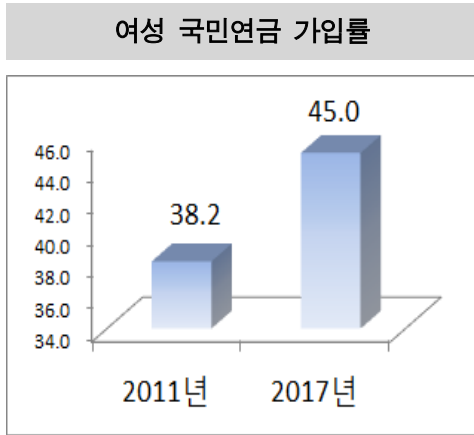
- 남성의 가사분담율 증가: 남성 취업자의 평균 일일 가사시간이 2009년 36분에서 2014년에 50분으로 증가할 것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 가사분담에 대한 견해: “부인 전담+주로 부인” 비율이 2010년 61.3%에서 2017년에 55%로 감소할 것임. 통계청 사회조사
- 비양육부모의 정기적 양육비 이행율 증가: 2011년 22.4%에서 2017년 30.0%로 증가할 것임.
- 여성노인 빈곤율 감소: 2011년 47.2%에서 2017년 40.0%로 감소할 것임.
- 여성 국민연금 가입률 증가: 여성의 국민연금 가입율이 2011년 38.2%에서 2017년 45.0%로 증가할 것임.
- 여성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증가 : 2010년 10.3%에서 2017년 15.0%로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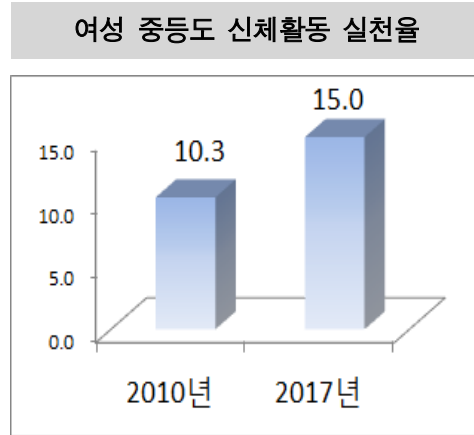
*자료: 여성가족부, 실태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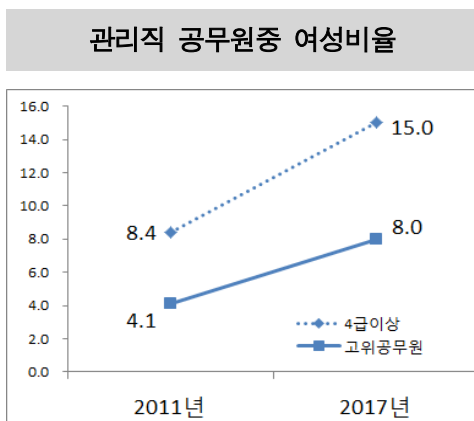
*자료: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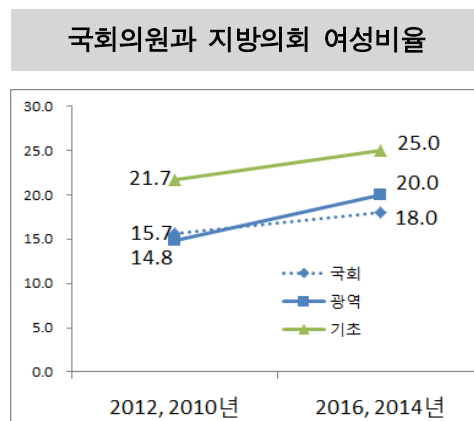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마.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고위공무원 및 4급이상 관리직 여성공무원 증가: 중앙행정부 고위공무원 비율이 2011년 4.1%에서 2017년 8.0%로 증가하고, 4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중 여성비율이 2011년 8.4%에서 2017년 15.0%로 증가할 것임.
-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여성 당선자 비율 증가: 국회의원 당선자중 여성비율은 2012년(19대) 15.7%에서 2016년(20대) 18%로 증가하고, 광역·기초의원 중 여성 당선자 비율은 2010년(지방선거) 각각 14.8%, 21.7%에서 2014년에 각각 20%, 25%로 증가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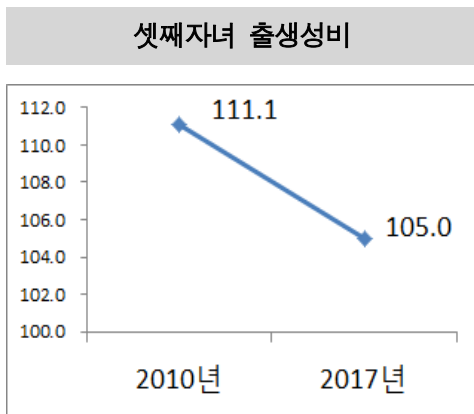
*자료: 행안부 행정부국가공무원인사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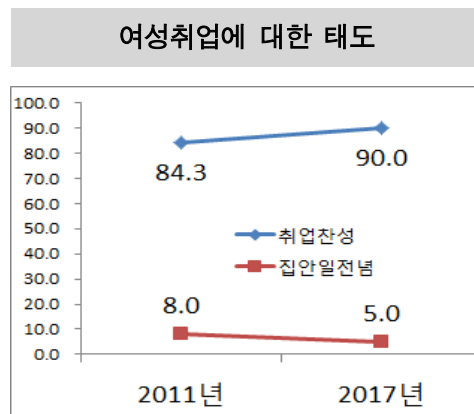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바.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셋째자녀 출생성비의 개선: 셋째자녀 출생성비가 2010년 111.1에서 2017년 105.0로 개선될 것임.
- 여성취업에 대한 태도: “직업을 가지는 것이 좋다”에 찬성하는 비율이 남녀 전체적으로 2011년 84.3%에서 2017년 90%로 증가하는 반면, “집안일에 전념하는 것이 더 좋다”에 찬성하는 비율은 2011년 8.0%에서 2017년 5.0%로 감소할 것임.



*자료: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III

정책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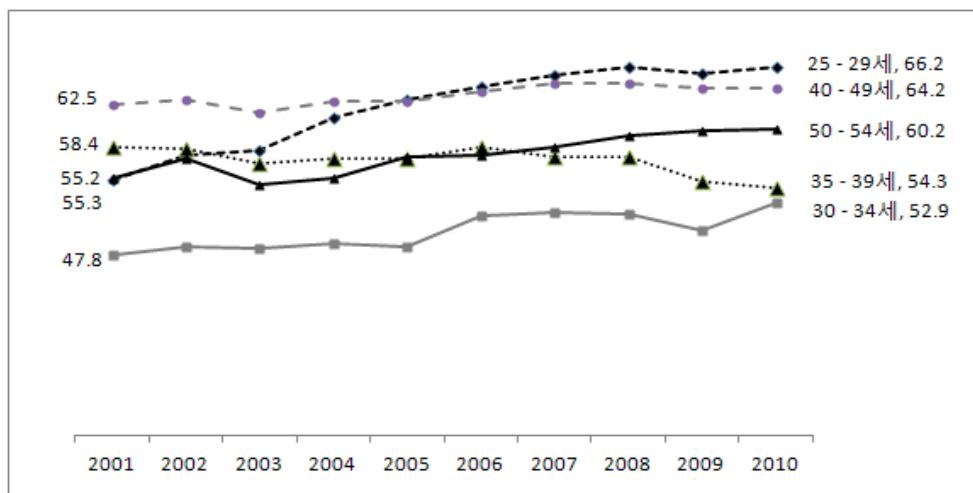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49
2.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기반구축	65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80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102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120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138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157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가. 현황 및 진단

□ 여성의 취업욕구 확대와 노동공급구조 변화

- 여성들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여성취업에 대한 욕구들은 지속적으로 강화될 것임. 특히 과거와 다른 연령대의 취업욕구 확대(50~54세, 40~49세)가 예상됨.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그림 Ⅲ-1] 여성의 연령계층별 고용률 추이(2000~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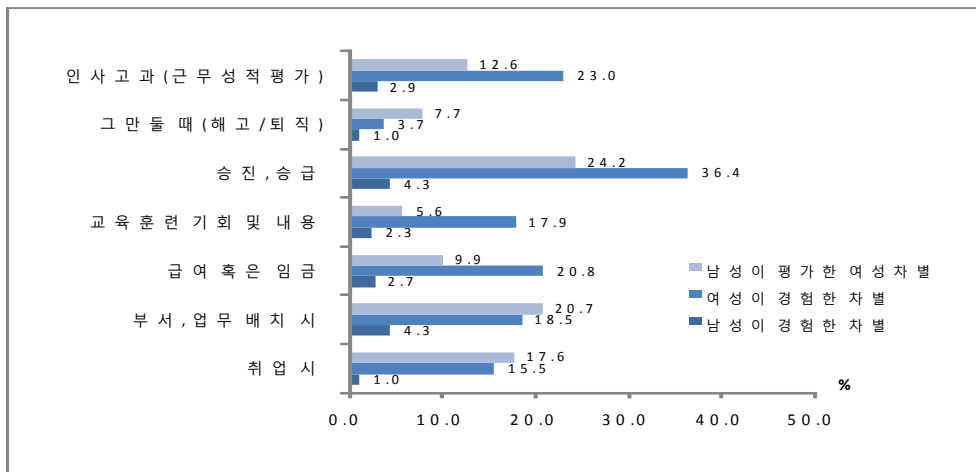
□ 부문별 격차의 확대로 인한 노동시장의 내부의 다양성 확대

- 계층 간 격차의 확대가 지속, 다양한 여성인력의 구성으로 특성별 정책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저임금, 고용불안의 심화와 동시에 여성인력의 전문화로 인한 계층 간 격차 확대(전문가 비중 증가, 비정규직 여성증가 2002년 165만명→2011년 320만명)
 - 결혼 이민자, 북한이탈 주민 등의 유입 등으로 인하여 기초역량 지원 요구가 확대될 것임.

-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 1인 가구의 비중도 높아질 것이고, 혼인관계의 변화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성도 커져 사회복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임.

□ 차별의 암묵화, 구조화로 인한 성차별의 상시화

- 노동시장의 차별이 채용 뿐 아니라 승진이나 평가 등에서 뿌리 깊게 나타남. (남성이 평가하는 여성차별도 심각한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인력패널조사(2010년)

[그림 Ⅲ-2] 차별 경험

- 고용구조 변화, 부문별 격차의 심화로 노동시장의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될 것임.(성별 임금격차 2000년 41% → 2010년 38%)

□ 일생활균형에 대한 사회적 요구 강화

-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기혼여성 중심의 지원방식에서 더 나아가 각 개인 근로자의 일과 생활에 대한 균형 요구가 본격화되고 있음.
 - 모성보호와 육아휴직 제도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더 확대될 것임. 제도와 현실간의 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높게 일어날 것임.

- 휴가휴직제도 뿐 아니라 근로시간의 탄력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됨. 근로시간 단축 뿐 아니라 장시간근로개선, 남성중심적 기업문화에 대한 변화요구도 커질 것임.

□ **대안적인 경제활동에 대한 제도적 발전 및 여성인력 활용 다양화**

- “협동조합기본법”의 출발과 더불어 지역사회 중심의 대안적 경제활동 확산
 - 여성 중심의 사회적 기업이 기업요건 충족면에서 부족했던 한계를 극복하고 여성중심의 협동조합을 통한 창업-고용의 연계가 확산될 것임. 생협활동, 돌봄공동체 등이 우선적으로 대안적 경제활동으로 정착될 것임.

□ **새정부의 출범과 복지 요구 증대**

-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시기이며 새로운 정부의 화두로 복지욕구의 표출
 - 생애주기별로 복지수요가 증가하면서 저출산 및 고령화 등의 주요 관심대상인 여성들이 주요한 정책고객으로 부상할 것임.

나. 기본방향

□ **전 세대와 계층의 여성인력활용 확대를 위한 취업지원 강화**

- 세대별, 대상별 정책 확대 및 차별화
-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일과 생활의 균형 추진
- 경력단절 기간에 따른 정책의 세분화

□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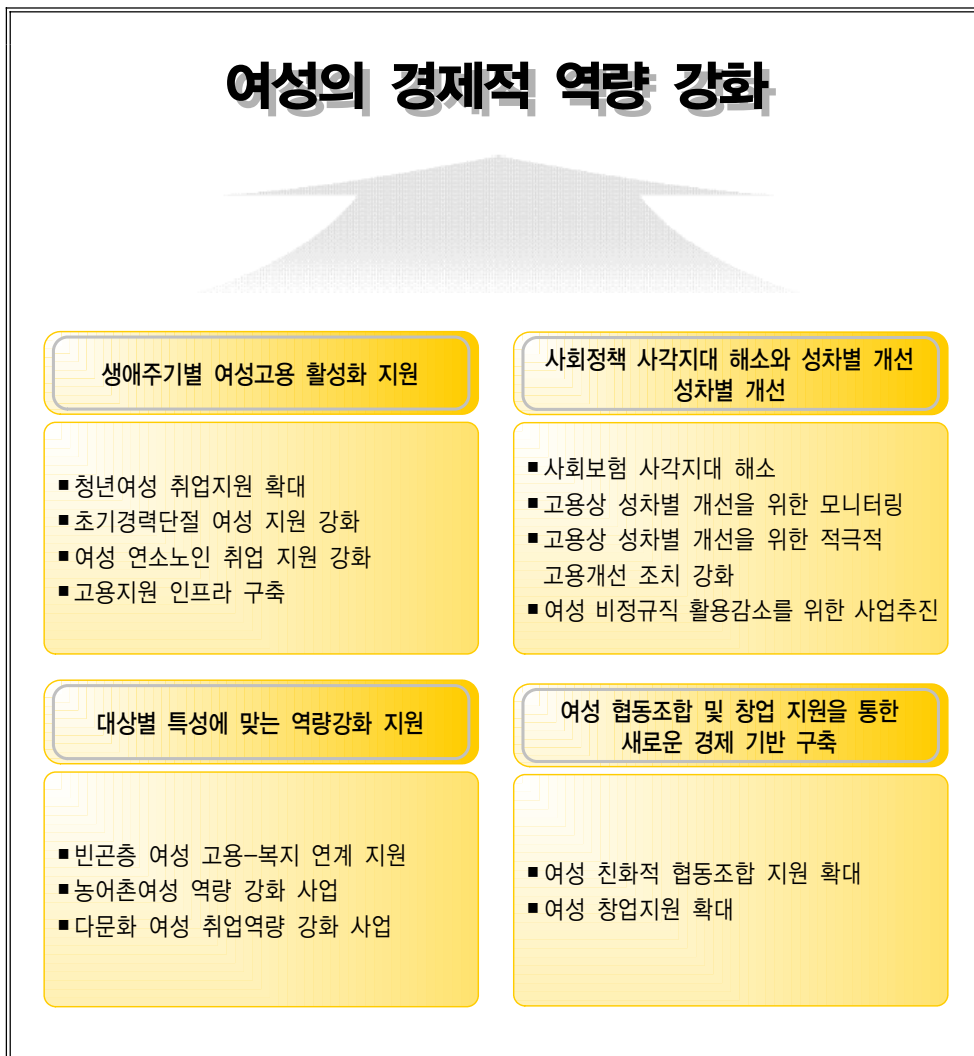
- 사업장 중심의 여성고용정책 전달의 구조적 문제점으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 최소화

□ **고용상 성차별 해소**

- 차별, 성평등 지표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
- 제도와 현실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의 실효성 강화
- 비정규직 활용 감소와 고용복지 지원

□ 여성 특성별 지원 강화

- 여성빈곤층 복지-고용 연계강화
- 농어촌, 이민자 등 지원정책 확대



다. 추진계획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activation) 지원

현안진단

전 생애에 걸쳐 여성들의 취업욕구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의 여성고용은 중장년 이상 계층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청년기부터 중고령자까지 폭넓은 고용 활성화를 통하여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력단절 현상의 지속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중적인, 수요자 특성에 맞는 정책을 필요로 함을 보여주고 있음.

청년층 실업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에서 대졸자 미취업의 성별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는 상황임. 기존에 유지해오던 남녀학생의 진로 다양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고졸 및 대졸 여성을 위한 취업역량교육을 강화하며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지원은 더욱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현재의 정부 정책은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지원 정책에 집중되어 있으며 사업의 규모도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청년층의 취업이행, 초기경력단절 여성,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 재직여성, 중고령자 등 다양한 대상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직업훈련제도가 개인의 선택을 강화하는 계좌제로 전환되면서 집중적인 사례 관리가 필요한 취약계층 여성들에게 직업훈련의 효과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여성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고용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취업률이 아닌 구직활성화로의 목표전환, 다양한 적합직종 개발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1-1-1. 청년여성의 취업지원 확대(여성가족부, 교과부, 중소기업청, 행안부)

- 지역 고졸 여성취업지원 강화(신규)
 - 전문계고 졸업 여학생을 위한 취업 안내서 발간·배포
 - 지역 내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전문계고와의 연계를 통한 취업지원
 - 젠더의식 프로그램 등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의 프로그램을 고졸 취업준비자들에게 확대 보급

- 여대생 경력개발지원 확대
 - 여대생 취업지원을 위한 산학 협력 지원: 산업체와의 여대생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사업
 - 청년층 대상 온라인멘토링 프로그램 개발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여성 과학기술인재 경력개발 프로그램 확대
 - 각 시·도교육청 및 대학 부설 과학영재교육원에 여학생 일정 비율 이상 유지 권장
 - 비전통 분야 진출 여성들의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 공학분야 여교수 비율 제고
 - 공과대학 여학생들의 편의시설 마련: 밤샘 실습 후 탈의 및 세안 등을 할 수 있는 여학생 실습 지원실 및 여학생 편의시설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 청소년 대상의 “비즈쿨 사업”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 등 청년층이 참여하는 창업지원의 여성비중 증가를 위한 정책홍보 강화 및 참여 증진
- 공공부문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추진

1-1-2. 초기 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실시(신규, 중점)
 - 경력단절 직후(단절기간 5년 미만) 여성의 활성화 지원 강화
 - (가칭) 2030 취업지원 센터: 주 연령대가 30대, 고학력 여성들의 비중이 매우 높고 이전 취업경험이 있는 여성들을 타겟으로 함. 접근성이 강화된 새로운 전달체계를 마련하여 적극적 복귀 지원 프로그램을 신규로 수행
- 여성과학기술인 리터너 사업 확대
 - 과학기술전공 여성 비취업자의 규모는 총 539,112명에 달하며 산술적으로 약 72,510명의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존재. 현재 연간 수십명 수준에 머무르는 사업 규모 확대.

1-1-3.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여성 연소노인 직업역량 강화사업(신규)
 - 현재 새일센터를 이용하는 주 연령계층은 40대 이므로 50대와 60대를 위한 취업지원사업은 부재함. 노동시장 경험, 인적자본 등에서 상당히 취약한 계층으로 강화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이 필요함.
 - ※고령자의 기준이 정책에 따라 상이함. 최근 55세~64세를 연소노인으로 분류
 - 물량배정 방식의 훈련사업을 통하여 “연소노인 여성 새로일하기 사업”, “여성 중고령자 신직종개발사업”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함
- 중고령 여성 사회참여 활동 지원(신규)
 - 지역사회 봉사, 취업 등을 연계한 활동 발굴 및 지원

1-1-4.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새로일하기 사업 규모 확대
 - 현재 100여개소에 위치한 새로일하기 사업을 각 지역별로 확대: 2018년까지 전국에 확대해 각 지역여성의 활성화를 지원. 이를 위하여 예산규모의 증가, 상담 강화, 직종발굴 등 연구개발 강화
 - 새일인턴 사업의 성과가 좋으므로 사업규모 확대
 - 새일센터 취업설계사 인건비 현실화 및 고용안정성 제고: 현재 취업상담사와의 인건비 격차로 이직률이 높고 인적자원 구축이 어려움
- 새로일하기 사업 평가지표 개선
 - 활성화(activation)는 취업 자체가 아니라 구직활동참여 등 노동시장으로 이행을 지원하는 목표를 가지므로 평가지표를 수정하여 비경제활동여성인구를 감소시키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설정. 취업률에서 구직률로 중점 평가지표 변경
- 미래 희망직종 개발 사업 실시(중점)
 - 빈 일자리 채우기 방식의 취업지원 정책은 빈 일자리가 가지는 취약성을 여성이 채움으로써 여성취업의 질적 수준을 낮추고 산업구조 개선의 지연하는 등의 부작용을 가짐.
 - 신규 직종개발을 통한 일자리 창출 여력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따른 신규직종개발 역량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지

역별 “신규직종개발” 사업을 상시적으로 추진하여 매년 신규직종 개발 연구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구인수요정보제공 사업 실시(중점)
 - 구인수요정보를 여성훈련기관에 전달하도록 하여 여성훈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을 추진. 구인수요발굴사업은 직종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직종개발-구인수요 정보제공 사업으로 추진
- 지역별, 업종별 여성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Regional Sector Council for Women(가칭)
 - 지역과 업종뿐 아니라 직종별, 직급별로 차별화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과 조직을 지원하도록 함.
 - 중소기업 여성경력개발 지원 사업의 확대를 추진함.
-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및 기업의 직장 보육시설 확대 및 육아지원
 - 과학기술전공 여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육아기 연구단절을 막을 수 있는 보육시설 지원임. 연구기관 밀집지역의 보육시설 확충을 우선적으로 시행함
 - 국공립 연구소의 육아기 여성연구원 근로시간 단축 실적을 모니터링하도록 “여성과학기술인 실태조사”에 항목을 추가함.
 - 여성과학기술인 대상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의 경력과정, 연구단절 등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함.

1-2. 사회정책 사각지대의 해소와 성차별 개선

현안진단

고용과 관련된 사회적 안전망은 기본적으로 산업사회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경직적으로 적용되며 사각지대가 큰 문제점이 있음.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등 기여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안전망에서의 여성 사각지대가 광범위한 현실임. 고용형태가 다양해지고, 사업체의 형태도 다양해지며, 노동의 이동이 빈번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이 사업체단위로 정책이 전달될 경우 제도 및 적용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임.

사각지대의 경우 새로운 고용형태나 차별적인 고용형태에서 더 빈번하게 발

생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여성들에게 큰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여성고용을 취약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됨. 향후 5년간은 현재의 사각지대를 구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제도 자체가 가지는 사각지대는 법 개정을 통하여, 적용상 사각지대는 중층적 전달체계 보완과 행정력 강화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임.

대표적인 고용상의 성별 격차를 사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도록 하는 고용상 성차별 모니터링 센터의 설치가 필요함. 임금격차나 성별 직종 및 업종분리, 유리천정 등 성평등 지표를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고용상 성차별 해소를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개선을 통하여 기업의 성평등 정책이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고용-복지 정책의 확대와 더불어 노동시장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비정규 근로자 감소를 위한 정책과 차별개선 등이 수행되어야 할 것임.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고용노동부)

-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비정규직 등 사업주로부터 고용보험 관련 정책이나 모성보호를 받기 힘든 개인은 고용지원센터에 등록하여 직접 정책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함. 고용지원센터는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역으로 분담금을 징수청구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 사회보험 제도 자체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관련 법을 개정함. 가사종사자, 초단시간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의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여 모든 취업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함(ILO 협약 준수)
- 비정규직 모성보호 개선(중점)
 - 현재 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산전후(유산, 사산)휴가와 관련된 제 서류를 발급받아 고용지원센터에 신청하며, 육아휴직 등은 사업주에게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문제는 사업주에게 근로자가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한다는 점임
 -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근로자 등이 고용지원센터에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먼저 신청하고 사업주로부터 증빙서류를 직접 받

도록 하는 방식을 활용

- 고용지원센터는 모성보호 및 육아휴직 사용자의 고용 변화를 모니터링 할 책임이 있으므로 정해진 휴가 기간 이후 이들의 고용상태를 보고하고 고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그 원인을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

1-2-2.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여성가족부)

- 고용상 성차별 및 성평등 지표개선 모니터링 센터 설치(신규, 중점)
 -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 수준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여성근로자 비중도 높게 나타남. 성별 임금격차를 야기하는 각 요인별 성별 실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요인별 격차 해소 목표를 설정하여 추진함
 - 차별구제업무가 이관된 후 기업내 성차별, 성희롱 등에 대한 총괄적인 현황의 파악과 구제처리에 대한 모니터링이 실질적으로 어려워짐
 - 고용상 발생하는 각종 성차별들이 채용단계 뿐 아니라 업무배치, 승진, 성과평가, 보상 등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성차별발생과 구제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모니터링 센터를 설치하여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를 매년 발표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함
 - 센터는 모니터링과 함께 제 요인에 대한 심층연구 등을 위탁운영하도록 하며,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가칭 '성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

1-2-3.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강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배치와 승진 모니터링 강화(신규)
 - 현재 적극적고용개선조치는 이행실적보고서와 시행계획서를 통하여 사업주의 자발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고용개선이 실제로 가시화되지 않으며 특히 관리직 비중의 개선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채용단계의 모니터링보다 차별이 가장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배치와 승진을 모니터링하여 경력형성과정의 차별개선에 집중하여야 하므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보고내용에서 업무배치와 승진에 대한 양적 심사기준을 강화하도록 개편함.
- 공기업 차별개선 사업: 공기업 경영평가에 AA실적 반영, 공기업 AA 실적 공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성과평가와 사후 조치 강화
 - 현재 상시고용인원 500인 이상을 대상으로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대상 사업자 확대 이전에 상별 조치를 강화하여 실제로 고용개선의 실적을 축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적극적고용개선조치 결과를 평가하여 우수 사업장에 대한 정부조달 연계를 추진하고, 미달사업장에 대한 의무 비율 부과(관리자 비중 부과), 미달사업장 명단공개 등을 추진함

1-2-4.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 추진(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고용은 여전히 OECD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으나 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방만한 운영으로 인하여 공공부문의 고용이 증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상존. 여성고용은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단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으로 해당 사업장을 지원하도록 함. 이 때 남녀간 차별적 전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 비례할당 등 적용
- 비정규 여성근로자의 고용복지기금 마련(신규)
 - 비정규직 법이 시행된 이후 대기업의 비정규직 활용은 감소, 중소기업 및 영세기업 중심의 비정규직 활용증가 경향이 뚜렷
 - 영세사업장 여성비정규근로자는 영세사업장, 여성, 비정규라는 3중의 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집단으로 이들의 임금 및 근로기준, 사회보험, 복리후생이 매우 열악한 상황임. 사업체 단위로는 극복할 수 없는 구조

적 문제이므로 기금을 조성하여 근로복지를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현안진단

남녀간 차이 뿐 아니라 여성내부의 격차가 확대되어가는 것이 최근의 주요 변화임. 계층 간 소득수준의 차이는 저임금, 고용불안 심화 등이 주요 원인이며 베이비부머의 은퇴, 고령자의 증가 등으로 인한 소득 불안정성 확대와 빈곤의 심화가 향후 급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여성 내부의 차이들은 이들의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요구를 야기하고 있어 이에 대한 특성별 지원이 필요함.

복지에 대한 기대와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정책 상황에서 고용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복지 정책이 가장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함.

고용-복지정책의 수요계층을 발굴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연계하는 방안이 필요함. 전통적으로 취약했던 여성가장이나 한부모, 농어촌여성이나 기타 취약계층 여성에 대한 세밀한 사례관리가 강화되도록 정책을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여성가장·한부모 통합지원 센터(신규)
 - 여성가장·한부모의 50% 이상이 저소득계층으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취업지원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
 - 현재 새로일하기 사업, 취업성공패키지에서는 취약계층 중 하나로 여성가장·한부모를 분류하고 있으나 이들은 돌봄노동 등의 부담과 가구원이 미성년자인 빈곤 고위험계층으로 특화된 사례관리가 필요. “여성가장·한부모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별도로 실시하고, 고용과 복지정책을 통합 지원하는 특화된 사례관리 실시
- 빈곤층 여성 활성화 지원사업

- 각종 취업지원사업의 빈곤층 여성대상 사업의 예산규모 증가, 물량배정 방식의 훈련지원, 특화된 사례관리 지원

1-3-2. 농어촌여성 역량강화 사업(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농어촌여성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재촌 여성뿐 아니라 귀농여성을 대상으로 경영인으로서 영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전문화를 위한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사업
 - 여성농어업인 중 경영성공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고 경험을 축적하여 나눌 수 있는 DB를 구축함
-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협약 지원 제도 도입(신규)
 - 배우자 공동경영인 등록 농가에 대해 연금 특례 등 부여
- 농어촌 비농어업 종사 여성 취업지원 사업(신규)
 - 농어촌에 농어업비중이 50%미만인 겸업농가 비중이 2006년 36.9%에서 2010년 46.7%로 지속적으로 증가함. 이들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고용지원 서비스가 시급한 실정임
 - 현재 지자체 일자리 사업 중 여성농어업인 대상의 특화된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함. 새로일하기 센터의 농어촌형 모델개발 등을 통하여 센터가 없는 지역에 추가적으로 센터를 지정하여 추진.

1-3-3. 다문화 여성 취업역량강화 사업(여성가족부)

-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제고 및 일자리 지원(신규)
 - 기초학력제고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 지원
 - 각급 학교단계 검정고시 및 원격교육 지원, 학업 및 직업훈련시 생계비 지원
 - 집단상담 및 훈련 프로그램 강화, 중소기업 취업 지원 사업의 규모와 프로그램 확대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현안진단

현재의 경제시스템하에서 계층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취약계층의 확대는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원인이 됨.

여성들의 대안적인 경제활동이 확대되도록 하여 경제활동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새로운 고용형태와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 등으로 인하여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생산 및 소비활동의 활성화, 사회적 경제의 확대 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여성들을 중심으로 동 영역으로의 진출을 확대해나갈 필요가 있음.

기존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기 위한 방편이었으나 일반적인 기업의 형태를 요건으로 함에 따라 노무를 주로 제공하는 돌봄이나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이윤창출이 어려워 여성들의 활동이 사회적 기업으로 발전하는데 한계를 보여 왔음. 결과적으로 여성들이 중심이 된 사회적 기업은 정부의 지원 및 발전에서 누락되어 왔음.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여성들이 주도적으로 사회적 경제를 확산해갈 수 있도록 여성중심 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고부가가치 부문의 창업 등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기반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음.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돌봄 협동조합 등 지원 강화(신규, 중점)
 - 다양한 사업을 하는 사회적기업이 성장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고용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업은 돌봄영역의 사회적기업임. 여성다수 분야인 교육, 사회복지, 보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임.
 - 현실적으로 교육, 사회복지, 보육 영역 등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의 우선구매 등 지원은 규모가 작아 현실적으로 유용하지 않으므로, 기업운영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지원 또는 현실적인 기업컨설팅 등에 더 초점을 맞춘 정책이 필요함.
 -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는 “돌봄영역 협동조합 지원 사업”을 통하여 이들의 자립지원 여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함

1-4-2. 여성 창업지원 확대(중소기업청)

- 여성 기업 금융지원 할당제 실시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실적은 최근 3년간 10% 미만이며, 신용보증지원, 기술신용보증 지원 등에서도 실적이 매우 저조함.
 - 고부가가치 사업의 여성창업자금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인에 대한 정책자금 및 민간금융지원방안을 추진
- 지식창업 및 1인 창업의 여성참여 확대
 -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창업에 여성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지원서비스 기관과 중소기업청의 협력사업 실시. 창업 컨설팅 등 여성기업의 요구와 특성에 맞는 지원 강화
- 취약계층 여성 창업 지원 확대
 - 여성가구주 뿐 아니라 다문화 여성, 북한이탈 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 확대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activation) 지원	
전문계고 졸업생 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통계자료
청년층 경력개발 사업 건수	
경력단절 5년 미만 여성들의 취업지원 수혜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여성 중고령자 취업훈련 참여율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새로일하기 센터 및 예산 증가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료
신규직종 발굴 및 시범사업 건수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건수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및 국회입법자료

64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대상 지원건수	
모니터링 센터 설치 실적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개선 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마련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장/ 한부모 취업지원 통합지원센터 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취약계층 취업지원 수혜자 수	
농어촌지역 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	농림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DB 건수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제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여성중심 협동조합 지원건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여성기업 금융지원건수	중기청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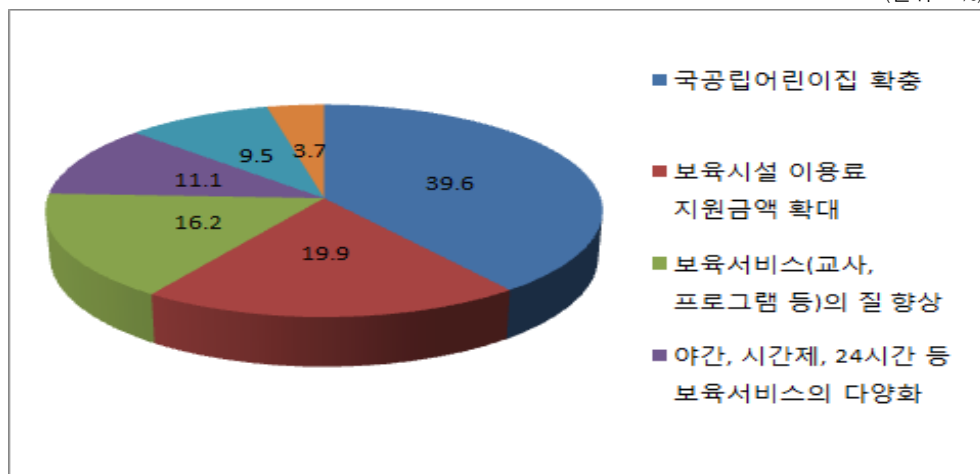
2.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기반구축

가. 현황 및 진단

- 3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실제로 돌봄지원 및 일가정양립실행 측면에서 상당한 정책적 성과가 있었으나, 3차 기본계획 내에서는 이러한 정책지향성이 발견되고 있지 않음.
 - 3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보육지원은 큰 폭으로 확대되었으며, 아이돌보미 지원, 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서비스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돌봄지원정책이 새로 도입되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지향성은 3차 기본계획 내에 명확히 드러나고 있지 않음. 3차 기본계획 원안에서 새로이 의제화되었던 ‘돌봄의 사회적 분담’은 여성인력활용 및 권익보호의 일부로 축소되었음. 원안에서 제기된 소과제들은 수정안에서도 많은 부분 그대로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계획의 방향성에서 정책지향성과 의제의 중요성이 감소한 결과를 초래함.
- 자녀양육지원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12부터 만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부터 만3~4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임. 또한 개별보육서비스인 아이돌보미제도와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보육도 크게 확대되어 있음.
 - 보육지원은 큰 폭으로 확대되어 2011년 현재 GDP 대비 0.51%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0~5세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수는 1990년 1.2%에 불과하였으나, 2010년에는 44.6%까지 크게 증가하여 과반수에 가까운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 중 보육료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의 수는 2005년도 54.2%에서 2010년도에는 68.7%까지 증가하였음. 이에 더하여 '12부터 만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13부터 만3~4세 아동까지 확대될 예정임.
 -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개별보육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여 2007년 도입되었으며, 시간제 돌봄 뿐 아니라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가 도입되는 등 서비스도 다양화되어 왔음. 이에 따라 2007년 도입당시 22억이던 예산이 2011년 402억 까지 증가하는 등 규모가 확대되고 있음.

- 한편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보육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초등돌봄교실을 중심으로 확장되어 옴.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04년 23,347명에서 '11년에는 102,089명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초등돌봄교실의 경우 '06년 31,788명에서 '10년 6월 기준 104,496명으로 이용자가 급증하여 왔음.
- 이와 같이 자녀양육지원은 크게 확대되어 왔으나, 주로 수요자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이 확대되어 왔음. 무상보육으로 수요자지원확대의 경향은 더욱 가속화된 가운데, 전달체계 정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현재의 '보육료지원' 확대에서 '서비스전달체계' 확대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전달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계층의 0~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수요만 확대했을 때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실제로 무상보육 실시 후 이루어진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영유아보육정책으로 응답자의 39.6%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꼽고 있어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금액 확대' 응답자(19.9%)의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응답을 보임.

(단위 : %)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그림 Ⅲ-3] 영유아보육 정책 우선순위(1순위)

- 한편 아동돌봄 뿐 아니라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등의 돌봄체계 또한 확충됨.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단계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으로 노인돌봄비용의 사회화 및 돌봄의 공식화가 이루어짐.
 - 다양한 사회서비스바우처 사업이 단계적으로 개시되어, 2007년에는 노인종합돌봄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도입되었고, 2008년에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과 가사간병지원사업이, 2009년에는 장애 재활치료사업이, 2010년에는 장애아동언어발달지원(10)이 도입되어 현재 7가지 사업이 운영되고 있음.
 - 2008년도 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후 전체노인중 요양급여 수급자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2008년도 3.9%의 노인이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보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2010년도에는 5.9%까지 증가하였음.
 - 그러나 한편으로 이러한 돌봄서비스는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체계의 시장화를 기반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은 질높은 서비스 전달을 방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전달체계를 재정비하고, 서비스질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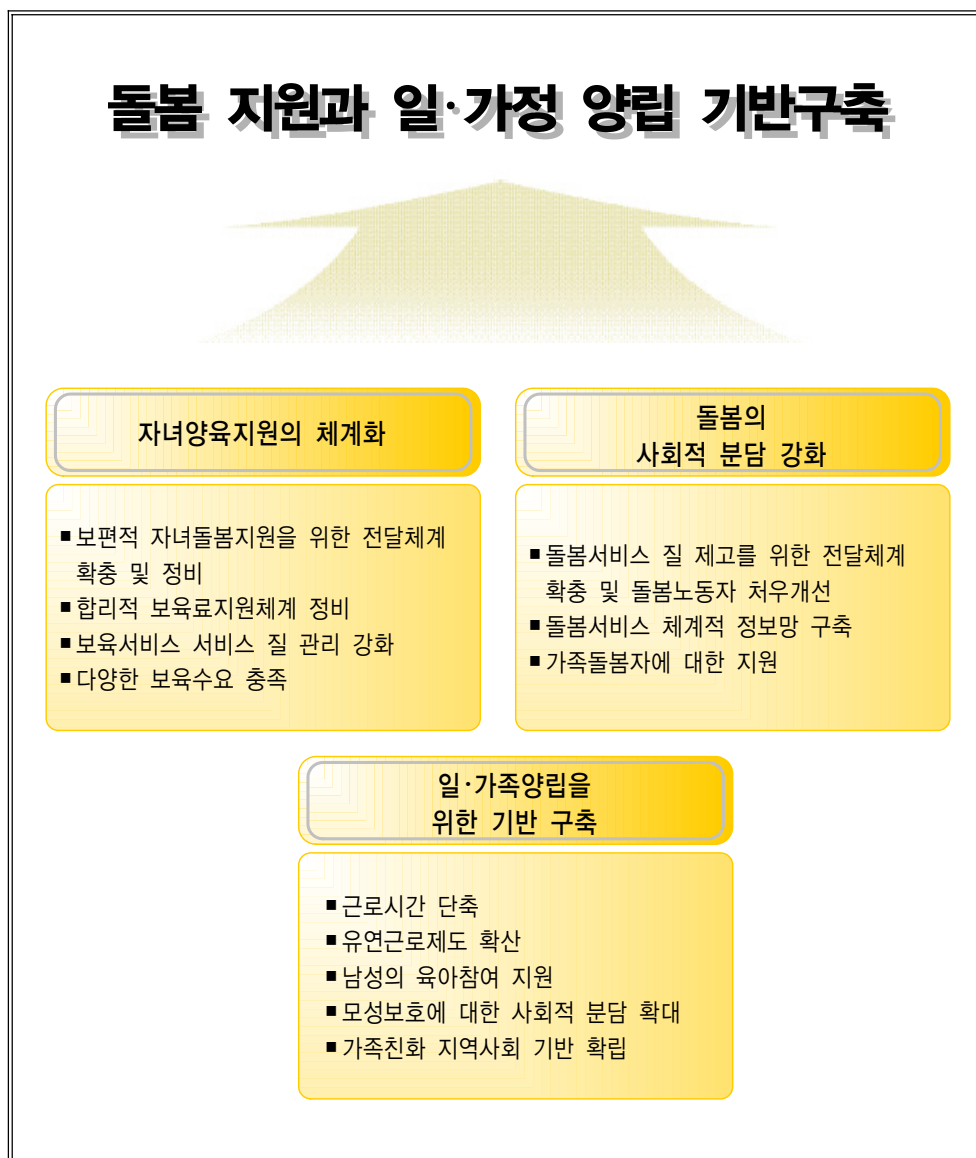
- 일가족양립지원을 위한 정책은 지난 3차계획 기간 동안 가장 정책적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으로, 육아휴직제도의 확대, 가족돌봄휴가제도의 도입, 직장보육시설 지원, 가족친화인증제 및 유연근무제 실시 등이 이루어짐. 실효성 측면에서는 많은 한계를 안고 있으나, 제도적으로는 해외 선진국의 면모를 갖춘 것으로 평가됨.
 -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1년부터는 통상임금의 40%, 최대 100만원까지 인상됨. 육아휴직의 대상도 만6세이하 아동으로 확대하였고,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가 도입되었음. 이러한 제도적 확대의 결과 육아휴직 사용자가 육아휴직사용자도 '05년 10,700명에서 '10년 41,732명으로 상당히 증가하였음.
 - 한편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의 경우에도 출산휴가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3일의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도입하였고, '11년 개정에서 5일로 확대되었음. 또한 가족의 질병, 사고, 고령 등의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음.
 - 또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를 의미화하여 직장보육시설 이행률을 높이는데 기여하였음. '05년 38.4%에 불과했던 의무이행률은 '10년 57.5%까지 증가함.

- '08년 도입된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임. 가족친화기업 확산과 더불어 주40시간 근무와 유연근무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음.
- 이와 같은 정책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여전히 장시간 근로가 일반적 근로행태로 남아있어 일가족양립의 근간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남성의 육아휴직 지원은 크게 낮은 수준이며, 고용보험 사각지대로 인한 모성보호의 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음.

나. 기본방향

- 4차 기본계획에서는 3차 기간동안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돌봄지원에 대해 확대의 방향성을 점검하여 보완, 체계화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 자녀양육지원정책의 경우 최근 무상보육의 도입 등으로 크게 확장되고 있어, 방향성의 재점검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음. 단순한 '보육료지원' 확대에서 '서비스전달체계'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등 전달체계 확충 및 정비를 제안하였음. 또한 보육료지원을 위해서는 전일제와 반일제로 지원체계를 구분하는 등 합리적 보육료지원체계 정비가 필요함. 나아가 보육서비스 서비스 질관리를 강화하며, 아이돌보미, 방과후보육, 장애아동보육, 민간베이비시터관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등의 다양한 돌봄지원정책을 제안하였음.
 - 한편 사회서비스 및 장기요양보험 등의 돌봄서비스는 제공주체의 다원화와 공급체계의 시장화를 기반으로 확대되어 왔고, 이러한 시스템은 질높은 서비스 전달을 방해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한편으로는 국공립 장기요양기관 등 공적인 전달체계를 확충하고, 다른 한편 돌봄인력의 처우개선과 자격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등 복지전달체계 정비에 맞추어, 가족정책전달체계에서도 특화된 서비스로서 다부처에서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는 돌봄서비스에 대한 원스탑 정보망을 구축,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음. 마지막으로 가족돌봄자에 대한 휴식 및 휴가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일가족양립을 위한 기반구축을 제안하였음.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 확산을 통해 일중심 문화에서 벗어나며,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과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확대를 통해 함께 돌보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기업인증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친화제도의 지역사회기반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다. 추진계획

2-1. 자녀양육지원의 체계화

현안진단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실질임금의 감소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자녀양육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임. '12년에는 전계층의 0~2세 아동에 대한 무상보육제도가 실시되는 등 수요자지원정책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이를 전달할 전달체계의 부족으로 인하여 오히려 맞벌이가족이나 한부모가족 등 실수요자들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확대된 자녀양육정책의 방향성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크게 제기됨.

무엇보다 현재의 '보육료지원' 확대에서 '서비스전달체계' 확대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자녀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성구현은 반드시 '동일한 보육료'지원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보편적 서비스접근권'에 있음이 다시한번 상기될 필요가 있음. 전달체계가 부족한 상황에서 모든 계층의 0~2세 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여 수요만 확대했을 때 서비스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실수요자들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등 공적 전달체계를 중심으로 전달체계 확충이 이루어져야 함.

다음으로 현재의 전달체계 내에서 보육시설이용 우선순위기준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재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가족은 보육시설이용의 2순위로 설정되어 있어, 맞벌이가족보다 순위가 낮은 상황이므로 취업한 한부모의 경우에는 1순위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육지원확대에 따라 보육시설 만원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등의 우선순위 규정의 실효성을 강화하여야 함.

한편 '보육료지원' 확대에서 '서비스전달체계' 확대로의 방향성전환과 함께 현재의 보육료지원체계는 합리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음. 무엇보다 취업한 부모와 비취업부모의 서로 다른 정책욕구를 구분하여, 시간제와 전일제를 구분하여 비용을 차등지원하며, 전일제는 취업한 부모에게만 지원하여야 함. 또한 보육시설 비이용아동에 대해 지급되고 있는 양육수당은 '보편적 서비스접근'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는 국가지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며, 중앙중

부 수준의 상한선이 없고 지차체별로 상한선을 설정하게 되어 있어 부모의 보육비부담을 증가시키고 보육료인상을 가져오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특별활동비에 대한 상한선 조정이 중앙정부 수준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다양한 보육서비스의 질관리를 위한 조치들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보육시설의 경우 서비스질관리강화를 위하여 평가인증제와 시설예산지원을 연계하고, 부모참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 평가인증제도 내 부모참여는 보육시설의 자체점검위원회의 구성원이 되거나 평가인증사무국의 만족도조사에 참여할 수 있으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질적인 평가근거로 활용되고 있지 않음. 부모의 참여 활성화는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와도 연결될 수 있음. 비용만 형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소비자로서 부모가 정책전달현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수요자참여를 강화하여야 함.

또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공립 보육교사의 급여는 155만원인데 비하여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급여는 102만원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어린이집의 경우 보육교사의 근무경력이 3년 2개월이었으나 호봉은 1.8호봉만 반영되는 등 호봉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의 임금체계에 대해서도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지원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보육정책 외 다양한 아동돌봄정책 또한 정책이 필요함. 아이돌보미의 경우, 수요-공급간 매칭을 활성화하고 인력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YWCA 아가야 사업과 같이 상시 모집과 상시 교육을 통해 충분한 인력풀을 형성하며, 돌보미 양성교육을 단계별로 전문화하고, 경력에 따른 시스템 도입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방과후보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등 현재 여러 부처에서 서로 다른 전달체계를 통하여 공급되고 있으나, 전체 이용자가 초등학교 자녀를 둔 맞벌이가구의 40% 정도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공급량이 충분하지 않음. 한편 중증 장애아동 돌봄서비스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등 다부처에서 제공하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양육지원'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이하 중증아동에게 지원되며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지원'은 경증아동에게만 지원되어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의 중증아동에 대한 지원이 누락됨.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가 필요함. 또한 현행 인력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확대되고 있는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인력관리를 강

화하고, 부모들간의 돌봄품앗이와 돌봄정보를 공유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를 확대하여야 함.

2-1-1. 보편적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정비(보건복지부)

-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중점)
 - 보육시설 보육분담률(이용아동수 기준) 중장기적 목표치를 30%로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중장기계획과 실적관리체계를 도입함.
-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순위 기준 정비 및 실효성 강화
 - 현재 2순위로 되어 있는 저소득층이 아닌 한부모의 우선순위를 1순위로 상향조정
 -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통해 민간보육시설까지 보육시설 우선순위 실질적 적용

2-1-2. 합리적 보육료지원체계 정비(보건복지부)

- 전일제 및 시간제 이용비용 차등화(중점)
 - 취업지위 등 수요에 맞는 시간제, 전일제 이용제도 도입
 - 맞벌이, 취업한부모 등 취업지위에 근거한 전일제 비용지원
- 양육수당 개편방안 검토
 - 보편적 서비스제공에 역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양육수당 개편 검토, 장기적으로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으로의 전환 검토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부모부담 완화
 - 지역별로 달리 설정되어 있는 특별활동비 등 기타필요경비에 대한 중앙 수준의 상한선 도입

2-1-3. 보육서비스 서비스 질 관리 강화(보건복지부)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 시설평가인증제의 결과를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과 연계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함.

- 평가인증제도 내 부모참여 강화
- 수요자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모든 보육시설에 대해 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운영 의무화 등 어린이집 운영 공개
 - 평가인증결과, 행정처분, 인력 및 서비스 정보 공개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의 저임금 및 장시간근로 등에 대한 처우개선
 - 현재 국공립 및 직장보육시설에만 적용되고 있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기준’을 민간시설에도 적용 검토

2-1-4.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
 - 상시모집과 상시양성을 통한 인력풀 형성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인력풀 공유, 아이돌보미 관리자간 역량강화 워크숍 정기 개최
 - 아이돌보미 경력에 따른 시스템 도입방안 검토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 평균소득 100% 이상 중증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
 - 아이돌보미를 중증아동에게 지원하는 방안 모색
- 방과후보육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다부처에서 제공중인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정비하고 공급량을 확대함.
- 민간베이비시터 관리강화(신규)
 - 민간베이비시터에 대한 돌봄교육 및 인력관리 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 지역주민과 육아정보를 공유하고 돌봄을 품앗이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확대

2-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현안진단

자녀돌봄 뿐 아니라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에 대한 돌봄의 공백문제도 큰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증가하는 노령인구로 인하여 노인인구의 돌봄문제는 향후 5년간 중요한 사회문제로 부각될 예정임.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적절한 서비스전달체계의 구축이 선행되지 않은 제도도입으로 공급체계의 혼선이 크게 발생하고 있음. 지자체가 운영하는 국공립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전체의 1.5% 수준에 불과하여 수요에 크게 못미치고 있음. 국공립 장기요양보험기관은 이용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수요자가 많은 기관으로 비중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민간 요양보험기관들의 질관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빈번함에 따라 공급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함

다음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의 경우 취약계층의 일자리사업인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에서 출발하여,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의 이용수단 다변화의 성격을 지닌 바우처를 결합하였음. 이에 따라 수요자의 만족도가 정기적으로 조사되며 사회서비스 품질관리 전담기구 설치가 추진되는 등 서비스품질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돌봄서비스의 질을 담보하는 것이 서비스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공급측면인 서비스인력에 대한 교육과 노동조건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될 필요가 있음. 최근 ILO가 가사노동자 협약을 채택하는 등 돌봄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한편 현재 복지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희망복지지원단 설치·운영이 진행중에 있으며, 이러한 개선방향에 맞추어 가족정책전달체계도 특화·재정비될 필요가 있음.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특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원스탑 정보망을 구축하고 가족복지 전달체계의 브랜드사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음. 돌봄서비스는 아이돌보미, 사회서비스사업, 장기요양, 장애아동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를 포괄함. 돌봄서비스 정보망을 통해서도 워킹맘 등 수요자의 서비스접근성을 확대할 뿐 아니라, 공급측의 현황에 대한 통합 통계망을 구축하여 지속점검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확대하는 가운데, 가족내 돌봄에 대한 휴식 지원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가족 내 돌봄자를 위한 휴식지원은 현금형태의 직접적 보상이 아닌 일시돌봄제공 등 휴식지원의 형태로 이루어져 가족돌봄자의 재충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새로 도입된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2-2-1.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국공립 요양보험기관 확충(중점)
 - 1.5%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공립 요양보험 기관의 비중 확대
- 요양인력 임금가이드라인 제공 및 하한선 마련(신규)
- 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 등 처우개선(신규)
 - 가사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돌봄노동자 4대보험 적용
- 돌봄노동자의 자격관리 강화
 - 노인종합돌봄, 장애인활동보조, 산모신생아도우미, 가사간병, 장애재활치료 등 돌봄서비스인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인력관리 및 교육훈련 강화.

2-2-2. 돌봄서비스 체계적 정보망 구축(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돌봄서비스 원스탑정보망 구축·운영(신규)
 - 아이돌봄미, 사회서비스사업, 장기요양, 장애아동돌봄 등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원스탑 정보지원서비스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가족정책전달체계에서 지원. 워킹맘 등 수요자의 서비스접근성을 확대하고, 공급측의 현황에 대한 통합 통계망을 구축함.

2-2-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신규)
 - 비공식적으로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자들에게 재충전의 시간을 주기 위한 레스파이트(respite) 제도를 도입, 운영함.
- 가족간호휴직제도 실행점검 및 활성화방안 모색
 - 새로 도입된 가족간호휴직제도의 실행상황을 점검하고, 제도의 정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함.

2-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현안진단

일과 가족의 양립은 지난 기본계획 기간 중 가장 정책적 진전이 많이 이루어진 영역임. 두가지 큰 정책의 방향은 휴가 및 휴직제도이며 다른 하나는 근로시간 유연화제도임. 휴가 및 휴직제도는 선진국 수준의 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진 반면 근로자들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근로시간의 유연화는 시차출퇴근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근로유형의 확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유연한 근로형태는 취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채 단시간근로를 비롯한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유연한 근로제도가 가지는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여성노동시장의 문제점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됨.

제도의 도입과 활용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원인은 일가족양립제도가 현행 근로방식을 그대로 둔 채 여성근로자가 일과 가족을 양립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임. 결과적으로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제고, 저출산의 완화라는 두가지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함.

기혼여성들의 일·가족의 양립과 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추진된 기존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전체 남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권 보장으로 동 정책의 범위가 확대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하여 현재의 패러다임하에서 개선해야할 정책 뿐 아니라 전체의 일과 생활 방식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선이 요구됨.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근로제도의 확산을 위한 정책이 필요함.

활용도가 떨어지는 휴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도 필요함. 특히 초기양육기 자녀의 성장에 아버지의 돌봄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미취학아동 아버지들의 자녀돌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따라 남성의 자녀양육 및 가족돌봄 참여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또한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그동안 기업인증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친화제도의 지역사회기반도 확립할 필요가 있음.

2-3-1. 근로시간 단축(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사회 및 직장 문화 개선사업(신규)
 - 주당 40시간의 근로가 실질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문화 개선을 위한 교육자료 생산 및 보급, 캠페인 등 실시

-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직무분석 및 매뉴얼 보급사업
- 근로시간대 조정을 위한 유연한 근무형태 발굴(신규)
 - 실근로시간 뿐 아니라 근로시간대 역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중요한 과제이므로 현재의 경직적 근로시간대 운영, 교대제, 야간 및 주말근로 방식을 일가정 양립가능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근로시간대 운영방식” 발굴 사업 실시
- 여성다수 업종의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법개정(신규)
 - 현재 법정 근로시간 준수에서 제외된 특례업종에 여성다수 업종이 다수 포함되어 장시간, 휴일근로, 야간근로 등이 만연한 상황임.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미용·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등은 대표적인 여성다수 특례업종으로 이에 대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함
- 단시간근로 청구권의 확산
 - 현재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근로시간 단축을 전 근로자 계층으로 확산시켜, 고령자,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일반적인 단시간 근로제도를 확산해 가야함

2-3-2. 유연근로제도의 확산(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공공기관 의무적 유연근로제 유형별 실시(신규)
 - 유연근로제도 도입이 이루어졌지만 활용현황은 여전히 미흡함. 근로시간의 탄력성과 근로장소의 유연성 등을 민간에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범사업, 인사관리 방식의 변화를 유도해나가야 함.
 - 공공기관에 의무적 유연근로제를 부가하여 각 유연근로제 유형별로 일정 비중 이상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에 산입함
- 유연근로제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 유연근로제도에 따른 인사관리 매뉴얼 제작 및 보급 사업을 추진함.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 인사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사업 실시
- 스마트워크 지침 마련 및 민간기업 스마트워크 확산

2-3-3.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및 공공부문 우선실시 촉진
 -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을 제고를 위한 급여수준 상한선 인상
 - 공공부문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할당 시범사업 실시 및 월 1회 육아데이 사업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자료축적 및 유급일수 확대
 - 남성의 유급출산휴가 사용과 관련한 정책이용현황 점검 및 통계자료 축적
 - 유급3일, 무급2일의 휴가를 5일 전체에 대하여 유급화 추진
- 아버지 학부모회참여 및 아버지교육 확대
 - 남성 학부모회 참여 활성화 및 주말체육교실 등 놀토 프로그램 개
 -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아버지돌봄나눔, 아버지교육 확산

2-3-4.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고용노동부)

- 산전후휴가 급여 90일분 지원 대상기업 확대
 - 대기업에 대한 산전후휴가급여도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여성고용기피 방지
- 대체인력장려금 인상 및 대체인력 구인구직 네트워크 확충
 -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부담을 막기 위해 대체인력채용지원금 수준을 인상함
 - 대체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기위한 구인구직 네트워크 확충

2-3-5. 가족친화 지역사회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지역사회 맞춤형 EAP 실시(신규)
 - 근로자 지원제도(EAP)가 선진국에서는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나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에 소극적 시행에 그치고 있음.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사회 기반의 EAP 확산이 필요함.
 - 공단이나 여성근로자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EAP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맞춤형 EAP” 프로그램 개발, 보급사

업을 추진

- 가족친화인증의 지자체 평가 반영(신규)
 - 지역의 기업 중 가족친화인증 기업수 비중을 지자체 평가에 반영하여 가족친화적 지자체 환경을 조성하는데 지자체가 협력하도록 함
- 가족친화인증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과 연계(신규)
 - 여성친화도시 지정시 가족친화인증 기업의 수와 비중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여성친화도시의 목적 중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증진 등이 포함되므로 여성의 경력단절방지,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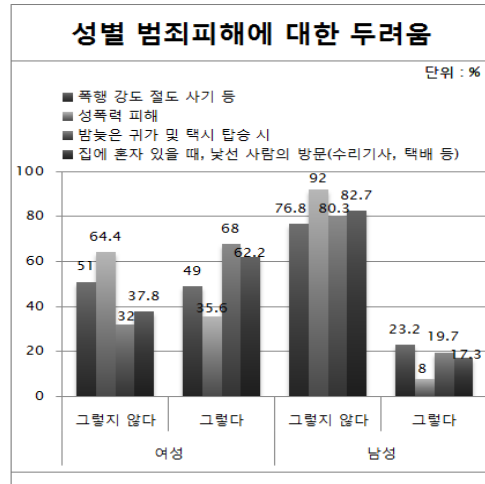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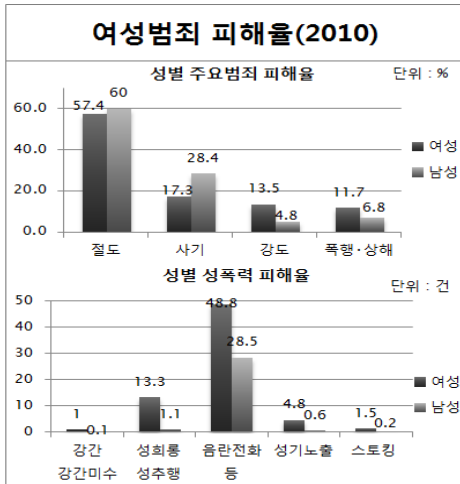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2-1. 자녀양육지원의 체계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분담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X 100
영유아육아지원시설 이용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수/ 0~5세 아동수) X 10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수	
2-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사회서비스 인력 이직률	(집계필요)
2-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근로시간제도 법 개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단시간근로청구권 건수 증가율	
유연근로제 실시 공공기관 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수 비율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지역사회 기반 EAP 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여성친화도시 선정 기준에 지표반영여부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가. 현황과 진단

-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을 통한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제도정책이 수립·추진되었으나 국민의 정책적 체감도, 가시적인 정책적 성과는 미흡
 - 그간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과 보호시설·상담소 등의 피해자보호체계 마련, 성폭력범죄자와 가정폭력가해자에 대한 처벌 및 재범방지수단 제도화,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과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등 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그러나 일반인이 일상생활이나 삶의 공간에서 느끼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두려움은 여전하고, 최근들어 이웃 등 지역주민에 의한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지역사회 안전의 중요성 부각
 - 절도, 강도, 폭행 등에서 여성대상 범죄피해가 남성보다 많고 성폭력피해의 경우 절대적으로 여성의 피해율이 높은 상황임.
 - 실제 범죄피해율 뿐 아니라 삶의 공간인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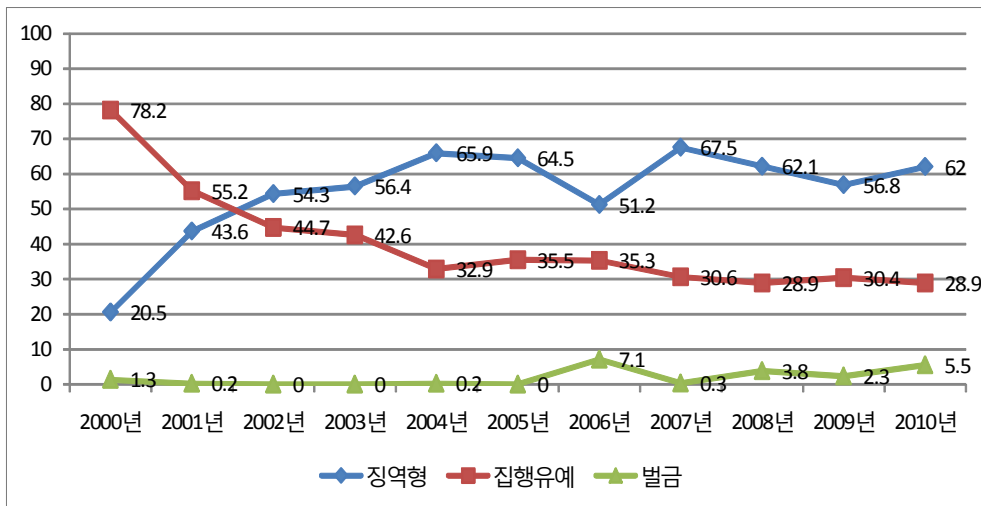
자료원: 주요범죄 피해건수(통계청, 2008), 여성가족부(2011) 2010년 전국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성폭력범죄자,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수위는 높아지고 있지만 실제 실효성은 낮은 상황

-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높지만 집행유예 선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처벌 강화가 일률적으로 집행되지 않고 있음.

-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의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를 보면, 징역형은 2000년 20.5%에서 2010년 62.0%로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유예는 2000년 78.2%에서 2010년 28.9%로 감소하였음.

- ※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의 경우 그 불법의 정도가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나 집행유예가 여전히 30% 정도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성폭력범죄를 경하게 여기는 인식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음.



자료: 김지선 외(201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추세와 동향분석(2000-2010년)』, 여성가족부, p.104.

[그림 Ⅲ-4] 아동·청소년대상 강간범죄자 최종심 선고형의 연도별 추세

- 가정폭력사건은 기소율과 가정보호사건 송치비율이 감소하고 불기소처분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 기소율은 2003년 19.1%에서 2010년 15.0%로, 가정보호사건 송치비율 역시 2003년 59.2%에서 2010년 15.8%로 감소하였고, 불기소율은 2003년 59.2%에서 2010년 68.3%로 증가하였음. 그 중 기소유예 비율은 2003년 30.0%에서 2010년 22.3%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기소유예의 수단인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활용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Ⅲ-1〉 가정폭력사건 접수 및 처분현황

단위 : 명(%)

연도	계	기소			가정 보호 사건 승치	불기소			소년부 승치	타관 이송	미제
		계	구공판	구약식		계	기소 유예	기타*			
2003	4,781	913 (19.1)	292 (6.1)	621 (13.0)	1,016 (21.3)	2,830 (59.2)	1,435 (30.0)	1,395 (29.1)	22 (0.5)	-	-
2004	12,232	4,367 (35.7)	471 (3.8)	3,896 (31.9)	1,286 (10.5)	6,131 (50.1)	2,771 (22.7)	3,763 (30.7)	45 (0.4)	-	-
2005	6,079	1,166 (19.2)	202 (3.3)	964 (15.9)	947 (15.6)	3,859 (63.5)	1,762 (29.0)	2,190 (36.0)	14 (0.2)	-	-
2006	3,932	600 (15.3)	99 (2.5)	501 (12.7)	657 (16.7)	2,635 (67.0)	1,151 (29.3)	1,518 (38.6)	6 (0.2)	-	-
2007	3,174	443 (14.0)	69 (2.2)	374 (11.8)	611 (19.3)	2,102 (66.2)	857 (27.0)	1,256 (39.5)	7 (0.2)	-	-
2008	19,249	2,885 (15.0)	668 (3.5)	2,217 (11.5)	3,100 (16.1)	13,047 (67.8)	4,502 (23.4)	8,694 (45.2)	62 (0.3)	-	-
2009	19,191	2,697 (14.1)	635 (3.3)	2,062 (10.7)	3,055 (15.9)	13,257 (69.1)	4,309 (22.5)	8,948 (46.6)	55 (0.3)	-	-
2010	6,939	1,038 (15.0)	246 (3.5)	792 (11.4)	1,095 (15.8)	4,741 (68.3)	1,547 (22.3)	3,194 (46.0)	19 (0.3)	-	-

자료: 대검찰청, 『범죄분석』, 각 년도.

주1: 대상 범죄는 살인, 상해, 폭행, 협박, 공갈, 주거침입, 손괴, 유기, 체포와 감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기타로 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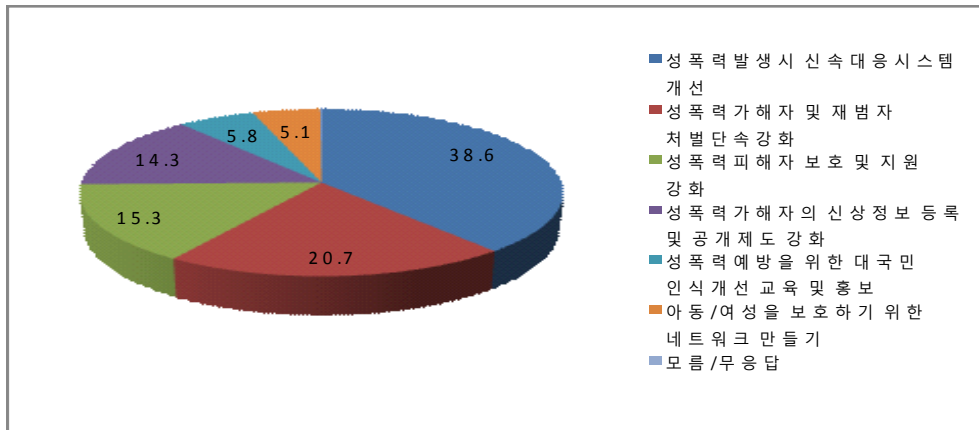
주2: 기타는 혐의없음, 죄가 안됨, 공소권없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가 해당됨.

□ 여성폭력피해 발생이후의 사후적인 차원인 피해자보호와 가해자처벌이 아닌, 사전적인 차원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 발생을 감소하기 위한 문화, 규범, 의식 변화에 대한 민감성이나 공감대 형성은 미약

- 상대적으로 처벌강화와 피해자보호에 치중함으로써 문화, 규범,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적 투입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임. 아동대상 성폭력예방교육, 초·중고등학생 대상 여성인권교육 등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실제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 성폭력, 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강화에 대한 욕구가 높았던 반면 상대적으로 인식개선 등의 사회문화적 측면은 낮게 나타남.
 -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1순위)에 대해서 성폭력 발생 시 신속대응시스템 개선이 38.6%, 성폭력 가해자 및 재

범자 처벌 단속 강화 20.7%의 순으로 나타남.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추진해야할 정책(1순위)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행위자 처벌 강화가 35.5%, 가정폭력 행위자 재범 방지 강화 방안(가해자 교정 치료 프로그램)이 28.4%의 순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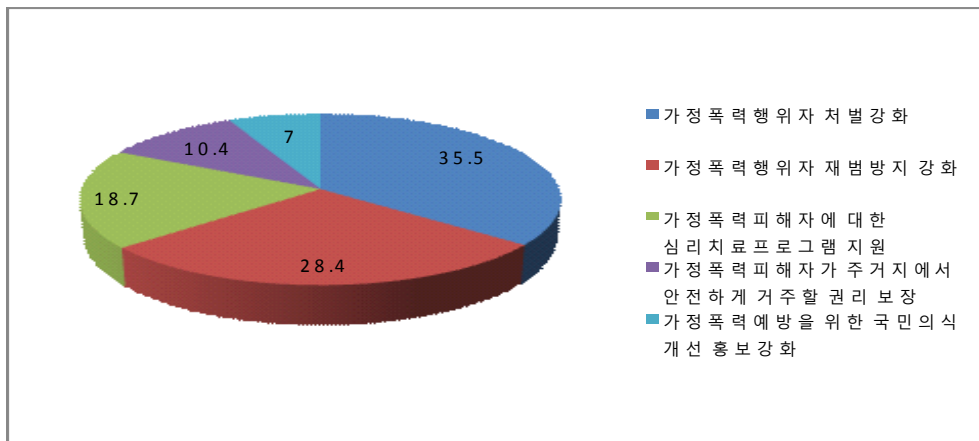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그림 Ⅲ-5] 성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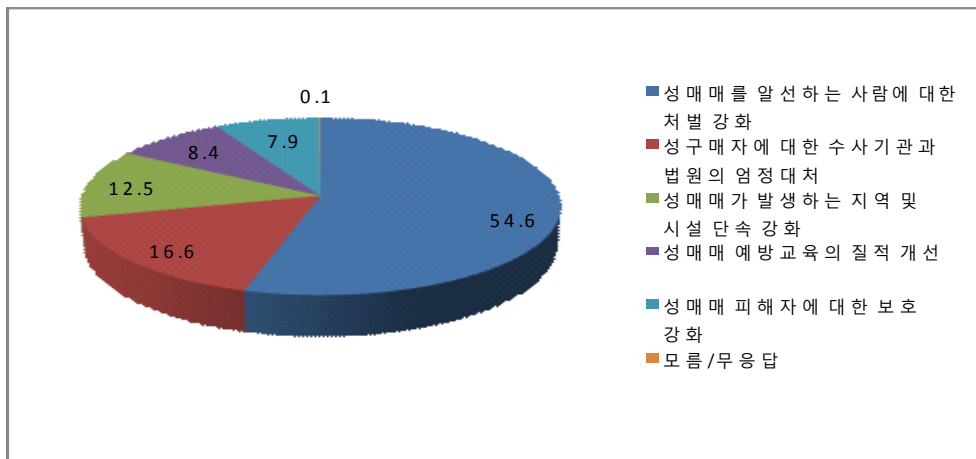
(단위 : %)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그림 Ⅲ-6] 가정폭력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 성매매에 대한 금지주의 법률 제정, 성매매피해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성구매자 및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등의 제도화에도 불구하고 성산업규모는 줄어들지 않고 있으며 신변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등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 등장하여 정책적 대응 필요
 - 성매매방지법 법제화 이후 집결지역 축소 효과가 나타나긴 했으나 2010년 성매매실태조사에 따르면 성매매 경제규모는 성매매 업체 40,293개소, 성매매 여성수 1,456천명, 연간 거래액 68,604억원으로 나타날 정도로 한국사회 내 성매매규모는 거대하고 성매매알선업체는 광범위함.
 - 풍선효과, 집결지역 중심의 생존권 논란 등으로 인해 법제정 당시의 정책추진력을 약화시키고 정책추진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신변종 성매매, 해외성매매, 청소년성매매 등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가 심화되면서 그 심각성은 여전한 상황임.
 - 대국민 의식조사 결과에서도 성매매방지를 위한 정책수요로 성매매 알선자에 대한 처벌 강화,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엄정대처 등이 높게 나타남.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그림 Ⅲ-7] 성매매 방지 정책 우선순위(1순위)

나. 기본방향

-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사후대책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사전적·예방적인 정책들은 미약함. 피해발생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함. 또한 그간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기는 했으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그쳐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을 인식하여 이제는 여성폭력, 여성아동안전에 대한 개인과 사회전체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삶과 생활의 터전인 사회전반이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할 것임.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보호시설, 상담소 등이 설치되었고 법률적, 의료적,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제도화과정을 통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종사자의 처우와 예산 지원 등이 내실있는 보호지원을 제공하기에 취약한 반면 동시에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또한 폭력피해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적으로 확대된 다양한 보호지원기관들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음.
- 이전의 기본계획에서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복지영역과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영역에서 다뤄져 왔으나 이번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한국사회에 이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자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별도 정책과제 영역으로 제안하고자 함.
-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는 집행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동안 아동,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정책에 집중하였고 기타 폭력가해자 처벌과 실효성 제고에 대한 집행은 저조하였음. 4차 기본계획기간 중에는 성폭력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벌보다는 범주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하는 확실한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이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성매매정책은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고 처벌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며, 성산업의 붕괴와 성수요를 근절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 져야 할 것임.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다소 저조했던 성매매정책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성매매문제는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강화와 해외로 나가는 성구매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함.
-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합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 법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자격기준, 시도별 환경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 구축, 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지역연대, 폭력예방 지원시설 설치근거 등), 통합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피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적, 체계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방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신속대응 및 보호지원 개편·확충
-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 성매매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강화
-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강화
-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등 유입 방지
-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
-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인권·안전인식 확대
-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 강화
- 성폭력·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성매매 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 성매매 알선자 단속·처벌의 실질화
- 성구매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교육의 내실화
- 해외 성매매에 대한 대응력 제고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

다. 추진계획

3-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현안진단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지원체계는 보호시설, 상담소 등이 설치되었고 법률적, 의료적, 심리정서적 지원 등을 위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등 제도화과정을 통해 양적으로 확대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력피해자의 보호지원체계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으며, 종사자의 처우와 예산 지원 등이 내실있는 보호지원을 제공하기에 취약한 반면 동시에 전문적인 지원에 대한 요구와 수요도 높아지고 있음. 또한 폭력피해 양상이 다양화되면서 보호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양적으로 확대된 다양한 보호지원기관들간의 효율적인 역할분담이 요구되고 있음. 이에 4차 기본계획에서는 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질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 기능 재정립, 전문성 제고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대응 및 보호지원 개편·확충 (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편 및 확충(중점)
 - 성폭력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증설
 - 친족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확충
 -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 확충
 - ‘응급지원-전문치료-지속관리’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개편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 가정폭력피해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강화
 - 야간·심야시간대의 가정폭력피해 대응시스템 강화
 - 경찰, 원스톱지원센터, 1366 등의 연계시스템 구축
 - ‘피해자보호지원-고용-교육훈련-복지’서비스 연계시스템 구축방안 마련 및 단계적 추진

3-1-2. **성폭력·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여성가족부)**

-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 친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립지원서비스 확대
 - 생계비지원, 주거지원 등
 - 피해자 및 피해자가족 대상 의료·심리치료 등 서비스 확대
-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 강화
 - 보호시설에 거주하는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생계비 지원방안 마련
 - 안정적 주거지원 확대
 - 자립지원금 지급 추진
-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인정범위 확대 위한 제도 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위한 상담 등 서비스 확대
 - 주거지원, 통역지원, 심리치료, 생계보장 지원 등
 - 북한이탈여성의 폭력피해에 대한 지원서비스 확대

3-1-3. **성매매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강화(여성가족부)**

- 성매매피해자 범위 확장을 위한 법 개정
- 성매매피해자의 통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중점)
 - ‘위기지원-보호지원-자활지원’의 단계별 사례관리 운영
 - 취업 등 고용서비스 연계체계 마련
-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 성매매피해 청소년 보호 및 지원체계 활성화
 - 학업, 취업 등 자활지원 확대
 - 해외 성매매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
 - 외국여성 성매매피해자 지원체계의 통합적 운영
- 현장활동가의 신변안전대책 마련

3-1-4.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여성가족부)**

-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 피해자 지원기관 종사자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 비경제적 처우개선방안 마련
-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 및 훈련체계 정비
 - 지원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종합대책 수립
 - 종사자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 체계화
 - 종사자 자격관리방안 마련
-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 시설평가결과를 활용한 지원기관 컨설팅 운영
 - 지원기관별 특성화된 슈퍼비전체계 마련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현안진단

이전의 기본계획에서는 이주여성의 문제를 한국사회로 이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상황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고 복지영역과 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영역에서 다뤄져 왔음. 이번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이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며, 한국사회에 이주한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한 법률 제개정이나 제도 개선 등에 초점을 두고자 이주여성의 인권보호를 별도 정책과제 영역으로 제안함.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강화(여성가족부, 법무부)

- 국제결혼 및 입국절차 개선
 - 국제결혼 사증심사의 기준 및 절차 강화
 - 결혼결정이전, 혼인신고 이전에 사전정보 제공 및 교육운영시스템 구축
 - 사증심사, 혼인신고, 사전교육 등 결혼이주제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운영방안 마련
- 주요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 불법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강화
 - 국제결혼 중개업체의 불법·탈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 마련
 - 국제결혼 중개업체 등록요건 강화

- 무등록 국제결혼 중개업체에 대한 단속 강화
-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중점)
 - 북한이탈여성의 국제적 난민 인정을 위한 외교적 노력 추진
 -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체포·송환 및 구금 상태 등에서의 비인간적 대우에 대한 감시활동 실시
 - 체포·송환 및 구금 상태 등에서 북한과 중국, 제3국이 북한이탈 여성에게 비인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국제사회가 감시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등 유입 방지(법무부)

-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중점)
 - 관련 법 제정 및 형법의 관련 조항 개정 추진
 - 인신매매 피해자의 체류자격 보장
- E-6 비자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 외국인 여성을 고용하는 연예회사에 대한 심사절차 강화
 - E-6 비자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모니터링 실시
 - E-6 비자 및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존속에 대한 재검토

3-2-3.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확대(여성가족부, 법무부)

-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제도 개선
 - 국제사회 기준에 부합하는 권리와 내국인과의 평등한 대우 보장을 위한 중장기적인 제도 개선
 - 결혼이민자 신원보증제도 개선
- 북한이탈여성의 통합 및 적응지원 강화
 - 탈북과정의 비인권적 침해에 대한 치유 및 역량강화 서비스 확대
 - 북한이탈여성의 적응지원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체계 마련
 - 북한이탈여성의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현안진단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가 급증하고 있고, 범죄피해도 삶의 공간이자 터전인 지역사회, 심지어 집안에서 발생하고 있음.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보호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민들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임.

그간 여성폭력방지정책은 사후대책 중심으로 이뤄져 상대적으로 사전적·예방적인 정책들은 미약함. 피해발생 이후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피해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적이고 예방적 조치의 균형적 발전이 필요함. 또한 그간 1차에서 3차에 이르는 동안 사회적 인식제고 등의 정책들이 추진되기는 했으나 단편적인 정책 추진에 그쳐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추진되지 못했음. 이제는 여성폭력, 여성아동안전에 대한 개인과 사회전체의 인식수준을 높이고, 삶과 생활의 터전인 사회전반이 안전한 공간으로 정비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는 ‘인식 제고’를 주요목표로 했던 기본계획들과 달리, 인식과 공간이라는 두개의 축을 기반으로 개인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 강화, 사회적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 확대, 지역사회와 학교의 안전 조성, 여성인권·안전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함.

3-3-1.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 초·중·고 대상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⁶⁾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제 정비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⁷⁾, 「성폭력방지 및

6)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은, 초중고생 대상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예방교육을 통합 실시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는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임.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의2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0.5.17>

-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성발전기본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
 - 성인지적 인권통합교육의 학교 교과과정에 편입 추진
 - 학년기별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방안 마련
-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인권교육 교육 운영
 - 성인남녀 지역주민, 초중고 부모대상 여성인권·안전교육 실시
 - 지역사회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여성인권·안전교육 확대
 -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건교사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 종사자 대상
 - 학교교사, 교직원, 교수 등 학교구성원에 대한 여성인권·안전교육 실시
 - 보수교육, 직원교육 등과의 연계교육 추진
-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신규)
 -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교구, 매뉴얼) 개발
 - 초·중·고 학년기별, 학령전 아동대상
 - 지역사회 일반성인 및 초중고 부모대상
 - 종사자 관련 보수교육 및 직원교육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직무교육과정에 포함 가능한 교육내용 및 자료 개발
 - 전문 교육강사 양성 및 강사은행 운영
 - 학령전아동·학년기별·성인대상·직능대상 전문 교육강사 양성
 - 전문강사 DB구축 등 강사은행 운영
 - 통합적 인권교육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운영
 - 초중고학생, 지역주민, 시설종사자 등 전반적인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계획 수립
 -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현황에 대한 정기점검 및 보고
-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기구 설치
 - 여성가족부내 통합적 인권교육 전담부서 설치
 - 통합적 인권교육지원센터 설치
 - 운영현황 점검, 제도개선, 프로그램개발, 시범운영, 강사양성 등 지원
-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 학교평가 공통지표에 학교안전 관련항목 포함
 - 교내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에 대한 학교별 의무보고시스템 강화 및

통계생산체계 마련

- 대학별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의 재검토 및 개정

3-3-2.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인권·안전인식 확대(방송통신위원회)

- 미디어 활용 전략 마련
 - 소셜미디어, 공익광고 등을 통한 홍보전략 마련·추진
 - 미디어용 여성폭력방지 관련 홍보콘텐츠 개발
- 여성폭력방지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 여성폭력 관련 대중매체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 여성폭력에 관한 언론보도 가이드라인 마련 및 모니터링 실시
 - 언론보도에서의 여성폭력피해자 인권보호 관련 법적 근거 마련

3-3-3.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여성가족부)

-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지역연대 활성화(중점)
 - 지역연대 법적 근거조항 마련
 - 지역연대 관련 인력, 예산, 통계생산, 교육,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여성·아동안전지원센터'의 시도별 설치 운영
 - 지역연대 사업 다각화
 - 광역형·기초형 운영모델 적용·확산, 광역형·기초형 지역연대 특화 브랜드 발굴

3-3-4.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
 - 성희롱없는 직장문화 조성기관사례 발굴 및 벤치마킹 유도, 포상
 - 임용전 법관, 경찰, 검사, 의사 등에 대한 성희롱 교육 의무화
-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서비스업종 등 여성집중업종, 비정규직 등에서의 성희롱 피해조사 및 근로감독 강화

- 공공기관 성희롱 방지조치 강화
-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의 활성화
 - 성희롱 예방교육의 방법론 다양화

3-4.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현안진단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는 집행영역과 관련된 중요한 과제이며, 그동안 아동,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하여 법정형을 높이고 친고죄, 공소시효를 배제하며, 신상정보 등록, 공개 등 재범방지수단을 다양화하는 등 엄벌주의에 의한 제도개선이 이루어 졌음. 4차 기본계획기간 중에는 성폭력의 예방과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엄벌보다는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처벌된다고 하는 확실한 처벌의 가능성을 인식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전환되어야 함. 또한 2차 피해의 가능성은 수사, 재판과정에서 여전히 상존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흥미 위주의 보도관행이나 인터넷에 의한 피해자 인적사항 유포 등으로 인한 피해자의 인권침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서 적극적인 정책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수단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제도의 안착을 모색해야 하며, 재범방지교육 운영체계 및 프로그램 개선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함.

이를 위해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며,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에 관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3-4-1.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 강화(법무부)

-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형법상 친고죄 규정의 전면폐지
 - 형법상 ‘강간과 추행의 죄’를 위한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죄’로 개정
 - 강간죄 객체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
 - 부부강간죄 및 비동의간음죄 도입
 -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 배제대상 확대
 - 긴급입시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항 추가

- 피해자보호명령에 주거양도 금지, 공동사용주거 인도 등 주거권 박탈 제도 추가
 - 피해자의 가정잔류, 가해자 격리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
- 가정폭력 가해자 의무적 체포제도 도입
- 가정폭력사건 중 형사범죄로 처리되는 범죄에 대한 가정폭력차원에서 사후 관리수단 마련
-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
 - 거주지에서의 격리대상자 정책전환
 - 가정폭력사건 임시조치는 주로 피해자가 격리되고 있어 피해자의 기존 생활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가해자 격리로 정책전환이 필요함.
 - 친족성폭력의 경우 가정폭력 임시조치 규정을 준용(『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4조)하고 있는 바, 피해자측의 학업유지 등 기존 생활 유지를 위해 가해자가 분리되도록 해야 함.
 -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도 재검토 및 제도개선
 - 감호위탁 시설 설치
 - 가정폭력사건의 처리기간 축소
 -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음주측정 의무화
 - 가정폭력 신고를 받은 경찰의 출동 의무화

3-4-2. 성폭력·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법무부)

-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중점)
 - 진술전문가 양성제도의 법적 근거 도입 및 운영평가 실시
 - 성폭력피해자 법률조력인 제도를 성인까지 확대
 - 수사·재판 담당자 실무가이드라인 마련 및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교육확대
 - 수사·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 품행, 평판, 직업, 성관계 이력 등 신문 내용 제한
 - 성폭력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의무 주체에 피고인의 변호인 추가

- 수사, 재판기관에서의 가정폭력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금지
- 언론·인터넷 등에서의 2차 피해 근절대책 수립
 - 성폭력피해자 흥미위주의 보도행위 금지 등 보도지침 마련
 - 인터넷 등에 의한 피해자 인적사항 공개행위 엄벌

3-4-3.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여성가족부)

-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개선(중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간 신상정보 공개요건 등 기준 통일화
 - 성범죄 알림e 운영 개선
 - 성범죄자 신상정보 및 지역주민 우편고지제도 효과성 측정과 제도개선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평가 및 내실화
 - 취업제한직종 확대
 - 취업제한 위반기관 공표제도 운영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 재범방지교육 프로그램 효과성 분석 및 질적 개선
 - 재범방지교육 운영기관의 지역적 사각지대 해소
 - 재범방지교육 이수자 사후 상담, 멘토 연결 등 사후 관리

3-5.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현안진단

일반국민 대상조사에서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성구매자에 대한 수사, 재판기관에서의 엄정 대처 등이 높게 나타난 것은 국민들이 성매매알선자, 성구매자를 엄하게 처벌하고, 성산업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반증이라 하겠음.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법원의 선고현황을 보면, 알선자에 대한 몰수·추징을 통한 영업 수익 박탈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아서 벌금형이나 실형, 몰수·추징 등이 알선자의 영업동기를 박탈할 정도의 강력한 제재수단이 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향후 성매매알선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가 필요하고 처벌의 확실성이 담보되어야 할 것임.

성매매정책은 성산업의 붕괴와 성수요를 근절하는 쪽으로 방향이 맞추어 져야 할 것이며, 성매매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을 삭제하는 안을 제시함. 3차 기본계획 기간 중 다소 저조했던 성매매정책이 재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해외 성매매문제는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업소들에 대한 단속의 강화와 해외로 나가는 성구매자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함.

성매매 알선자 단속·처벌의 실질화와 성구매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교육의 내실화, 해외 성매매에 대한 대응력 제고를 정책과제로 수립하였음.

3-5-1. 성매매 알선자 단속·처벌의 실질화(법무부)

-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중점)
 -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단속의 실질화
 - 성매매알선업자 및 알선업소의 건물주에 대한 단속의 실질화
 - 안마관련업소의 성매매 알선 장소제공 가능성 제거
 - 성매매업소의 탈세조사
 - 성매매알선업자 처벌강화
 - 성매매 피의자 처분에 대한 가이드 라인 채택
 - 성매매알선업자에 대한 몰수·추징결정 확대 및 징벌적 제재로 전환
 - 청소년 또래포주 등 청소년성매매 특성에 따른 단속강화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 위한 행정처분 법제 정비
 - 신·변종 성매매업소 단속강화
-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규정⁸⁾ 삭제(신규)
 -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삭제함으로써 유흥업소에서의 성매매 가능성 차단
 - 유흥접객원이 삭제되면 결과적으로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은

8)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유흥종사자의 범위) ① 제21조제8호라목에서 “유흥종사자”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인 유흥접객원을 말한다.

차이가 없게 됨.

-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관한 규제강화
 - 인터넷 및 전자매체 사이트 폐쇄 및 처벌강화
 - 성적 음란물(포르노) 단속 강화

3-5-2. 성구매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교육의 내실화(법무부)

- 성구매 초범자 존스쿨 교육의 내실화(중점)
 - 수혜자 부담원칙 도입 등 존스쿨 제도 개선
- 성구매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3-5-3. 해외 성매매에 대한 대응력 제고(법무부)

-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알선업주 단속 및 처벌강화
 -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알선 브로커, 업주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강화
 - 해외송출업소에 대한 세무조사
 - 해외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ODA사업 수행
 - 우리나라의 성매매피해자 지원 인프라, 지원방식 전수를 통한 성매매피해자 지원의 국제적 네트워크 구축
-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관리강화
 - 해외 성구매자 단속 및 처벌을 위한 부처간 공조체계 구축
 - 관광업체 등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3-6.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현안진단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과제는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여성 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이 과제는 1-3차 기본계획에서는 따로이 설정되지 않았으나 여성에 대한 폭력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법, 예산, 통계 등 추진기반 마련에 요구되는 과제라고 할 것임.

현재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 보호법들이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통합을 통해서 집중할 필요가 있음. 이 법에서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종사자 자격기준, 시도별 환경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 구축, 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지역연대, 폭력예방 지원시설 설치근거 등), 통합인권교육 의무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여성폭력피해 서비스 전달체계를 집중적, 체계적으로 가동할 필요가 있음. 여성폭력방지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이 아닌 일반회계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하고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함.

3-6-1.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여성가족부)

-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제 정비(신규)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 여성폭력방지 기본계획으로서 가칭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 ※ 수록내용: 종사자 자격기준, 시도별 환경 실태조사 및 통계 생산 구축, 폭력 예방 인프라 구축(지역연대, 폭력예방 지원시설 설치근거 등), 통합인권교육 의무화 등
- 여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중점, 신규)
 - 총괄 지원기관 설치, 전문인력 양성, 컨설팅, 모니터링, 홍보 등 허브 기능 수행
 - 관련 예산의 일반회계 전환 등 안정적 확보

3-6-2.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여성가족부)

- 여성대상 폭력 통계센터 설치·운영
 - 중앙 및 지역센터 설치
 - 매 3년마다 실시하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실태조사와 연계

3-6-3.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여성가족부)

- 각종 점검단 운영 강화 및 체계화
 -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성매매종합대책 추진점검단 등 운영 결과 모니터링 실시 및 국회보고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3-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성폭력피해자 지원실적	상당기관의 성폭력 상담건수의 총계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실적	연간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한 상담건수
제도개선 실적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관련 지침 및 보고서, 관련 부처 협의사항, 성매매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수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 단속건수	여성가족부 자료
E-6 비자 여성노동자 모니터링 현황	법무부, 고용노동부 자료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율	여성가족부 자료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환산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의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3-4.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사범의 처분결과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가정폭력사범의 처분결과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수	성범죄자 알리미 접속통계,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연간 방문자 총수(365일)
3-5.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성매매범죄 기소율	여성가족부, 「전국 성매매실태조사」
성매매범죄자 1심 선고현황	여성가족부, 「전국 성매매실태조사」
성매매사범의 처분결과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3-6.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여성대상 폭력 통계센터 구축 현황	여성가족부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등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여성가족부 자료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가. 현황 및 진단

- 3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복지와 보건 영역에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종합적 기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음
 - 3차 기본계획 기간동안 연금, 공공부조, 대상별복지 등에서 다양한 정책이 발굴되었으나, 이러한 내용이 실제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내에는 누락되어 있었으며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종합적 기획 하에 이루어지지 않음.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건강과 복지향상’이 10대 정책과제 중 하나로 제안되었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권익보호’ 영역 내의 하위과제로 설정되어, 적극적인 ‘권리’의 개념에서 다시 ‘보호’라는 소극적 개념으로 회귀하는 경향을 보여줌. 구체적인 과제에서도 2차 기본계획에서는 여성의 국민연금 수급권 확대, 취약계층여성의 자활을 위한 제도적 지원 강화,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정책 인프라 구축 등 주요 보건·복지정책의 틀 내에 여성의 권리를 강조하는 과제가 있었으나, 3차 기본계획에서는 연금이나 기초보장에 대한 정책과제가 누락되고 여성건강에 대한 의제화도 이루어지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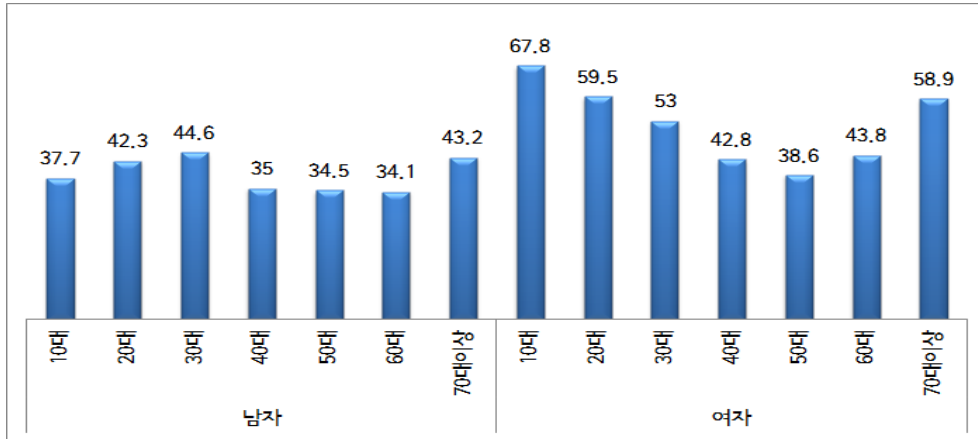
-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보를 위한 다수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확립되어 여성빈곤 완화에 기여하였음
 - 연금제도의 경우 3차계획 이전에 상당한 정책적 조치가 이루어졌음. '98, '07 두번의 연금개혁을 통해 사업장가입자 확대적용, 임의가입자 기준 완화, 분할연금제도 도입, 출산크레딧 도입, 병급규정 개선,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짐. 3차계획 기간에서는 전업주부 임의가입자 가입기준 완화('10).
 -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빈곤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00), 기초생활보장제도 자활사업을 통한 빈곤여성가구주 사례관리사업 실시, 긴급복지제도 도입('06), 빈곤층대상 고용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 도입('09), 성과관리를 접목한 희망리본프로젝트 도입('10)
 - 주요 소득보장체계인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여성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여성장애인과 여성노인의 경우 국가기본계획에 관련 내용들이 포함되어 성인 지적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며, 여성수용자 및 출소자를 위한 정책도 확대되고 있음
 - 여성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채용장려금 제도에서 여성장애인 고용시 장려금 증액 지급함. 여성노인의 경우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에 여성노인의 취업지원과 연금수급권 확대방안을 포함하였음. 여성 출소자의 경우 '10년에 여성지원센터 설립함.
 - 기존 대상별 복지사업에서 성인지적 접근 강화를 통해 대상별 복지 이슈발굴이 필요함. 특히 대상별 사회참여 및 자립을 지원하는 맞춤형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 한부모가족지원정책은 기존의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대상집단을 점차 확대하여 왔으며, 다문화가족지원정책은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동안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음.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양육지원을 점차 확대하여 2012년 현재 만12세미만 아동까지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조손가족 및 미혼모가 양육하는 5세이하 아동에 대한 추가수당 및 시설생활 한부모에 대한 생활보조금 등 신규급여를 도입하였음. 또한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자금 융자규모를 확대하여 2008년 20억원에서 2010년 40억원까지 규모를 확대하였음. 또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 등 맞춤형 상담서비스를 실시함. 2010년도에는 청소년인 한부모가족에 대한 자립지원사업을 실시하여,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교육지원비 및 자립촉진수당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도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법적인 기반이 만들어졌으며, 2009년도에는 다문화가족정책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함. 2010년도에는 제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기본계획(2010~2012)이 수립, 추진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기본계획(2013~2017)이 수립될 예정임.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한 전달체계도 확대되어, 2006년 21개소에서 2011년 200개소로 크게 증가하였음.

- 한부모가족지원이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수준이 낮고 단편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어 정책내실화가 필요함.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 초기 정착단계를 넘어선 자립지원의 방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문화 개선도 상호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함. 한편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의 가족변화에 대응하여, 결혼제도를 벗어난 가족에 대한 정책의제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 여성건강 영역에서는 저출산 심화로 인해 임신·출산관련 지원이 확대되었으나, 여성건강 전반에 걸친 정책은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않았음.
 -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등에 모자보건 조항이 명시되고 출산진료비 지원, 난임·불임지원사업이 확대되었음. 2차 기본계획에서는 보건의료 인프라구축, 여성근로자 건강지원 등의 정책과제가 추진되었음.
 - 여성건강과 관련해서는 주로 모성건강과 관련한 정책과제가 추진되고 있으며, 일반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함.
 - 건강의 이슈는 생애단계별로 상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별로 맞춤형 체력강화 및 건강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기 여성들의 경우 체육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201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에 따르면 10대 여학생의 경우 규칙적으로 체육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67.8%에 달해, 10대 남학생(37.7%)에 비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임. 이는 남녀 관계없이 15~24세에 가장 운동실천율이 높고 연령이 높아질수록 실천율이 낮아지는 유럽국가들과는 상이한 결과임. 10대의 체육활동이 성장 발육발달 등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10대 여성들의 체육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정책 방안 수립이 시급함.



출처: 김양례 외(2010.)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그림 Ⅲ-8] 규칙적 체육활동 비참여 비율

나. 기본방향

□ 3차 계획동안 성인지적 고려없이 확대되어 온 소득보장체계 및 복지·보건서비스에 대한 방향성 재점검이 필요함.

- 여성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가 필요함. 이를 위해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을 강화하고, 기초노령연금 및 타공적연금의 여성수급권을 확보하는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점검하여야 함. 또한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을 강화하고, 각종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 간의 성인지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 가족형태별 기초생활보장체계 수립, 근로연계복지제도간 연계성 강화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도출된 소득보장체계 개선방안은 여성의 복지수준 향상 제고 뿐 아니라 제도 전체의 합리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음.
- 여성 내에서도 양극화의 경향이 발견됨에 따라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다양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가 발굴될 필요가 있음. 여성노인의 경우 활동적 노후생활 지원과 함께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이 강화되어야 함. 또한 여성북한이탈주민 및 여성수용자·출소자 등 가장 취약한 집단에 대한 맞춤형

층형 서비스지원이 필요함.

- 3차 기간동안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1인가구가 증가하는 등 가족의 다양성이 증가하는데에 대응하여 기존의 가족유형별 지원확충과 더불어 새로운 가족유형에 대한 정책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정책지원을 내실화하고 비양육부모의 책임도 강화할 시점임. 다문화가족의 경우 일반적 지원확대와 함께 가족문화개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 뿐만 아니라 1인가구, 비혈연가족 등 새로운 가구형태에 대한 선제적 정책이 개발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모성건강을 여성건강으로 보던 기존 시각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정책이 개발되어야 함.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수행할 경우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훼손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으로 여성건강 전반에 대한 정책 강화가 필요함. 이에 따라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생애단계에 따른 건강관리를 강화하여야 함. 또한 모성건강지원은 생식건강의 영역까지 확대하고, 이중부담에 시달리는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지원을 확대하여야 함.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
-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
-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개선
-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의 건강권 증진

-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지원 확대

다. 추진계획

4-1.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현안진단

불평등과 빈곤의 증가는 특히 노동시장지위에 취약한 여성가구주 가구에 집중되고 있으며, 여성가구주 가구의 약 1/3이 빈곤가구일 정도로 여성빈곤은 심각한 상황임. 특히 '100세 시대'가 논의될 정도로 평균수명은 연장되고 있어 여성의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각종 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정책발굴이 긴요한 시점임.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초노령연금, 기타 공적 연금 각각의 여성친화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국민연금의 경우 출산 및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을 도입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하는 등 연금의 여성친화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여성노인들에게 중요한 소득원이 되고 있는 유족연금은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비율로 지급되도록 되어 있어 연금액이 낮은 계층의 경우 유족연금의 생활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므로 최저선을 설정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보장성을 강화하여야 함.

한편 주로 빈곤한 여성들이 많은 혜택을 입게 되는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액이 낮고 대상자가 충분하지 않아 최저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기초노령연금의 소득수준을 상향조정하되 대상자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함. 또한 현재 국민연금제도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나, 급여수준이 높은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 연금에서는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아 제도간 형평성이 문제되고 있는 상황임. 타공적연금에서도 분할연금제도 도입이 필요한 시점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부양의무자기준이 완화되어 왔음에도 여전히 다수의 빈곤층이 부양의무자기준에 의해 기초보장제도에서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어 있거나 부양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부양의무자에 대한 조사를 유예하고 있으나, 시설생활자의 유예범위가 재가수급자의 유예범위보다 넓어 탈시설화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음. 미혼모 등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고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을 때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예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부분

의 유럽국가 및 일본에서는 공공부조내에 한부모 등 가족유형이 급여산정에 포함되어 있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기초보장제도는 가구원수만 고려하고 있을 뿐 가족유형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실제로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등의 경우 최저생계비 계측시 추가비용 집계까지 이루어지고 있는바, 가구유형을 고려한 생계급여 도입이 필요함.

한편 최근에는 근로연계복지 관련 다차원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고 있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도입이 한편으로는 성과관리를 강조하여 여성의 특수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자활사업의 경우 성과관리를 접목한 희망리본프로젝트가 도입되면서 여성친화적 자활프로그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의 경우 여성가장실업자훈련을 통합하여 여성가장에 대한 특별모니터링이 어려워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또한 새로 도입된 사업들간의 연계고리가 명확하지 않아, 특히 정보에 취약한 여성들이 적절한 서비스를 발견하기 어려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4-1-1.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보건복지부)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임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을 확대
 - 전업주부 등 노동경력이 없는 집단의 임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첫째자녀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적용 및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도입 (중점)
 - 현재 둘째자녀부터 적용되도록 되어 있는 출산크레딧을 첫째자녀까지 확대·적용
 - 노인돌봄 및 장애인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을 새로 도입함.
- 유족연금의 최저기준 마련(신규)
 - 유족연금의 최저기준을 마련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함.

4-1-2.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성 강화
 - 저소득 여성노인들의 소득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급여액과 대상자를 확대함.
-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서의 분할연금제도 도입(중점)
 - 국민연금제도와와의 형평성을 위해 보다 급여수준이 높은 타공적연금에서도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함.

4-1-3.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보건복지부)

-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인정기준 확대
 - 미혼모 등 사실상 가족관계가 단절되었고 신분을 밝히기 어려운 집단에 대해서는 시설에서 생활하지 않을 때에도 부양의무자기준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침수정
- 가족형태별 급여체계 도입방안 검토(중점)
 - 한부모가족, 장애가족 등 가족형태를 고려한 생계급여 체계 도입방안 검토

4-1-4.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 여성들을 위한 전문 사례관리시스템의 증설
 - 사례관리의 전문화와 매뉴얼화 추진
- 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경력단절여성취업(새로일하기사업) 등 각종 근로연계복지제도간 연계성 강화(중점)
 - 자활사업참여자 중 취업준비도가 높은 경우 고용안정센터로 연계
 - 비자활사업을 통한 근로소득도 자활사업과 동일하게 공제

4.2.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현안진단

최근 여성내부에서도 양극화의 경향이 발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취약계층 여성들의 경우 대상에 따른 맞춤형 사회참여-자립 프로그램이 요청되고 있음. 여성노인, 여성장애인,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취약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집단들에 대한 특화된 사회참여 지원이 필요함.

우선 평균수명연장으로 인해 여성노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 배제를 경험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은 지속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집단임. 실제로 여성노인과 여성장애인에 정책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성인지적 정책이 개발되고 있으나 특히 3차 기본계획에서 정책과제 발굴이 부진한 상황임. 여성노인의 경우 중고령기의 이혼은 증가하는 반면 여성의 기대수명이 90세가 되는 등 혼자사는 기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맞춤형 노후설계 서비스가 필요하며, 특히 빈곤과 안전에 크게 취약한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또한 교육수준이 높고 사회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은 베이비붐세대 여성들이 중고령에 접어들어 따라 이들의 여가활동 및 일자리지원이 필요함.

여성장애인의 경우, 사회참여 및 일자리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2012년도 ‘여성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여성장애인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으로 ‘장애인의무고용 활성화’라는 응답이 36.6%, ‘창업직업 및 신규직중·직업개발’이라는 응답이 16.8%로 과반수 이상이 일자리를 통한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었음. 장애인복지법 내에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이 명시되고, 여성장애인 고용시 장려금이 증액되는 등 여성장애인의 사회화를 위한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었으나, 교육수준이 낮고 사회활동 참여 경험이 낮은 여성장애인의 취업률은 여전히 낮음. 또한 임신, 출산 실태조사가 실시되고 장애인자녀의 보육시설 우선입소가 검토되는 등 출산 및 영아기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령기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또한 여성북한이탈주민, 여성수용자 등 사회적 소수자인 취약여성집단을 위한 서비스발굴과 지원강화가 필요함. 특히 여성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초반의 사회정착에 대한 지원과 지속적 자립을 위한 취업·양육지원이 필요함. 여성수용자들의 경우 사회적 배제를 막고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맞춤형 서비스 체계가 발굴될 필요가 있음.

**4-2-1.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중고령 여성노인 맞춤형 재무, 여가, 생활, 취업, 건강 등 노후설계·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 독거여성노인의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중점)
 - 빈곤과 안전 등에 크게 취약 독거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와 생활지원 확대

4-2-2.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강화(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및 직업사회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일반적 조치를 넘어서 직접적인 직종 및 직업사회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
 - 어울림센터에서의 여성장애인 당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강화.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요구분석 및 맞춤형 지원
 - 여성장애인의 학령기 아동지원 확대
 - 여성청각장애인의 건청자녀언어발달지원, 여성지적장애인의 자녀학습지원, 여성지체장애인의 자녀체육문화활동 지원 등 맞춤형 지원 개발

**4-2-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통일부, 여성가족부)**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북한이탈주민의 외상치유 및 정체성정립을 위한 상담·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및 성공적 정착을 위한 생활설계 지원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육 지원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위한 직업체험-취업설계-취업연계-직장적응 프로그램 운영
 - 가족생활을 위한 임신, 출산, 양육, 자녀학습지원

4-2-4.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법제처, 여성가족부)

- 여성수용자의 성폭력방지 및 모성권보호 강화
 - 여성수용자의 수용시설에서의 인권보호를 위한 성폭력 방지 및 모성권 보호조치 강화
- 여성수용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사회적응력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강화
 - 출소후 사회적응을 위한 컨설팅 및 생활설계 운영
 - 취업가능성 제고를 위한 여성친화적 직업훈련 및 직업체험 운영

4.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현안진단

성인부부와 자녀로 이루어진 표준 ‘핵가족’의 비율이 줄어들고 가구규모가 축소되는 가운데, 한부모가족, 청소년미혼모가족, 여성1인가구 등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부각되고 있음. 새로운 가족은 한편으로 전통적 가족에서 벗어난 대안가족으로서의 가능성을 가진 반면,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책적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한부모가족지원의 경우 비교적 오래된 정책역사에도 불구하고 아동양육비가 5만원에 머물러 있는 등 지원수준에 한계가 있음. 아동양육비의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2011년도 신규도입된 생계비(생활보조금)와의 급여체계를 재정비하여야 함. 나아가 비양육부모가 양육비지급판결을 받았음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비율이 높음을 고려하여, 양육비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한부모의 경우 학습권과 주거지원을 강화하여야 함. 학교에서 임신한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청소년한부모의 교육지원을 확대하며, 소년소녀가정에만 제공되는 전세주택지원제도를 청소년한부모에게도 제공하여야 함. 한편 과거 시설중심의 지원에서 재가이용자의 빈곤탈출 지원으로 정책의 초점이 이동될 필요가 있음. 현재 ‘취약가족 역량강화 사업’은 주로 가족상담에 집중되고 있어 고용연계 등 한부모의 활성화(activation) 지원은 취약한 상황임. 빈곤한 여성가구주를 대상으로 하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여성가족부), 새로일하기사업(여성가족부), 자활사업(보건복지부), 취업성공패키지

(고용노동부), 여성가구주대상 창업지원정책(중소기업청)을 연계하기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기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다문화가족지원의 경우 초기 정착단계를 넘어선 자립지원의 방향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가족문화 개선도 상호의 문화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 필요함. 현재 다문화가족의 여성결혼이민자는 초졸 수준의 학력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초학력미달 집단과, 일정정도의 인적자본을 가진 집단으로 구분됨. 전자의 경우 인적자본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후자의 경우 적극적인 일자리 발굴 정책이 맞춤형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 또한 결혼이민자의 문화에 대한 가족의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언어문화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배우자·자녀 통합교육을 실시함.

마지막으로 결혼제도를 벗어난 가족에 대한 정책의제들이 다양하게 개발될 필요가 있음. 비혼 청년여성1인가구의 안전한 주거확보를 위하여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하고, 저소득 청년여성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 임대주택을 보급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혈연과 혼인으로 구성된 전통적 가족이 아닌 생활동반자 형태의 가족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함.

4-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여성가족부)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현실화(중점)
 - 아동양육비 상향조정 및 대상확대
 - 한부모가족 생계비 및 아동양육비 등 급여간 개념 재정비
-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중점)
 -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비 이행지원을 위한 법률구조 서비스 강화 및 양육비 이행지원기관 설치
 - 양육비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위한 단계적 전략 마련
- 재가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정보전달체계 구축
 - 한부모가족지원과 빈곤여성가구주지원을 연계하고 통합적 정보를 제공하는 전달체계를 구축함.
- 청소년한부모 교육·주거지원 확충
 - 청소년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표준화된 관리지침의 작성 및 운영

- 청소년한부모 검정고시학습비 및 고교생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 청소년한부모가족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용범위 확대

4-3-2.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 개선(여성가족부)

-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긍정적 가족환경 조성(중점)
 - 결혼이민자의 언어문화사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배우자·자녀 교육 실시
-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 취학연령에 도달한 자녀의 증가에 따라 초등학교 학교적응 지원프로그램 제공
 - 각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정보제공 확산
 - 다양한 정부지원 서비스의 사각지대 발굴 및 개선방안 마련

4-3-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 여성 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신규)
- 저소득 청년여성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 임대주택 보급(신규)
 - 부엌, 거실 등 공용공간과 독립된 개인공간이 있는 공동거주형
- 혈연과 혼인 이외 생활동반가족 실태 및 지원대책 조사 연구(중점)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현안진단

사회적 불평등 증대에 따라 건강불평등의 심화와 성별 건강격차의 문제가 나타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음. 여성들은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스스로의 몸을 돌보기 어려우며, 임금노동과 돌봄노동을 동시수행할 경우 시간부족, 수면부족, 스트레스, 근골격계 질환에 노출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건강훼손의 문제도 심각한 수준임. 그러나 그간 여성건강은 주로 모성건강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여성건강과 관련된 정책과제

는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여성의 건강권을 증진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확대가 필요함.

우선 여성건강 관련 기본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여성건강과 관련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서비스인력에 대한 젠더감수성 교육 제도화되어야 함. 또한 여성건강관련 업무를 추진할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지자체 소준에서는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과 연계하여 여성건강마을을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음.

다음으로 건강의 이슈는 생애단계별로 상이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대상별로 맞춤형 체력강화 및 건강회복을 위한 정책지원이 필요함. 특히 청소년기 여성들의 경우 체육활동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함. 또한 청소년기여성의 과도한 다이어트를 개선하기 위해 건강한 식습관 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및 식이장애 청소년에 대한 재활지원이 필요함. 청년기여성들의 경우 조기질병 발견을 위해 기존 40대 이상에게만 제공되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 건강검진을 30대 이상까지 확대 실시할 필요가 있음. 자녀양육기 여성들의 경우 양육부담으로 공공생활체육시설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함. 갱년기 여성들의 경우 우울증 등의 개선을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을 확충하고, 노년기 여성을 위해서는 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방문보건사업을 확대해야 함.

한편 저출산정책 확대에 따라 강조되어 온 모성건강의 경우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생식건강까지 정책영역을 확대하여야 함. 산전후 의료관리지원을 강화하며, 더 나아가 최근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산후조리서비스에 대하여 공공서비스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성교육의 경우 실제 청소년의 성문화와 동떨어져 있는 학교 성교육에 피임방법 등 실질적인 정보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의사 등 제3자의 목소리로 이슈화되고 있는 임신중절에 대해 당사자인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

마지막으로 일하는 여성들의 경우 일과 돌봄의 이중부담으로 인해 각종 질병에 취약한 상태에 있으므로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일하는 여성의 건강상태 추이분석을 위해 산재보험에서 산업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통계를 생산, 공표하여야 함.

4-4-1.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여성건강 관련 연구수행 지원 및 여성건강 실태조사 실시(신규)
 - 여성건강과 관련된 주기적인 조사 실시 및 관련 연구 수행, 장기적으로 중장기 여성건강증진정책 수립방안 검토
-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젠더감수성 교육(신규)
 - 의료전문 인력양성시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감수성 고양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의무화
 - 의료인 직무연수에 성희롱, 성폭력 방지 시수 및 소수자 환자인권교육 시수 포함
- 여성건강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중점)
 - 여성건강 관련 법 제·개정 및 전담기구 설치
- 여성건강마을 시범운영(신규)
 -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보건소, 여성 및 건강관련 시민단체, 학계 등이 연계하여 지역사회 여성건강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여성건강마을 운영.
 - 여성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 등에서의 여성건강관련 아젠다 설정

4-4-2.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청소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한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중점)
 - 체육활동이 낮은 여학생을 위해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개발
 - 학교체육에 도입하는 시범사업 실시
 - 각급학교 건강한 식습관 및 식품안전 교육 정례화
 - 지역아동 및 청소년시설에서 건강한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도입
 -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저학년을 대상, 직접 찾아가는 식품위생, 안전체험교육
-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식이장애 청소년 지할 지원(신규)
 - 거식증과 폭식증 치료에 대한 의료지원 확대
 - 가족치료 및 상담, 재활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청년기 조기질병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확대
 - 조기에방측면에서 40대 이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및 지역가입자에
게 건강검진 제공
-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신규)
 - 미취학자녀가 있는 여성들의 공공생활체육시설 접근성을 높이기 위
하여 보육시설 설치 등 일시 돌봄서비스 제공
-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 확충
 - 갱년기 여성을 위한 우울증 치유 등 보건소 프로그램 확충
- 노년기 여성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보건사업 확대
 - 체육활동이 낮은 노인여성을 위해 노년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개발
및 지역사회 공공생활체육시설에 보급
 - 노년기 여성을 위한 방문보건사업 확대

4-4-3.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산전후 의료관리 지원 강화
 - 출산 후 방문형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 산전후우울증 관련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민간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운영(중점)
 - 민간산후조리원의 안전사고와 감염에 대한 관리 뿐 아니라 소비자부
담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 실시
 -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운영
-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중점)
 -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 내에 피임교육을 공식화
 - 성교육 내에 성평등, 성적 자기결정권, 부모의 역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논의 확산
 - 릴레이대토론회 등 공식적 논의의 장 마련

4-4-4.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지원 확대(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신규)

- 여성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장 분위기 조성
- 직장 내 여성건강 시설 및 기구설치 지원
- 직장과 보건소 간 건강지원 연계 구축
- 산재보험의 산업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통계생산, 공표(신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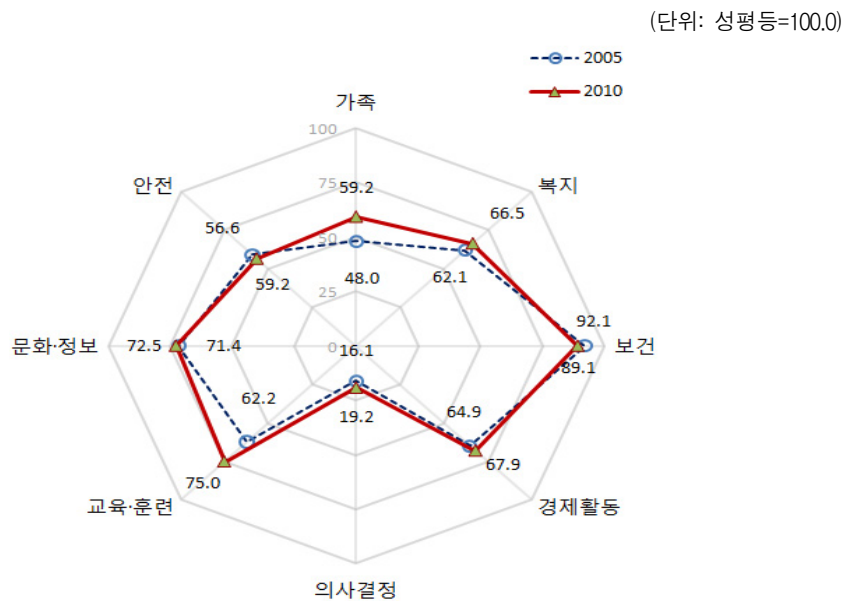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4-1.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여성 국민연금 가입율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성가입자/ 전체가입자) X 100
여성노인 빈곤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65세이상 여성노인 빈곤율
기초보장 여성수급자 자활성공율	보건복지부, (여성자활성공자/ 여성자활사업참여자) X 100
4-2.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미 지원건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
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수	
여성북한이탈주민 상담프로그램 지원건수	
여성수용자 자립자활 상담프로그램 지원건수	
4-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대상자수	여성가족부 통계
비양육부모 정기적 양육비 이행을	여성가족부 비정기조사, 향후 정기 실태조사로 대체 (정기적으로 양육비 수급한 한부모 수 /양육비지급판결받은 한부모수) X 100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여성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여성 연령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여성노인, 여성청소년(만12-18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0대, 70대이상 여성 규칙적 체육활동 실천율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생활체육시설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인구 10만 명당 여성 자살사망률	통계청. 사망원인통계
공공산후조리원 수	보건복지부 통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가. 현황 및 진단

- 정치, 행정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이 분야의 참여확대 시급
 - 국가 성평등보고서 및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 성격차지수(GGI) 등은 정치·행정·경제 등 각 분야 여성의 의사결정직 참여가 극히 저조함을 지적
 - 정부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참여를 확대하여 여성의 요구를 국가정책에 반영하고, 사회 전반에 여성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여성정책 핵심과제로 추진
 - 2011년 3월에는 대통령 지시 사항으로 각종 위원회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참여시키는 노력 강구 지시



자료: 김태홍 외(2011). 2011 국가성평등보고서. 여성가족부

[그림 Ⅲ-9] 우리나라의 부문별 성평등 수준

□ 정치분야에서 그동안 정당법 개정 등 관련하여 많은 진전이 있어 왔으나 여전히 그 비율은 저조

- 여성 진출이 주로 비례대표 의석에 치중되었고, 지역구 공천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구 여성의원의 규모의 증가가 담보되기 어려움.
 - 2012년 현재 국회의원 중 전국구 여성의원 비율은 51.9%이나 지역구 여성의원 비율은 7.7%에 그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개선 등 다각도의 노력이 요구됨.
- 아직도 정치 분야에 팽배한 여성에 대한 성 고정관념이 해소되어야 하며, 특히 주요 당직자들 중 낮은 여성비율은 정치제도의 선진화 및 성 평등을 달성 하는데 장애요인이 되고 있음.

〈표 Ⅲ-2〉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여성 당선자 수

(단위: 명, %)

		1996_15대	2000_16대	2004_17대	2008_18대	2012_19대	
국회의원	전체	전체	299	273	299	299	300
		여성	9	16	39	41	47
		비율	3.0	5.9	13.0	13.7	15.7
	지역구	전체	253	227	243	245	246
		여성	2	5	10	14	19
		비율	0.8	2.2	4.1	5.7	7.7
	전국구	전체	46	46	56	54	54
		여성	7	11	29	27	28
		비율	15.2	23.9	51.8	50.0	51.9
연도		1998	2002	2006	2010		
지방의회	전체	4,139	3,167	3,621	3,649		
	여성	97	140	526	739		
	비율	2.3	4.4	14.5	20.3		

자료: 1998, 2002, 2006, 2010년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비율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으나 고위직에서의 비율이 낮은 것이 문제이며, 경력관리 등을 통해 고위직 비율을 높여 나가는 것 필요
 - 공직에서 여성공무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여성채용목표제(양성평등채용목표제),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는 진입을 원하는 여성들에게 긍정적인 시장신호를 보내 여성공무원의 양적 증가에 긍정적 영향 미침.
 - 2011년도 말까지로 되어 있는 양성평등채용목표제와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가 목표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미시적인 인사관리 문제가 개선되어야 함.
 - 여성들의 역량개발과 상위직 진출에 필요한 경력코스를 지원해야 함.
 - 공공기관은 민간기업에 비해 여성고용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어서 지속적으로 지도·관리가 필요
 - 공기업 경영평가에 균형인사지표를 포함하여 여성대표성을 증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부 부처 업무평가 시 가족친화지표를 적극 반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2006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던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은 급박한 정책적 노력으로 2011년 소폭의 상승률 과시
 - 정부업무 특정평가의 평가요소에 반영하고 정부위원회 운영 지침에 여성비율 40% 달성 노력을 명시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다시 소폭의 상승을 보였음.
 - 2012년에는 신규 임기도래 위원의 50% 이상 여성 위촉, 중점관리위원회 선정·관리 등을 통해 여성위원의 비율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표 Ⅲ-3〉 정부위원회 여성비율(2010~2011)

기준 시점	부처수	위원회	위촉직 전체위원	위촉직 여성위원	여성비율
'11.10월	40개	411개	7,647명	1,900명	24.8%
'10.12월	38개	375개	8,875명	1,983명	22.3%

주: ('06) 29.6% → ('07)26.9% → ('08)27.0% → ('09)24.6% → ('10)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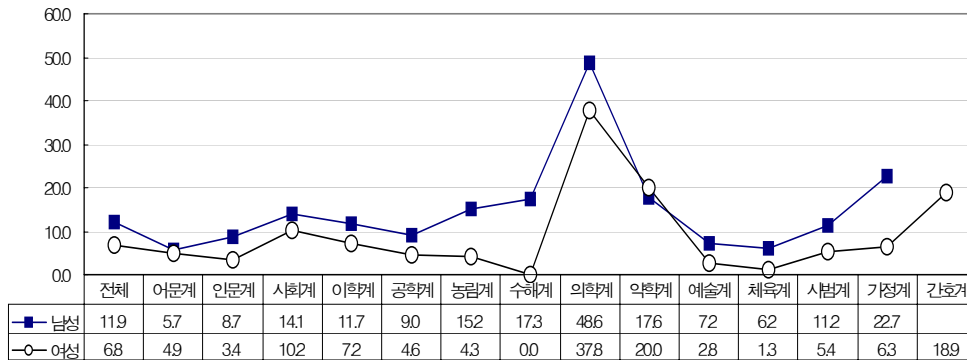
□ ‘교단의 여성화’가 이슈가 될 만큼 여성의 초·중등 교원 진출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관리직 비율은 개선되지 않음. 이와 같은 성별 불균형은 고등교육에서 목격되고 있음.

○ 2011년 기준 우리나라 일반대학의 여교수 비율은 19.6%로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일반대 여학생의 비율 41.5%와 비교해서도 매우 낮은 수준임. 특히, 국공립대 여교수의 비율은 13.6%로 사립대(21.8%)에 비해 현격하게 낮음.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3년부터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공립대 여성교수 임용목표제’를 도입하여 해마다 실적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 못함.

※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 2003년 9.6% → 2011년 13.3%

- 교수 채용시 여성이 남성보다 임용 가능성이 낮은 것 또한 여교수 증가를 더디게 하는 요인임. 국공립대학의 교수 지원자 대비 승진자 비율을 보면, 남성(1.9%)이 여성(6.8%)보다 두 배 이상 높음. 전공계열별로도 약학계를 제외한 모든 계열에서 남성의 임용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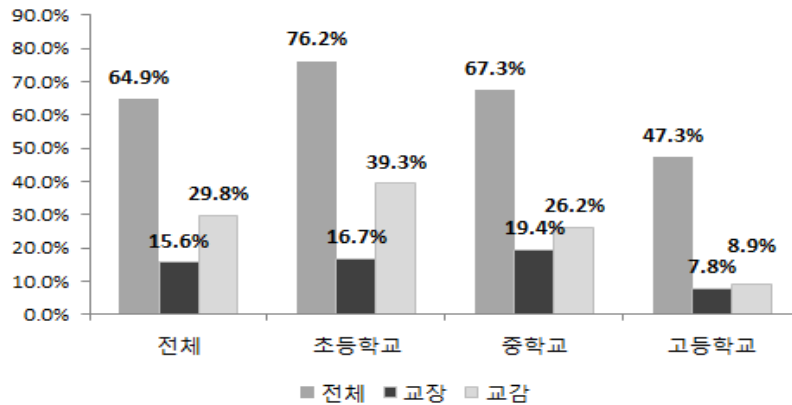


주: 임용률=최종임용자수/지원자수

자료: 민무숙 외 (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재인용

[그림 Ⅲ-10] 국공립대학의 교수 채용에서 성별·전공계열별 임용률

- 초·중등 교원의 64.9%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관리직 비율(교장 15.6%, 교감 29.8%)은 이에 미치지 못함.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여성 교원의 비율이 76.2%임에도 여성 교장은 16.7%에 불과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1). 교육통계연보DB

[그림 Ⅲ-11] 초·중등학교 관리직 교원의 성별 비율(2011년 기준)

-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 장교의 비율을 7%(2010년 말 기준 5%임), 여군 부사관은 5% 수준으로(2010년 말 기준 3.2%임) 증가할 계획이며, 경찰청 또한 2014년까지 여성 경찰 비율을 10% 수준을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이러한 계획에 맞추어 군대 및 경찰에서의 여성 진입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 관리직급 여성 인력 진입을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등 특수대학의 여성 정원 비율 확대가 필요함. 1996년부터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에 정원의 10% 수준에서 여학생 입학이 허용되었으나,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비율의 변화가 보이고 있지 않음. 양성기관이 많지 않은 특수직의 경우, 이들 학교에서 배출된 여학생 비율은 향후 해당 분야에서의 관리직 여성 종사자 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 입직 후에도 승진, 업무 배치, 보직 임명 등에 있어서 생물학적인 성차가 반영되지 않도록 조치함과 동시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조직 내 인식개선과 적극적인 실천이 필요함.

- 평화·안보에 관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상당히 앞서 가고 있으나 이 분야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저조, 특히 통일분야에 관한 여성의 역할과 참여를 위한 명확한 정책의제 설정 필요
 -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동이슈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의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 여성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아직도 그러한 참여는 미흡한 실정임.
 - 정부는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통일문제와 대북정책 추진과정에 있어 여성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통일관련 자문기구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해 왔음. 그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 향후 당국 간 남북대화채널에 여성의제를 다루는 분과나 회의기구 설치 등 통일에 대비한 보다 근본적인 체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 일부로서의 책무를 담당해야 하며, 평화구축과 여성의 문제로서의 일본 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함.

- 3차 기본계획에서는 국제협력부문의 정책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않았으나 같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 강화에 힘입어 국제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 설정을 이끌 지도자의 위치에 서게 됨.
 - 한국정부는 2010년부터 공여국 협력체인 OECD/DAC의 정식 회원국이 되었고, 2011년 1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에서 의장국 역할을 하였음.
 - 한국은 2011년 UN Women의 창립과 더불어 UN Women 연간예산의 1%에 해당하는 470만불을 지원하였고, UN Women의 초대집행이사국으로 선정됨.
 - 한편 2010년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개정을 통해 해외원조 수행과정과 방식에서 성인지 관점이 반영되도록 하였으나, 개발협력사업의 기획, 예산, 이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하는 노력과 함께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의 확대가 중요함.

나. 기본방향

- 여성의 정치나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확대는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부터 여건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해 왔으나 한국은 아직도 국제 권한척도지수 등에서 하위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속도가 더딘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에 걸맞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투입이 많아야 할 분야라고 하겠음. 정치분야에서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할당제에 기반한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할당제 주장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진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경력관리를 통해 고위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며, 인사관리 방식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공공 및 민간 여성임원비율은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수 분야나 대학 교수 등 여성 비율이 여전히 낮은 분야에서의 여성 임용을 강화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 통일분야는 1-3차 계획기간 중 비교적 단계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남북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의해 실제 정책추진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3차 계획기간 중에는 특히 통일분야에서 여성의제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실제 추진도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 통일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통일대비 과정에 여성참여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여성 공동의제발굴을 활성화하도록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함.
- 4차 기간에 우리나라는 국제 여성발전을 위한 새로운 의제의 발굴과 수행을 이끌어야 할 것임. UN Women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MDGs 달성 목표연도인 2015년 이후 Post-MDGs 시대의 의제를 개발하는 국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과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모범적인 원조국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임.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 마련

-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의 여성비율 제고
-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 대학의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제고
- 군대 및 경찰 등 특수직에서의 여성 진출 확대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 통일관련 의사결정과정 여성의 참여 촉진
-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 기반 마련
-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 Post-부산,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정부-민간 협력 제고
- Post-MDG 대비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대

다. 추진계획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마련

현안진단

여성의 정치나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확대는 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시부터 여건조성을 위한 과제들을 포함해 왔으나 한국은 아직도 국제 권한척도지수 등에서 하위를 점하고 있을 정도로 발전속도가 더딘 분야이기 때문에 국가의 경제력에 걸맞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정책적 투입이 많아야 할 분야라고 하겠음. 정치분야에서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서는 할당제에 기반한 양적 확대가 필요하지만 할당제 주장의 설득을 위한 논리 개발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임.

또한 공공부문에서의 대표성 확대를 위해 진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 졌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경력관리를 통해 고위직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이 분야에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차세대 여성 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이 정책과제로 설정되었음.

5-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 선출직 의원 후보 의무할당 법제화
 - 국회 및 지방의회 지역구 여성후보 공천할당제 30% 의무할당 법제화(공직선거법 개정)
 -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여성후보 30% 추천 사항을 지킨 정당에 대하여 국고보조금의 30% 추가지원 인센티브 제공(추가보조금은 여성정치인 육성 경비로 활용-공직선거법 개정)
 - 여성추천보조금 확대
 - ※ 여성후보자 30% 이상 추천한 당에 대하여 선거권자*100원을 선거권자*500원으로 확대(정치자금법 제26조 개정)
- 비례대표 여성의원 비율 제고
 - 국회 및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검토

- 국회의원 비례대표 50% 여성할당 위반 수리 불허 및 등록무효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 공천 확대(도시 30%, 도농 20%, 농촌 10%)
내용을 정당규정에 도입
- 국회 주요 특별위원회의 여성참여 비율 확대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예결산특별위원회 등 주요 특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30% 이상 의무화(국회법 개정)

5-1-2.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여성가족부)

- 여성정치 후보자 및 실무인력 발굴·육성(중점)
 - 대학 및 시민단체의 교육훈련 지원
 - 각 정당의 인턴십 제도 활성화 및 지원 확대
 -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정치 맵핑(mapping) 프로그램 지원
 - 정치자금법상의 여성정치발전비를 차세대 예비 여성정치후보자 발굴 및 교육훈련 지원, 여성후보자 출마지원에 사용

5-1-3.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여성가족부, 선관위)

- 성평등한 정치문화 수준 향상교육 확대
 - 모든 당직자, 당원들에게 성평등한 정치문화 확산 교육 실시
 - 선거운동원 및 실무인력에 대한 정치 분야 성 격차(gender gap) 교육 실시
 - ‘깨끗하고 성평등한 (지방)정치 구조 구축’ 필요성에 대한 시민 교육 실시
- 성평등한 국회조성을 위한 제도도입(신규)
 - 국회의원 징계의결요건에 성폭력, 가정폭력, 성희롱 등 여성인권침해 행위 추가
 - 제명된 의원에 대한 보궐선거 및 차기 국회의원 총선거 입후보 제한
 - 윤리특별위원회 징계안 처리기한 규정 신설
 - 정치리더들의 성평등 문화조성 방안 수립

5-2.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현안진단

공무원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역량강화 기회를 확대하며, 인사관리 방식과 프로그램 개선이 필요함. 1-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동안 여성공무원의 입직기회를 늘리기 위해 5급 이하에서의 양성평등채용목표제(2002년 까지는 여성채용목표제)와 ‘4급 이상 여성관리직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음. 4급 이상 관리직에서의 여성참여는 아직 상당히 저조한 편이어서 지속적으로 비율을 상향조정해야 하겠지만 5급 이하를 대상으로 한쪽 성의 합격자 비율이 30% 미만일 때 하한 성적 범위내에서 해당 성의 응시자를 목표비율만큼 추가합격시키는 제도인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추가합격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서 공직에서 여성과 남성의 성비불균형 현상이 상당히 완화된 상태임. 따라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채용과정에서 아닌 경력관리에 의한 배치전환에서의 차별해소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임. 그에 따라 여성공무원들이 주요 보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기계발형 보직순환제와 맞춤형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야 할 것임.

공공 및 민간 여성임원비율은 절대적인 수치가 낮은 상황에서 공공부문에 비해 민간부문에서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의 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위원회 여성비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교육과학기술부의 ‘양성평등조치계획’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대 여교수 비율은 13%에 머물고 있으며, 초·중등 교원에서도 여성 교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교장·교감의 여성 비율은 여전히 미진한 수준임. 교육 분야 관리직에서의 여성 임용 확대를 위한 조치가 필요함. 아울러 군대와 경찰과 같은 특수 분야에서도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비율 확대 등 관리직 여성 진입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함.

5-2-1.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행정안전부)

-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적용 확대
 - 고위 공무원단 여성비율 목표제 도입
- 주요 보직 참여기회 확대

- 여성공무원의 첫 보직배치시 보직배치 관련 멘토제 운영
- 자기개발형 보직순환제 및 보직기간 제한제 등 인사관리시스템 개선
 - ‘자기개발형 보직순환제’는 개인이 자신의 생애주기와 경력개발을 고려한 보직경로를 설계하는 것으로 인사관리시 참고할 수 있고, 여성공무원들의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음.
 - ‘보직기간 제한제’는 동일한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지 않도록 하여 다양한 보직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함.
- 맞춤형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원 운영시스템에 성별을 기준으로 한 교과과정 편성
 - 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 5급이상 여성공무원 리더십 교육과정 설치
 - 교육훈련의 여성관리직 공무원 역량강화 기여여부에 관한 교육과정 상시 점검

5-2-2.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의 여성비율 제고(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상임위원 목표비율을 향후 5년간 10%로 설정하되,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단계별, 차등적 목표를 설정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임용시 성별 균형적 임용조항 추가
 - 여성임원 육성을 위한 멘토프로그램 등 운영
-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지 여성대표성 및 가족친화 관련 지표 포함(중점, 신규)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준정부기관 경영평가의 리더십·책임경영 평가범주와 경영효율 평가범주내 하위평가지표에 여성대표성과 관련한 균형인사지표 포함(예 : 여성관리자 비율 등)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30% 비율 의무화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지침’ 개정에 의해 여성위원 30% 비율 의무화

5-2-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정부위원회 여성목표비율 상향
 - 정부위원회 위촉직 위원 중 여성비율 40%로 확대
 - 정부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현황 공표 및 개선 권고조항 신설(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여성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DB 등재관리
 - 기초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인재발굴 확대 및 건설·교통·해양 등 여성인재풀이 부족한 분야 집중 발굴

5-2-4. 대학의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제고(교육과학기술부)

-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조치’의 실효성 제고
 - 매해 확보되는 국공립대 교수 정원 중 30% 여성 할당('11 여성박사 비율 32%)
 - 주요 보직 및 위원회 여성비율 20% 할당 권고
 - 양성평등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및 개선 조치 미진 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 강화
 -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조치 기본계획’(가제) 추진
- 대학 평가 및 사업 선정 심사 시 여교수 임용비율 등 젠더 관련 지표 삽입(중점, 신규)
 - 대학 교육역량강화 사업, 학부교육선진화 선도대학(ACE), 세계수준의 연구중심 대학(WCU), BK21 등 교육과학기술부 주관 각종 대학 평가 및 사업 심사 기준에 여교수 비율 포함
- 교장·교감 임명에 여성 비율 목표제 지속 추진
 - 점수보상에서 임금보상으로 도서벽지 전입에 대한 보상방법 개선
 - 시도교육청 국장 및 교육장 인사에 여성 비율 제고 지침 반영

5-2-5. 군대 및 경찰 등 특수직에서의 여성 진출 확대(국방부, 경찰청)

-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정원 확대(중점, 신규)
 -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정원 비율 20%까지 확대 조치
 -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 내 여학생-졸업생 간 멘토링 체계 구축

- 특수직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일가정 양립 보장을 위한 제도적 조치 마련
 - 남성 군인 및 경찰 대상 제도 개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완화를 위해 일가정 양립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 강화
- 성별로 인한 인사 상의 불이익 개선 및 모니터링 지속
 - 진급, 배치, 보직 임명시 여군·여경의 능력이나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입 차단
 - 진급, 배치, 보직, 훈련 등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임신 및 출산 전후 여군·여경의 퇴직관리실태 점검

5-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현안진단

통일분야는 1-3차 계획기간 중 비교적 단계적인 정책과제를 설정하여 이를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남북한 정치환경의 변화에 의해 실제 정책추진이 가시화 되지 못하고 위축되는 경우도 발생하였음. 3차 계획기간 중에는 특히 통일분야에서 여성의제가 상당 부분 축소되었으며, 실제 추진도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였음. 통일분야를 별도로 설정하지 못하고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를 위한 ‘평등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다양성에 대한 수용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른 관계로 그 중요성이 축소되었던 바 4차 기본계획에서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해야 할 시대적 필요성에 따라 독립된 과제로 설정하게 되었음.

소과제로 통일 관련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여성참여를 확대하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함으로써 통일대비 과정에 여성참여가 보장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남북여성 공동의제발굴을 활성화하도록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의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함.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함.

5-3-1. 통일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촉진(통일부)

- 통일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진
 - 통일분야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는 5급 이상의 여성공무원 비율 확대(2017년까지 30%)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남북교류협력기금법」,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에 여성의 교류, 참여규정 명문화
- 통일 대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 협상전문가 및 여성통일교육 전문가 양성과 지원
 - 대상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5-3-2.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 기반 마련(통일부, 여성가족부)

- 통일 대비 남북한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의제 개발 민관협의 시스템 구축
 - 통일과정에서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이슈를 개발하는 민관 협력의 논의구조 마련
 - 남북한 공동의제 발굴과정에서의 성인지적 관점 채택 및 여성참여 보장
- 남북 여성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
 - 남북교류협력기금 중 일정 비율 여성교류협력기금으로 책정
 - 기금의 15%를 북한여성 지원항목으로 규정
 - 평화·통일·여성에 대한 정보 공개 및 성별 통계 작성·보고
- 통일 및 평화교육 확대

5-3-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통일부)

-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1325호 국가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차원의 조정·감독 및 보고체계마련
 - 국민에 대한 1325호 관련 교육·홍보
-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이행
 - 현지에서 여성, 여아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한국군에 대한 젠더 교육 확대
 - 파병이후 인권침해범죄 발생 등에 대한 보고 의무화

5-3-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의 UN 등 국제기구 여성정책 상시 의제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경험 국가 정부 협의체 구성, 운영
- 일본군위안부 피해경험 국가와의 민간 및 정부기구간 상호협력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건강 및 생애사 정보의 체계적 구축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내외 사료의 지속적 발굴, 수집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제학술대회 개최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국민인식 제고 위한 홍보·교육 강화

5-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현안진단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면서 국제개발협력사업(ODA)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구체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원조 효과성을 높이는 의제가 중요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전략으로서 성인지적 수행을 통한 원조 효과성 제고에 주목하고 있음. 201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후 2012년 6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 이행방안으로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을 출범시키고, 부산 총회 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10개의 지표를 승인하였음. 8번째 지표로서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이 포함되었으므로 세부지표를 개발하고 정부-민간 협력체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과제가 남음.

아울러 한국적인 고유한 원조모델의 일환으로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가칭)“여성정책 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s)”의 개발·확산하는 것이 필요함.

UN은 2000년 ①극심한 빈곤과 기아 퇴치, ②초등교육의 완전보급, ③성평등 촉진과 여권 신장, ④유아 사망률 감소, ⑤임산부의 건강개선, ⑥에이즈와 말라리아 등의 질병과의 전쟁, ⑦환경 지속 가능성 보장, ⑧발전을 위한 전세계적인 동반관계의 구축 등이 담긴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를 발표하였는데, 종료시점(2015년)이 다가옴에 따라 밀레니엄개발목표 특히 여성 관련 목표 3과 5의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시급함.

UN 산하의 국제연합여성발전기금(UNIFEM), 젠더관련사무총장 특별자문관실(OSAGI), 여성지위향상국(DAW), 여성훈련원(INSTRAW)을 통합한 UN

Women이 2011년 1월 출범하였고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참여하고 있는 바, 협력 사업의 공동추진, 한국여성의 일정 비율 참여 보장 등 긴밀한 협력관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4-1.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의 발굴(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 개발도상국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확대
- 수원국 여성대상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중장기 사업 실시
-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가칭)“여성정책 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s)”의 개발(중점, 신규)
 - ※ 기획재정부와 KDI는 한국의 고유한 원조모델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한국의 경제개발경험을 일방적으로 전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협력대상국의 여건에 맞춰 정책연구, 자문, 연수를 제공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수행해옴.
- 개발도상국 여성 교육을 위한 가칭 글로벌 여성교육센터 등 설치·운영(신규)

5-4-2. Post-부산,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정부-민간협력 제고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 글로벌 모니터링 10개 지표 중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표 개발(신규)
-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민간 협력체제 운영(신규)

2011년 11월 부산에서 열린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HLF-4; 4th High 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 이후 2012년 6월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의 결과 이행방안으로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Effective Development Cooperation, GPEDC)을 출범시키고, 부산 총회 결과 이행점검을 위한 10개의 지표를 승인함.

[부산 글로벌 모니터링 체제]

1. 개발도상국 우선사항을 충족하는 결과중심의 협력
2. 개발활동의 참여와 기여를 최대화하는 환경에서의 시민사회 운영
3. 개발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와 기대
4. 투명성 : 개발협력에 관한 정보 공개
5. 개발협력 예측가능성
6. 의회의 정밀검토에 따른 정부의 원조 예산
7. 포괄적 검토에 의한 개발협력 주체간 상호책임성 강화

- | |
|---|
| 8.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
9. 개발도상국 공공재정시스템 및 공공 조달 시스템 이용
10. 원조 비구속성 |
|---|

5-4-3. Post-MDG 대비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대(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 MDGs 달성을 위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중간점검 및 발전방안 제언(신규)
 - ※ 유엔은 2000년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자 2015년 도달을 목표로 천년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으며 한국은 ODA를 통해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음.
 - ※ 천년개발목표중 여성에 직결되는 것은 목표 3과 목표 5임.
- UN Women과의 협력 제고(분담금 제공, 협력사업의 지분 확보, 한국여성의 일정비율 참여 보장 등)
- 2015년 이후(Post-MDG) 새로운 원조 목표 개발 활동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활동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보장(신규)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 마련	
선출직 의원후보 의무할당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5-2.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 관리직 교육훈련 건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관리직 여성임원 임용건수 및 비율	행정안전부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국공립대 여성 전임교원수 / 국공립대 전임교원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여성비율	여성교장·교감수 / 전체 교장·교감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사관학교·경찰대학 여학생 비율	여학생 수 / 전체 학생수 × 100 국방부, 경찰청
5-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의 통일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인원수 및 참여비율	통일부
통일관련 교류협력기구 여성참여건수	통일부
5-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성인지적 ODA사업 예산비율	외교통상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가. 현황 및 진단

- 우리 사회는 법과 제도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하지만, 일상의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남녀차별은 여전히 크고, 성역할고정관념도 잔존하여 의식지체 현상을 보임.
 - 『2012년 여성정책수요조사』(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은 남녀불평등 원인으로 사적과 공적 영역 모두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인 생각 혹은 고정관념을 남녀 간의 가사 및 육아부담의 차이, 사회 및 인간관계에서의 남녀 차이와 더불어 꼽음.

〈표 Ⅲ-4〉 남녀불평등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

단위: %(명)

	사적 영역 불평등 원인			공적 영역 불평등 원인		
	남성	여성	전체	남성	여성	전체
성역할에 대한 전통적 생각 혹은 고정관념	47.3	48.3	47.8	13.5	12.5	13.0
남녀간의 가사 및 육아부담 차이	18.9	26.0	22.5	7.8	7.3	7.5
남녀간의 사회 및 인간관계의 차이	11.4	10.2	10.8	12.7	11.7	12.2
남녀의 신체적 특성 차이	11.0	7.6	9.3	5.3	4.9	5.1
우리나라의 일하는 방식과 시간	3.3	3.5	3.4	10.9	9.4	10.1
우리나라 조직 및 기업의 문화	3.0	2.1	2.6	34.4	41.1	37.8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	2.0	1.6	1.8	10.9	11.7	11.3
기타	0.2	0.0	0.1	0.7	0.4	0.5
남녀가 불평등하지 않다	2.9	0.7	1.8	3.9	1.1	2.5
전체	100.0 (1,750)	100.0 (1,758)	100.0 (3,508)	100.0 (1,750)	100.0 (1,758)	100.0 (3,508)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p.124.

□ 과도한 경쟁과 피로사회의 징후 속에 평등문화 실천이 어려운 현실

- 평등문화의 일상적 실천을 위해서는 가사노동시간 배분이 중요하지만, OECD 다른 나라에 비해 장시간 유급노동을 하느라 가사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의 노동여건으로 인해 남녀 모두 고달픈 상황.
 - 한국은 맞벌이 가구가 늘어나서 500만 가구를 바라보지만, 생활시간조

사(통계청, 2009)를 보면 맞벌이가구 남편의 가정관리시간(24분)은 비 맞벌이가구 남편의 가정관리시간(19분)보다 5분 많을 뿐이고, 맞벌이가 구 주부는 2시간 38분으로 남편보다 6.5배 긴 편임.(통계청 보도자료, 2010.3.30. 매5년주기 생활시간조사)

- 가정의 성역할분담, 학교의 평등교육, 직장의 일과 생활균형 지원 등이 함께 가야 일상에서 평등문화와 의식의 확산이 가능.

□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서 평등문화 분야 정책의 이행도는 낮은 수준

- 성평등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이 우선 필요하지만,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문화 분야 이행과제는 1, 2차에 비해 축소되고, 실행과제에 대한 국민의 정책 인지도도 타 과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평등문화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래 표와 같은 답변이 나옴.

〈표 Ⅲ-5〉 교육 및 문화 분야 정책 인지도 및 평가

단위: %, 점

구 분	정책 인지도			정책 평가* (알고 있는 경우만)			평균값 (표준편차)
	전혀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잘 되지 않는다	보통 이다	잘 된다.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보내기 캠페인	65.4	29.3	5.3	27.5	49.1	22.4	2.91 (.846)
초·중교과서 성차별적 내용 조사	64.6	30.9	4.5	19.3	51.0	29.0	3.08 (.794)
미디어 양성평등 문화 확산 교육	61.2	34.8	4.0	20.8	53.3	25.4	3.04 (.791)
여성의 문화활동 지원	56.4	38.4	5.2	17.0	50.8	31.1	3.15 (.782)

자료: 김태홍 외(2012). 『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 여성가족부. p.118.

- 성 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 1순위 항목으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은 제례, 혼례 등에서의 성 평등한 가족문화 확산(34.2%)으로 생활문화 개선에 대한 요구가 여전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음.(『2012년 여성정책 수요조사』124쪽)

□ 여성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문화와 미디어 환경

- 외모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고, 다이어트와 성형을 부추기는 광고가 넘쳐나는 문화 속에서 여성,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위축되거나 자존감 상실 우려
 - 미래 세대의 성장과 여성의 건강한 신체 이미지와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평등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이 절실
- 여성문화예술인의 경우 안정적 생계유지가 어렵고, 출산·육아의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문화예술 종사자의 보편적 상황에 더하여 성희롱 등 인권침해의 위험성.
 - 청소년 연예인(연습생)의 경우 공교육에서 기본 학습 시간 확보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침해 상황에 대한 대처 역량 강화 방안 필요.
- 인터넷과 SNS 등 사이버 공간에서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행위가 여성들의 자유로운 참여와 정보 이용권을 위협, 제한하는 상황

□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추진체계 보강이 필요함.

- 기존의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은 정부조직개편으로 일부 업무가 타부처로 이관된 상태이며, 각 시도교육청에서도 양성평등 업무가 보건교육이나 생활지도의 하위업무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임.
 -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 업무를 파악할 결과,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전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업무분장상 양성평등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8개뿐이며⁹⁾, 담당 업무 또한 성희롱·성폭력, 성별영향분석평가 업무 등 범위와 주제가 한정됨.

□ 교육과학기술부의 양성평등 연구학교 및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선도학교의 활성화가 요구되며, 두 제도의 연계 운영 방안이 요구됨.

- 교육과학기술부의 양성평등 연구학교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나, 2008년부터 연구학교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되어 총 21개교의 연구학교(정책연구 포함)와 13개교의 시범학교를 운영하였음. 한편, 여성가족부에서는 2011년부터

9) 2012. 8. 현재 기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업로드 된 업무분장을 기준으로 함

- 양성평등 선도학교를 지정하여 매년 8개교씩 현재까지 16개교가 참여함.
- 두 제도가 내용상 비슷한 제도이지만, 서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협의체 구성을 통해 성과를 공유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시도교육청 연구·시범학교는 반 이상이 경남과 전북에 집중되고, 한 곳이 없는 곳도 8지역이나 있어 지역 간 편중이 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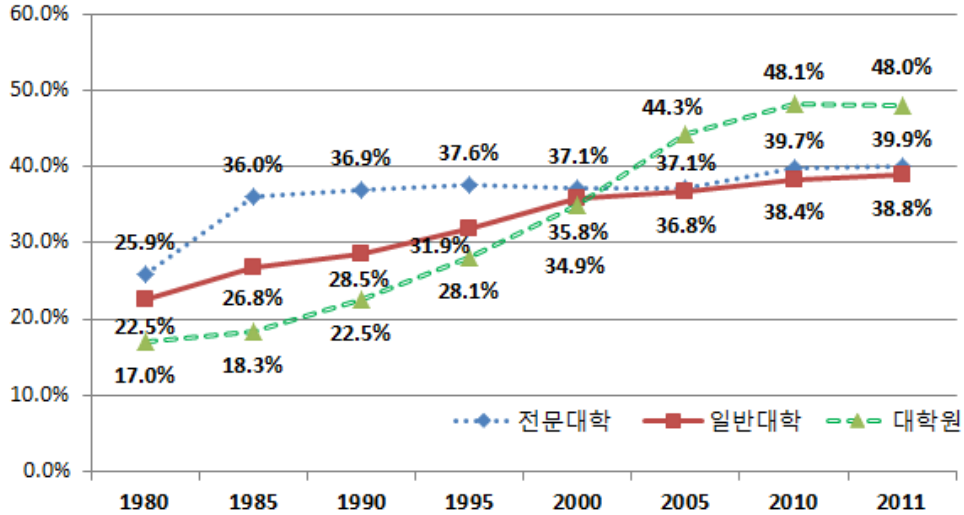
〈표 Ⅲ-6〉 시도교육청 지정 양성평등 연구·시범학교(2006년 이후)

(단위: 학교수)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0	0	0	0	0	0	0	1	1	1	1	4	0	1	9	1	19

자료: 민무숙 외(2011). 제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점검 및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여성가족부

- 2013년부터 2009 개정 교육과정이 전학년으로 확대되면서 창의적 체험활동 도입, 선택교육과정 확대 및 학교 교육과정 다양화 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과군의 20% 범위 안에서 단위학교별로 자율적인 교육과정 구성이 가능해짐.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있어서 성별 고정 관념이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또한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기초핵심역량 과목은 강화되는 반면, 나머지 교과는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선택교과로 운영되어 이 과정에서 교과목 간 남녀 학생 간의 성별 분리가 심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지금까지 교육에서의 양성평등은 초·중등교육 위주로 논의되어 고등교육은 배제되었음. 고등교육의 여성 비율은 증가 추세이나,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에 성 평등 관점을 개입하지 못하였고, 그러한 논의 또한 이루어지지 않음.
 - 고등교육에서의 여성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문대와 일반대의 여학생 비율이 40%에 육박하며, 특히 대학원의 여학생 비율은 지난 20년간 약 3배 정도 증가하여 과반에 가까운 48%가 여학생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각년도), 교육통계연보DB

[그림 Ⅲ-12] 고등교육 여학생 비율 추이(1980년-2011년)

나. 기본방향

□ 성차별과 인권침해 없는 사회문화 환경 조성

- 미래 세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용모차별을 지양하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환경 조성
- 가족제도의 변화를 반영하고, 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위한 제도의 정비
- 문화예술, 방송연예분야에서 일하는 청소년 및 여성의 안전과 인권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 여성의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격차 해소
- 성평등의식 확산에 기여하는 미디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지원 활성화

□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평등문화 조성

- 시민참여 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 참여 확대
- 성평등한 지역문화 조성을 위한 여성 및 여성단체의 활동지원 및 문화역량 강화

- 지역 여성문화활동 역량강화와 여성문화 유산의 발굴 계승
 - 지역의 여성문화를 기록하고, 전시, 교육하는 인프라 구축
 - 지역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확산
 - 지역 기반 여성의 문화 활동 지원

- 지속가능한 미래 비전을 열어가는 풀뿌리 평등문화 살리기
 - 지역 기반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에의 여성 참여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
 - 지역 기반 여성의 돌봄공동체 육성을 위한 역량강화
 - 지역 여성운동 네트워크 활성화

- 초·중등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환경 조성 강화
 - 양성평등교육의 정책추진 전달체계 확보
 - 일선 학교의 양성평등교육 참여 확대
 - 예비교원을 포함한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강화
 -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성 평등한 운영을 위한 조치 마련

- 고등교육에서의 젠더 관점 개입
 - 학교 운영에서의 성 평등 관점을 제도적 차원에서 보완
 - 대학정보공시에 성별 분리 통계를 제시함으로써 고등교육에서의 성별 현황 모니터링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 과도한 미용성형 광고 및 지원 제한
- 고용 시 용모차별 금지
- 공공기관부터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문화 실천
- 성평등한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조성

성차별 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 미디어생태계의 성평등 체감도 향상
-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 여성문화예술인 인권보장
- 정보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 제3섹터 여성 활동 지원
- 지역 여성운동 역량강화
- 성평등한 문화 발굴·지원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 성 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 교원의 양성평등 인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
- 고등교육의 양성평등 운영 강화

다. 추진계획

6-1.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현안진단

인터넷과 SNS, 전철역 등 도처에서 성형을 권유하는 광고와 마주침. 우리나라 인구 1만명당 성형수술 133건으로 헝가리에 이어 2위, 2010 연간 총 성형수술 건수 기준 세계7위임(국제미용성형수술협회 ISAPS). 성형, 다이어트 등 외모지상주의는 사회 전반에 걸친 현상으로 미용성형은 여성의 소비능력, 자신감 표현 수단으로 인식되는데, 이런 배경에는 의료산업, 광고, 미디어의 영향이 막강함.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의 심신건강을 위협할 상황임.

한국의 성형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산업 육성과 결합되기도 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고용의 관행과 밀접한 관련. 정부의 '여성채용에 관행에 관한 개선방안(여성가족부, 2006)에 의하면 공식 채용공고에 용모기준이 제시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거의 없지만, 공공기관의 80%, 민간기업의 85.4%는 여전히 사진, 키, 몸무게 등 용모 차별을 초래하는 정보를 입사지원서에서 기재하도록 요구하기도 함.

6-1-1.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광고 및 지원 제한(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성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 연령 관계없이 노출되는 온라인 및 공공장소 성형광고 가이드라인 마련
 - 과도한 판촉행위(소셜커머스 통한 광고·할인 등) 제한
 - 성형의 위험성에 대한 정보 제공 이행여부 점검
- 여성건강 유해분야 산업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제한(중점)
 - 미용성형의료관광산업 육성 시 심사 항목 요건 강화
 - 공적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지역여론 수렴 절차 제도화

6-1-2. 고용 시 옹모차별 금지(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고용 시 표준 이력서 채택 확대
 - 현행 권장되는 표준이력서(고용노동부)는 직무와 관련 없는 항목 기재로 인한 차별을 방지하고자 하지만, 실제로는 대학의 이름, 키와 몸무게, 가족의 직업 등 표준이력서가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
 - 이력서 기재항목 실태조사 및 공기업·준정부기관 등 표준이력서 채택 확대 시행
- 모집공고 시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남녀고용평등법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1-3. 공공기관부터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문화 실천(여성가족부)

- 직장 내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 언어 사용 추진
 - 외모, 성별과 관련된 호칭, 일상용어 등의 언어 차별 바꾸기 운동
 - 공공기관 성차별 언어사용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 직장 내 평등문화 확산 활동 지원

6-1-4. 성평등한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조성(여성가족부, 법무부)

- 성평등 가족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 조성(신규)
 - 다양한 가족형태 및 가족개념이 가족정책에서 수용될 수 있도록 법 제정 및 정비 추진(건강가정기본법, 민법, 가족관계등록법 등 교차 검토)
 - 법률혼, 혈연관계 이외의 '생활동반자관계'의 법적 지위 부여 추진(사회보장·조세·재산관련 보장)
 - 채용, 입학 시 가족관련 정보 수집 제한 및 정보 보호 강화
-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
 - 생활문화 속(명절, 결혼, 육아 및 교육, 회식 등)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방안 공모, 홍보
-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포럼 운영
 - 남녀가 함께 참여하는 평등문화 확산 활동 지원

-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포럼 운영
 - 성평등한 미래사회를 위해 청소년이 참여하는 평등문화 확산 활동 지원

6-2. 성차별 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현안진단

중요 포털을 비롯해서 인터넷 뉴스 화면에는 여성 비하하고 성상품화하는 각종 배너가 달려 아동과 청소년 구별 없이 무작위로 노출되는 현실임. 2007년 [한국인터넷광고심의기구]가 발족해서 자율규제를 하고 있으나 실효성은 없는 편. 선정광고 규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미디어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참여 활성화하는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성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노력이 필요함.

연예인은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업군이지만, 여성연예인의 경우 특히 연예산업구조에서 매우 취약한 위치임. 여성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0.2%가 방송관계자나 유력인사에 대한 성접대 제안을 받고 63.6%가 언어폭력을 경험(국가인권위원회, 2009)함. 청소년 연예인 및 지망생의 경우에도 19세 미만 여성청소년 중 60%가 강요에 의한 노출을 하고, 56.1%가 다이어트를 권유받은 경험이 있고, 14.6%가 성형수술을 권유 받음([청소년 연예인 성보호·학습권·근로권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2010). 또한 청소년은 근로권과 학습권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음.

6-2-1. 미디어생태계의 성평등 체감도 향상(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공익 선전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는 데는 국민의 의식 변화도 필요. 성매매 방지, 각종 여성폭력 예방에 기여하는 다양한 매체형식의 공익광고 및 캠페인 지속 추진
- 시민참여 성인지 관점의 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 ‘표현의 자유’는 존중하되, 여성인권을 존중하고,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시민참여 독려(모니터링 동아리 활동 지원)
 - 이용자가 직접 성차별, 여성비하, 폭력 조장하는 각종 매체, 광고, 프

로그랩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개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클린센터 운영(민간위탁)

- 온라인클린센터를 통한 신고 사례 및 환류 결과 보고 정례화(연2회)
- 매체 별 심의기구(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심의 기구 구성 및 활동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통한 성인지 관점 정책 수립
 - 각급 심의위원에 대한 성인지 및 여성인권 감수성 고양을 위한 교육 실시(연1회)
- 미디어 정책연구,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지표 개발
 - 즉각적인 현안에 대한 대응을 넘어서 장기적인 전망에서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정책 수립 연구
 - 성인지 관점의 미디어 모니터링 지표 개발 추진

6-2-2.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작은 미디어 운영 및 제작 지원(중점)
 - 일상에서 성별 고정관념이나 여성비하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도록 다양한 문화적 자원을 창조하는 개인과 단체가 주도하는 미디어 활동 및 콘텐츠 생산 지원(사무실, 서버, 사이트 개발 등 지원 및 성평등콘텐츠 제작 지원)
 - 성인지 시각에서 미디어 비평을 하는 매체비평 매체 운영 지원
 - 위민넷(Women-Net)의 정보화 기능 활성화(성평등정책 관련정보 DB 구축 및 관련매체를 연결하는 허브 역할 강화)
- 성평등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 성평등콘텐츠 제작 방송사, 지상파 재허가시 가산점 및 제작자 인센티브
 - 성평등콘텐츠 제작 관계자에 대한 안내서 제작
-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공모

6-2-3. 여성문화예술인 인권보장(문화체육관광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고용노동부)

- 여성문화예술인 생활 개선대책(중점)
 -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및 지원 대책 수립: 『성별문화인력 통계 디비 연구』(*2008년부터 분야별 격년 실시) 결과 활용(문화부)
 - 여성문화예술인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설치 추진(문화부)
- 여성문화예술인 인권 보호(신규)
 - 방송·연예 종사자 인권침해 상담 창구를 노조 및 협회에 마련 (노동부)
 - 연예 매니지먼트 종사자,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방지교육 의무화
- 청소년연예인(연습생) 인권감수성교육(신규)
 - 청소년연예인 방송활동 및 제작 가이드라인 개발·운영(문화부) 시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포함
- E-6 비자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및 감독
 - 스위스에서 2012년 8월 개최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81차 세션에서는 우리 정부가 제출한 제 15차, 16차 통합 이행보고서 심의, 심의내용 중 연예홍행비자(E-6)로 입국한 여성의 인신매매 피해 우려 강력히 제기
 -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현황 파악 및 외국인여성 고용 연예매니지먼트 회사 심사 강화
 - E-6 비자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모니터링 및 대책 추진

6-2-4. 정보 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 인터넷, SNS 사용에서 여성혐오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 급격하게 변화하는 미디어환경 속에서 인터넷과 SNS는 성중립적인 공간이 아니라 여성혐오를 발산하는 수단이 되는 경향이 있음.
 - 여성혐오증으로 인한 여성의 인터넷 활동 지체현상을 분석하고, 인터넷 활용 교육 및 다양한 SNS 환경에서 성별 격차를 완화하는 연구 및 대책 수립
 - 인터넷, SNS의 성차별과 편견을 바꾸는 동호회 활동 지원
- 취약여성의 정보접근성과 역량 제고

- 여성들 가운데에서도 연령, 지역, 언어 등으로 인한 정보접근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지원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플뿌리문화 살리기

현안진단

OECD 30개 국가 중 한국의 행복순위는 25위(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영국 신경제재단(NEF)의 조사결과는 178개국 중 102위, World Value Survey 조사에 따르면 37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임.

특히 청소년 행복지수는 OECD국가 중 26위(『한국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 국제비교』, 한국방정환재단·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 2010). 과도한 학업 스트레스, 경쟁 위주 사회분위기가 원인임.

여성의 양육자로서의 경험이나 만족도도 자녀의 학업 성취도나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의해 좌우되는 경향이 강화되는 한편, 게임중독, 학교의 집단 괴롭힘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무력감에 빠짐.

사회적 생태계와 자연 생태계가 함께 병들어가고 있는 현 사회의 해법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성들의 자발적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함.

6-3-1. 제3섹터 여성 활동 지원(여성가족부, 행안부)

- 지역기반 대안경제영역의 여성 활동 지원(중점)
 - 다수 여성의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고, 여성이 중심이 되는 협동조합 또는 지역 기반의 대안화폐(지역공동체 안에서 화폐지불이 아닌 방식으로 물건과 노동력을 주고받는 운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역문화 활동 지원(강좌, 쇼케이스 등)
 - 지역의 여성인맥 지도 만들기
- 지역의 돌봄 공동체 배양 및 활동 육성
 - 다양한 수요에 맞춘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의 자발적인 활동이 지속,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예를 들어 현재 잠재적 수요는 많지만,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인 공동육아, 육아품앗이, 방과

후교실을 준비모임 단계부터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자율적인 돌봄 공동체 역량 강화

- 구체적으로 공공시설을 이용한 모임 장소 제공, 홍보 지원
- 도시형 마을공동체문화 살리기 위한 여성들의 활동 및 네트워크 지원

6-3-2. 지역여성운동 역량 강화(여성가족부, 지자체)

- 지역여성운동 단체 네트워크 지원(신규)
 - 지역의 풀뿌리 여성단체는 지역 활력화의 중심이므로 마을만들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포함한 여성단체 및 활동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중앙 및 지자체 별 단체 지원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균형 잡힌 지원

6-3-3. 성평등한 문화 발굴·지원(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신규)
 - 국립여성사박물관 추진: 우리나라 여성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계승·발전
- 지역여성문화유산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지원(중점)
 - 지역여성문화전문가, 지역여성문화운동단체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로 구성된 지역 여성문화유산 발굴 네트워크 구축
 - 지역의 여성인물 발굴 및 선양사업 지원
 - 지역여성문화유산과 지역의 역사·관광사업 연계(문화유산해설사 양성, 자료 제작, 홍보, 프로그램 개발)
- 지역·계층 격차를 줄이는 여성문화예술 활성화(신규)
 - 지역여성의 삶을 기록하는 여성문화예술 인력 양성 및 창작활동 지원
 - 취약계층여성을 위한 성인지 문화콘텐츠 향유 기회 확대(강좌, 전시·상영)
 - 일하는 여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현안진단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전반에서의 양성평등성 강화를 비롯하여 학생의 교육 환경을 둘러싼 모든 요소에 양성평등적인 관점이 개입될 여지를 마련해야함. 이를 위하여 가장 먼저 양성평등교육을 위한 전담인력 확보 및 추진체계 보강이 중요함.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 전담조직이 없고, 시·도교육청 중에서 업무분장에 양성평등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교육청은 8개에 불과함.

양성평등 연구학교는 시도교육청 이관 이후 소강상태이며, 그조차도 지역별로 편중 운영되는 상황임. 아울러 연구/선도학교의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운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지역별 의무 할당을 통해 참여 학교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현재의 연구/선도학교 운영 시스템은 결과보고 및 발표회 정도에 그치고 있어, 참여학교 협의체 조직 및 세미나 개최 등 보다 역동적인 활동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재 개별 학교별로 시행 중인 양성평등교육 자체 진단 결과의 활용도를 높여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관심을 유발할 필요가 있음.

교육과정의 양성평등성 또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할 과제임. 특히,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 학년 시행을 앞두고, 학교교육과정과 선택교과에서 성 차별적 내지는 성 정형적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교과서뿐만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에 대한 모니터링도 진행 및 관리되어야 함.

교육내용 및 교수방법에서의 성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성인지 의식 강화가 필수적임. 전문가 자문 및 수요조사 등을 통해 기존의 시행하고 있는 양성평등 교원연수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여야 함. 정책대상 범위를 예비교원으로 확대하여 양성기관에서부터 의식 강화를 도모해야함. 또한 단순히 교육만으로 교원들의 양성평등 의식을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 내에 관련 지표를 삽입하여 적극적인 현장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기관은 초·중등 교육기관과 달리 그동안 여성정책 범주에서는 주된 관심분야가 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국가차원의 고등교육 지원이 강화되고 고등교육의 규모와 영역 확대되고, 향후 이러한 추세가 더 강화될 것으로 보이면서 고등교육 정책 전반에 성 인지적 관점 투입이 필요함. 대학 내 여성인력의 증가로 인한 보육시설 설치 요구 등 양성평등한 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적·정책적 조치가 요구됨. 또한 2008년부터 시행한 대학정보공시의 각 지표별 성별 통계를

의무 제시하도록 하여 고등교육 투입 및 산출에서 성별 효과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음. 또한 최근 기혼 여성 중에도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대학내 보육시설의 확대·설치가 필요함. 이는 대학 내 교원, 교직원 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한 부분임.

6-4-1. 성 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교육과학기술부)

- 양성평등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중점)
 - 교육과학기술부 내 양성평등 전담 조직 확보
 - 시도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 전담인력 1인 이상 확보
-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의무 시행 및 공동협의체 구성·운영(신규)
 - 시도교육청에서 초·중·고 각 학교급별로 1개교 이상 양성평등 연구 학교를 의무적으로 시행
 - 양성평등 학교제도를 시행하는 교육과학기술부 양성평등 연구학교와 여성가족부 양성평등 선도학교 간의 협의체 구성
-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우수학교 포상
 - 양성평등 자체진단에 대한 체계적인 결과 분석 및 각 지역교육청과 단위학교에 분석 결과 환류
 - 양성평등 수준 자체진단 결과 우수학교 포상 등 인센티브 제공

6-4-2.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성평등 관점 확립(신규)
 - 학교단위 수준의 성평등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작성, 각 단위 학교 ‘학교교육과정 운영위원회’에 보급 확대
 - 학교 교육과정 운영 강화에 따른 중·고등학교들의 학교단위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 교육통계연보에 고등학교 남녀학생의 선택교과 현황 항목 삽입
- 교과서 집필과정에서의 성평등 기준 확립
 - 모든 교과서의 『교과서 개발 시 유의사항』, 검정기준, 집필기준에 양성

평등 관점 조항 삽입

- 검정교과서 편찬 출판사 대상 성 인지적 관점의 교육자료 콘텐츠 보급 확대 및 교과서 집필자 대상 워크숍 강화
-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지속적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신규)
 - 2009 개정 교육과정 및 교과서, 교육지도자료 등에 대한 성 차별 실태 모니터링
 - 교육과정의 성 평등 우수사례 수집 및 배포

6-4-3.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평가영역으로 양성평등 문항 삽입(중점, 신규)
 - 일반 교사의 경우 ‘진로 지도 및 특기·적성 지도’ 및 ‘민주시민성 지도’ 지표 내 삽입
 - 교장·교감의 경우, ‘자율장학운영’ 지표 내 삽입
-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 교육대학, 사범대학에서의 양성평등 교과목 개설 적극 권고 및 강사비 지원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원연수의 실효성 제고(신규)
 - 현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교원연수 기능을 원격교육에 한정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의 양성평등 교원연수를 지원하는 기능으로 확대
 - 각 시도교육청에 양성평등교육 콘텐츠 보급
 - 교원연수를 위한 양성평등 전문강사 파견 및 지원

6-4-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 운영 강화(교육과학기술부)

- 대학의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책무성 제고
 - 각종 규정 및 시설, 교육과정 운영, 교직원의 일가정 양립 지원 등 성평등 관점에서의 대학 운영 실태 조사
 - 양성평등 학교운영 가이드라인 작성 및 배포
 - 양성평등 관련 교양강좌 운영 적극 권고
 - 교직원, 시간강사, 교수들에 대한 양성평등교육 실시(오리엔테이션)

및 특강 등) 지원

- 대학정보공시 모든 현황 지표에 성별 분리 통계 제시(중점)
 - 특별히 취업률, 학생선발, 신입생, 재학생, 장학금, 교직원, 연구비 수혜 실적, 저서 및 논문실적, 국제교류 등의 주요 항목은 성별분리 통계 의무 명기
- 대학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신규)
 - 국공립 대학 보육시설 설치 의무화
 - 각종 대학 평가에서 보육시설 설치 대학에 대한 가산점 부여
 - 교직원뿐만 아니라 유자녀 대학(원)생에게도 보육시설 사용에 대한 동일한 기회 부여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6-1.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과장광고 모니터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중 성형관련 광고에 대한 의식조사 항목 추가 - 위 조사의 소셜커머스 이용현황에 성형 관련 항목 신설(현재는 '미용'으로 조사)
법 제도 정비 실적	- 가족 개념 불일치로 인한 불편 개선
생활시간 조사 변동율(가정관리 및 여가시간 변화)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기혼남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기혼여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 100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중 가정생활 부문
6-2. 성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성별문화인력 통계 디비 연구』(+2008년부터 분야별 격년 실시) 결과 활용(문화부)
정보화교육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매년)중 인터넷이용현황 부문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지역공동체활동 여성참여 비율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조사항목 중 19.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성별지표 - 통계청 「사회조사」(각년도)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조사항목 중 공동체, 사회참여 조사 부분 반영(매5년)
지역여성운동 네트워크 지원 실적	- 각 지자체 통계(예산 및 건수)

15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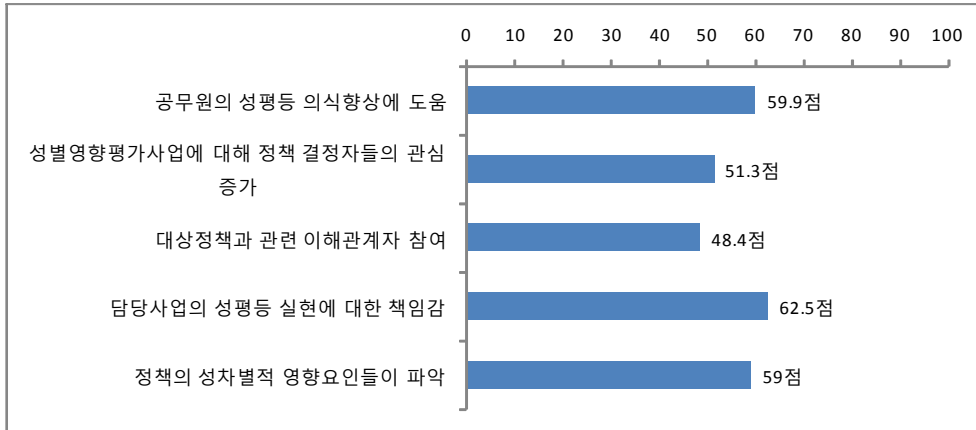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시도교육청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비율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시도교육청 수 / 전체 시도교육청 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여학생의 교과선택 비율	[교과별] 여학생 선택건수 / 전체 선택 건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보육시설 설치 대학 수 / 대학 전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가. 현황 및 진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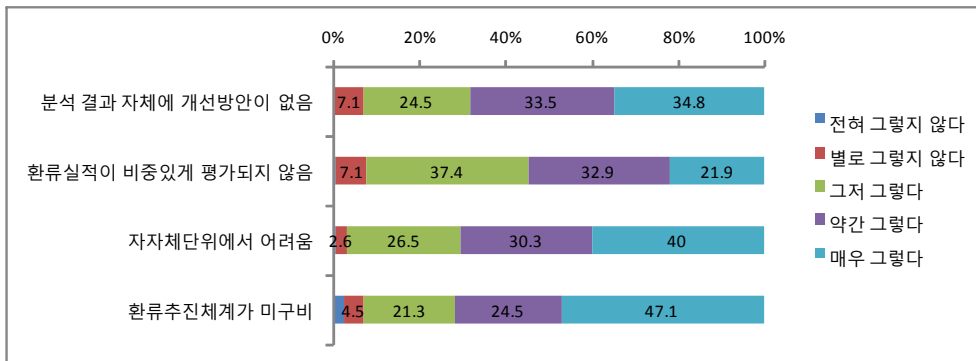
-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성평등 목표가 정부 제반 정책에 통합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 조정이 원활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 여성정책조정회의는 활발히 운영되지는 않음
 - 중앙부처간 정책조정을 위한 공식기구로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음. 하지만 2008년부터 현재까지(2012년 7월) 여성정책조정회의가 7번 열렸고 그 중 2번을 제외하고는 서면회의로 개최되었음.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정책조정 기구로 실질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었지만 제도에 대한 공무원들의 공감 수준이 높지 않으며 분석결과가 정책개선실적으로 이행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2011년 293개의 기관에서 2,954개의 과제에 대한 분석평가가 이루어지는 등 3차 계획 동안 양적인 확대가 두드러졌지만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분석결과가 정책개선으로 반영되지 않는 등 정책의 실효성 측면의 한계가 있었음.
 - [그림]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공무원들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성평등 의식 향상, 담당사업의 성평등 실현에 대한 책임감, 정책의 성차별적 요인 파악 등을 할 수 있다는데 중간 수준의 응답을 보이지만 부정정보다는 긍정 쪽에 가까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환류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석결과의 한계, 환류 추진체계의 미구비 등이 문제라는 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음.



자료: 김경희 외(2010).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04

[그림 Ⅲ-13] 과제 담당자가 인식하는 성별영향평가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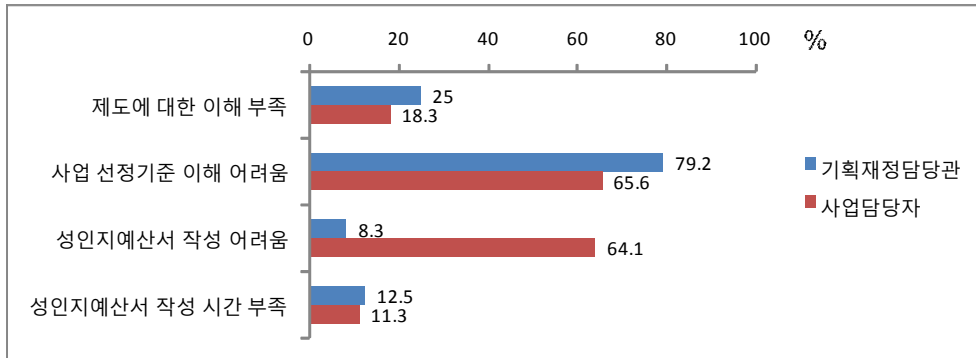


자료: 김경희 외(2010). 성주류화 관련제도의 효과적 정착을 위한 연구(III) :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성과와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p.118

[그림 Ⅲ-14] 총괄 담당자가 인식하는 환류 추진의 어려움

- 성인지 예산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성인지 예산서는 형식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어서 실질적인 편성 효과를 발생시키지는 못하고 있음.
 - 성인지 예산 제도가 2010년 예산부터 도입되었지만 정부 전체를 아우르는 성평등 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자원배분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성평등목표,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 목표 등이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으며, 또한 성별격차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지

침에서 제외됨으로써 실효성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 있음. <그림 Ⅲ-15>와 같이 담당 공무원들은 제도 형식을 이해하고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음.



자료: 김영옥 외(2010). 성인지예산제도의 안정적 정책과 운영 내실화 방안. 여성가족부, p.87

[그림 Ⅲ-15] 성인지예산서 작성시 어려움

- 성평등 정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책 현장과 여성 단체, 전문가 집단 간의 협력이 필요하지만 3차 여성정책기본계획 기간 동안에는 젠더 거버넌스가 약화된 경향이 있음.
 - 여성단체 활동가의 정부위원회 참여가 저조해지고 정부와 여성단체의 정책협력이 약화되었음.
 -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여성단체, 시민사회 등과 발전적인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여성정책거버넌스 틀로서 ‘여성친화도시’가 시행된 것은 주목할 만함. 2012년 현재 30여개 시군구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받음.

나. 기본 방향

- 성평등을 위한 정책도구의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 등 정책의 성 주류화를 위해 실행되는 정책도구들이 정책 현장에 안착하고 실질적인 정책개선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실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절차, 운영방식의 개선, 추진주체의 역량 향상

등을 통해 질적인 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정책개선반영률을 높여가야 할 것이며, 성인지 예산 제도를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예산에 대한 성인지 분석이 예산 편성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의 효과적 연계가 요청되며, 기초자료로서 성인지 통계의 체계적 생산과 관리가 필요함.

- 또한 전국 16개 지역으로 확대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여성친화도시의 실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통합적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 성평등 정책 추진주체 역량강화

-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정책 추진 주체의 역량 강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강화를 통해 정책 담당자들이 보다 책임감있게 성인지 정책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고,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정책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이 확대되면서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성인지 교육 및 자문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함.

○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성평등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조정기구를 통해 개별 부처가 성평등 목표를 정책에 통합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가 필요함. 정책조정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정기구의 위상을 강화하고, 조정체계를 정비하며, 각 부처의 성평등 정책 추진을 정부 업무 평가와 연계하고, 국가 성평등 지표를 성평등 정책 추진자료로 활용하는 등의 변화가 필요함.
- NGO와 정책협력을 강화하여 성평등 정책의 거버넌스를 실행하고 성평등 정책에 대한 대중적 요구를 수렴해 나갈 필요가 있음. 시민단체의 성장은 여성들의 역량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성평등 의식 수준을 향상 시킴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강화를 위한 토대 강화로 이어질 것임.

정책 추진역량 강화 및 책무성

성평등을 위한 정책도구의 내실화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

성평등 정책 추진주체 역량강화

-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
-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
- 성평등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다. 추진계획

7-1. 성평등을 위한 정책도구의 내실화

현안진단

2000년대 중반 이후 여성정책의 가장 큰 변화는 성 주류화 전략이 도입된 것임. 2004년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시범 사업이 실시된 후, 2005년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되어 중앙부처,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2011년 한 해 동안에만 2,954개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루어졌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통해 2012년부터는 사업 외에도 법령과 중장기 계획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도입하였음. 또 2010년 예산부터는 중앙부처에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어 2012년의 경우 34개 기관이 254개 사업에 대한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했고, 2013년 예산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됨.

이와 같이 성 주류화 전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인지 정책도구가 충분히 정착되어 실효성을 발휘하는 단계에 이르지 않는 것임.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서가 형식적 수준에서 작성되거나, 과제 성과가 분석의 질보다는 분석과제의 수 확대에 집중되거나, 또 정책 개선안이 제안되더라도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등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남. 성인지 예산의 경우도 수혜 분석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연계되지 않음으로서 예산에서 정책 맥락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음.

그 동안 성인지 정책 도구를 도입하고 확산시켜내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은 분명함. 이제 성인지 정책도구 운영 방향은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정책도구들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내실화를 기하고 정책 개선 효과를 산출해내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임.

7-1-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기반 강화(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조정을 위한 성 주류화 위원회(가칭) 설치(신규, 중점)
 -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사업 선정, 수행 과정,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등 성 주류화 업무의 부처간 총괄·조정을 위한 상설 기구로 성 주류

- 화 위원회(가칭)를 설치함
 - 기구의 위상, 성격, 규모 등은 연구용역을 통해 구체화함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및 16개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인력 보강 및 재정 지원 확대
 - 센터 종사자들이 성인지 예산, 여성친화도시 사업 등 성 주류화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 마련

7-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여성가족부)

-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신규)
 - 성평등 목표 실현에 영향력이 큰 정책 과제에 대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파급력이 큰 국가 주요 시책에 대하여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
 - 대상사업 선정, 전문가 선정, 평가 결과의 반영 등에 대해서는 위 의 성 주류화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거치도록 함.
 - 분석평가결과를 의무적으로 공표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제도 도입(신규)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개선 실적을 의무적으로 공표하도록 하여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책무성을 강화함.
 -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 의무를 성별영향분석평가 법 시행령에 명시함.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중점)
 - 성인지 예산 대상 과제 선정 절차 개선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 정책 중 성인지 예산서 작성으로 이행 가능한 과제 선별
 - 성인지 예산서 지침 개선하여 예산의 성별 수혜 격차에 대한 분석 등을 지침에 반영
- 심층 성인지 예산 분석의 도입(중점, 신규)

- 사업의 편익이 직접 가시화되지 않거나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에 대해 전문가 심층 분석을 통해 성별 효과 분석
- 예산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중 전문가 분석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심층 분석
- 다부문·다부처에 걸친 사업 예산에 종합적 분석을 위해 전문가 심층 분석
-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신규)
 -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주민참여예산과 성인지 예산을 연계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 참여위원 예산 학교 프로그램에 성인지 예산 교육 포함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에 성인지 예산 특별 소위원회 구성하도록 규정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시 참여위원 중 여성이 40%미만이 되지 않도록 규정

7-1-4.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통계청, 지자체)

- 부처별 성인지 통계생산·점검체계 구축(중점, 신규)
 - 부처별 행정통계, 보고통계에 성별 분리 여부 점검
 - 보고서식의 성별 구분 점검
 - 성별분리통계 생산 매뉴얼 보급
 - 성인지 통계 생산자 자기점검리스트 보급 및 활용
 - 성별분리통계 활용 지침 보급
- 통계 공표시 성인지통계 생산 확대
 - 통계 공표시 주요항목별로 성별 구분 조사 및 공표되도록 통계관련 법령에 반영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 중앙부처별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해당 정책 분야의 성별 현황과 성평등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서 성인지 통계 보고서를 발간하여 지역 성평등 수준과 특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

- 국가 성인지통계품질진단사업 실시(신규)
 - 국가 성인지통계품질진단사업을 통해 국가승인통계의 조사 기획, 표본 설계, 공표, 발간 등 통계 생산 과정 전반에 대해 성인지 분석 및 개선
 - ※ 국가 통계품질진단사업 실시와 별도로 성인지 통계 품질진단사업 실시 필요 (2년 주기)

7-2. 성평등 정책 추진주체 역량강화

현안진단

성평등 정책이 잘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와 같이 책임을 맡은 담당기구의 역할만이 아니라 제반 부처와 기관에서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하고 관련 주체들 간의 협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함.

성 주류화 전략이 추진되면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이 확대되는 등 관련 주체들의 역량 강화 및 협력 구축을 위한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어려움과 과제에 직면해 있음. 성인지 정책 도구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 공무원의 역할이 중요함. 따라서 고위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등 고위 공무원의 성평등 정책 책무성에 대한 요구가 많지만 고위 공무원의 관심과 참여는 여전히 저조한 상황임. 또 일반 공무원에 대한 성인지 교육 횟수가 그간 크게 확대되었지만 성인지 교육의 접근성이 낮은 분야가 여전히 있으며, 성인지 교육이 보다 전문화되어 공무원들의 정책 영역의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문가 집단은 성평등 정책에 대한 논리를 제공하고, 교육자 및 자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성평등 정책 추진에 기여해왔지만, 전문 인력의 규모가 성인지 정책의 확산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며, 때문에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과정 역시 충분히 기능하고 있지 못함. 성인지 교육 전문강사와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를 전문적으로 양성하고, 또한 전문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에 성인지 정책이 반영되는 등 전문인력 양성의 체계화가 요청됨.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여성가족부, 통계청)

- 고위직·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중점)
 - 중앙 및 지방 공무원 교육원에 고위직 공무원 교육프로그램에 성인지 정책 과목 포함
 -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장·차관급 특별교육에서 성인지 교육 실시
 -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장 워크숍에서 성인지 교육 실시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
 - 산하기관이나 사업소와 같이 성인지 교육의 사각지대가 될 우려가 있는 영역의 인력까지 성인지 교육에 수용할 수 있도록 대상 확대
 - 교사 및 교육행정 공무원 대상 성인지 교육
-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신규)
 - 통계 생산자를 위한 성인지 통계 생산 교육, 기획 단계에 초점을 맞춘 성인지 정책 기획 교육, 정책개선 추진 및 관리에 대한 교육 등
 - 복지, 보건, 건설, 교통 등 해당 분야별로 공무원 성인지 교육
 - 통계교육원 등에 성인지통계과정 개설
- 여성정책담당부서 및 성인지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 성인지 정책 담당 부서 전문성 강화 교육
 - 여성정책담당부서 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
 -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 워크숍

7-2-2.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여성가족부)

-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중점, 신규)
 -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 마련하여 전문성 갖춘 강사 인력 양성
 - 전문 강사 자격 기준의 마련
-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중점, 신규)
 -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체계적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컨설턴트 자격기준 마련
- 성인지 교육 교재 개발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신규)
 - 성인지 교육 교재 개발 및 평가
 - 성인지 컨설팅 매뉴얼 개발

-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체계화(신규)
 - 대학 교과과정에 성인지 정책 이해와 실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장려

7-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현안진단

여성정책의 궁극적 목적은 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지만 우리 사회는 성평등 목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높지 않음. 여성정책은 ‘여성’의 지위를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서 여성과 남성에 대한 사회적 규범과 규범에 바탕을 둔 사회 질서를 변화시키는 것임. 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여성정책은 여전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과 관련이 있는 정책에 한정되어 이해되는 경향이 있음.

여성정책이 당면한 주요 과제는 성평등 목표를 분명히 하고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 기반을 정비하는 것임. 그동안 성평등을 추진하기 위해 새로운 제도가 빠른 속도로 도입되었지만 성평등 목표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제대로 자리를 잡지는 못했음. 성평등이 국가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성평등 목표가 제반 정책에 통합되고 각 정부 부처가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책무성을 가지도록 정책 조정 기구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하고, 지속적으로 성불평등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 추이를 점검·관리해 나가야 할 것임.

한편 시민단체는 성평등 정책을 추동하는 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시민단체의 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음. 성평등 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무원, 전문가, NGO가 협력하는 삼각 연대가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함.

또한 여성단체와의 협력체계가 여성단체를 지원하거나, 정책수행의 협조자로서 참여시키는 수준에서 벗어나 정책입안, 수행 및 평가에 이르는 전과정에 주체로서 참여시키고 협력하는 여성정책거버넌스의 구현이 요구됨. 그런 의미에서 ‘여성친화도시’는 새로운 거버넌스 모형이 될 가능성을 갖고 있으며 2008년부터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시작해서 2012년 현재 총 30개의 도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음. 앞으로 지역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여성·가족의 삶과 지역사회 모두를 변화시키는 新지역여성정책거버넌스가 되도록 지속적인 보완과 컨설팅이 요구됨.

7-3-1.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여성가족부)

- 「여성발전기본법」 개정(중점)
 -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하여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성평등 사회를 향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성평등 정책에 대한 정부의 책무성을 강화
 - 여성친화도시, 국가성평등 지수 등 새롭게 추진되는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중점)

7-3-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중점)
 - 각 부처가 성평등 실현을 위한 과제를 수용하고 협의할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도록 여성정책조정회의를 개편, 분과위원회 및 여성정책기본계획 이행 점검반 운영 등 조정역량 강화
-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및 성평등 정책 전담기구 설치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성인지예산 등 운영체계와 연계 강화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의 성주류화(신규)
 - 중앙부처 정부업무평가에서 특정평가의 하나인 “정책관리 역량” 평가에 성평등 정책 책무성을 지표로 포함.
 - 성평등 정책 책무성 지표에 장·차관 및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 및 개선실적, 성인지 예산 편성 실적, 공무원 성인지교육 실적 등을 포함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양성평등 추진실적” 지표에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및 고위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이수시간을 포함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지표에 성인지 교육실적 반영 시 소규모 심층교육인 경우 교육인원수 산정에서 가산점 부과
-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신규)
 - 중점 관리 지수 설정 및 해당 지수 개선을 위한 정책 점검, 중점관리 지수와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의 연계 등 체계 구축

- 국가 및 지역성평등지표에 대한 홍보 강화

7-3-3. 성평등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여성가족부)

- 정부·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운영 및 활성화(중점)
 - 여성노동, 성, 가족 등 주제별 연석회의 구성
 - 연석회의에는 시민단체, 전문 연구자 등이 참여
 - 여성정책을 시민단체 및 전문가와 공유하고 정책에 자문 및 토의 기능
 - 연석회의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시민단체의 정보 접근성 높임
- 여성단체공동협력 내실화 및 성평등정책 연계성 강화
 -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의 확대 및 체계화
 -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 관리체계의 개선
 - 공동협력사업 과제를 통해 시민단체가 성인지 정책에 대한 활동가 교육, 성인지 정책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 성 불평등 정책 개선 건의센터 운영(신규)
 - 정부 정책에서 성불평등하다고 여기는 부분에 대해 정책 개선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건의 센터를 운영
 - 정책 개선 건의 센터를 통해 수합된 건의 내용 중 필요한 경우 각 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분석과 연결
-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성평등사회 논문 공모(신규)
 - 대학생과 대학원생이 성평등사회에 대한 전망을 고민할 수 있도록 논문 공모

7-3-4.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신규)
 - 지역의 산업 구성 및 도시화 진행률이 상이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시형, 도농 복합형, 농촌형, 여성 친화도시 사업 모델 개발
 - 공동체의 재생을 통해 안전과 돌봄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도시형 마을 공동체 모델 개발 지원
 - 가족친화환경 조성 노력을 고려하도록 추진
-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중점, 신규)

- 여성친화도시 지정 도시의 공동사업 및 지역별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 지원
-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도시에 대한 이행점검을 통해 추진실적이 우수한 도시 사례 발굴 및 홍보
- 여성친화지정도시 간 협의체인 ‘여성친화지정도시 협의회’ 활동에 대한 지원
- 여성친화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신규)
 -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례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여성친화도시 관련 정보 제공

라. 성과지표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7-1. 성인지 정책 도구의 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정책개선실적 공표 과제수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 100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권고 반영률	(정책개선권고 이행 과제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과제수)×100
7-2. 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구축	
고위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실적	고위직 공무원 교육 참여 시간의 합계 (자료: 정부업무평가 보고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실시 실적 및 교육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수료자 만족도 조사 평균값
전문가 양성 교육 실적 및 교육 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7-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국가성평등지수 지수변화 (전체 값, 중점 관리지수)	국가성평등지수 값
	중점 관리 영역의 지수 값 (경제활동, 복지, 안전)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개최건수	개회건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만족도	각 선정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표 대비 이행률	여성친화도시별 사업 이행률의 합 / 여성친화도시 수



부 록

1. 정책과제 일람표	173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184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191

부록 1. 정책과제 일람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activation) 지원	1-1-1 청년여성 취업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역 고졸 여성 취업 지원 ▪ 여대생 경력개발 지원 확대 ▪ 여학생의 공학계열 진출 지원 ▪ 청년층 창업지원 확대 ▪ 공공부문 청년인턴 정규직 전환 추진
	1-1-2 초기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경력단절 여성 조기 복귀 프로그램 실시 ▪ 여성과학기술인 리더너 사업 확대
	1-1-3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 연소노인 직업역량 강화사업 ▪ [신규] 중고령 여성 사회참여 활동지원
	1-1-4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일하기센터 사업 규모 확대 ▪ 새로일하기 사업 평가지표 개선 ▪ [중점] 미래 희망직종 개발 사업 실시 ▪ [중점] 구인수요 정보제공 사업 실시 ▪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 과학기술분야 연구소 및 기업내 직장보육시설 확대 및 육아 지원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보험법 개정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중점] 비정규직 모성보호 개선
	1-2-2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고용상 성차별 및 성평등 지표개선 모니터링 센터 설치
	1-2-3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업무배치와 승진모니터링 강화 ▪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성과 평가개선과 사후조치 강화
	1-2-4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촉진 ▪ [신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가장·한부모 통합지원센터 ▪ 빈곤층 여성 활성화 지원사업
	1-3-2 농어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여성의 경영능력 제고와 전문화를 위한 훈련프로그램 실시 ▪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발굴 ▪ [신규] 여성농민의 법적 지위 향상을 위한 농가경영협약 지원제도 도입 ▪ [신규] 농어촌 비농어업 종사 여성 취업지원 사업
	1-3-3 다문화 여성 취업 역량 강화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제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1-4 여성 협동 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돌봄 협동조합 등 지원 강화
	1-4-2 여성창업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기업 금융지원 할당제 실시 ▪ 지식창업 및 1인 창업의 여성참여 확대 ▪ 취약계층 여성창업 지원 확대

2. 돌봄 지원과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2-1 자녀양육지원의 체계화	2-1-1 보편적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실수요자를 위한 우선순위 기준 정비 및 실효성 강화
	2-1-2 합리적 보육료지원체계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전일제 및 시간제 이용비용 차등화 ▪ 양육수당 개편방안 검토 ▪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의 부모부담 완화
	2-1-3 보육서비스 서비스 질 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 강화 ▪ 수요자참여 및 운영의 투명성 강화 ▪ 민간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2-1-4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보미의 자격관리 및 보수교육강화 ▪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소득기준 완화 ▪ 방과후보육 공급확대 및 전달체계 정비 ▪ [신규] 민간베이비시터 관리강화 ▪ 공동육아나눔터 설치확대
2-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2-1 돌봄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국공립 요양보험기관 확충 ▪ [신규] 요양인력 임금가이드라인 제공 및 하한선 마련 ▪ [신규] 돌봄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및 4대보험 적용 등 처우개선 ▪ 돌봄노동자의 자격관리 강화
	2-2-2 돌봄서비스 체계적 정보망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돌봄서비스 원스탑정보망 구축·운영
	2-2-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무급가족돌봄자 휴식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간호휴직제도 실행점검 및 활성화방안 모색
2-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2-3-1 근로시간 단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근로시간단축을 위한 사회 및 직장문화 개선사업 ▪ [신규] 근로시간대 조정을 위한 유연한 근로형태 발굴 ▪ [신규] 여성다수 업종의 특례업종 축소를 위한 법개정 ▪ 단시간근로 청구권의 확산
	2-3-2 유연근로제도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공공기관 의무적 유연근로제 유형별 실시 ▪ 유연근로제 유형별 인사관리 매뉴얼 개발 ▪ 스마트워크 지침 마련 및 민간기업 스마트워크 확산
	2-3-3 남성의 육아참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의 남성 사용유인 제고를 위한 급여수준 인상 및 공공부문 우선실시 촉진 ▪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자료축적 및 유급일수 확대 ▪ 아버지 학부모회참여 및 아버지교육 확대
	2-3-4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전후휴가 급여 90일분 지원 대상기업 확대 ▪ 대체인력장려금 인상 및 대체인력 구인구직 네트워크 확충
	2-3-5 가족친화 지역사회 기반 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지역사회 맞춤형 EAP 실시 ▪ [신규] 가족친화인증의 지자체 평가 반영 ▪ [신규] 가족친화인증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사업과 연계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3-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대응 및 개편·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성폭력피해 신속대응을 위한 지원시스템 개편 및 확충 ·가정폭력피해 보호 및 자립지원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편·강화
	3-1-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자립지원 강화 ·폭력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3-1-3 성매매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매매피해자 범위 확장을 위한 법 개정 ·[중점] 성매매피해자의 통합적 사례관리체계 구축 ·성매매피해자 특성별 지원 강화 ·현장활동가의 신변안전대책 마련
	3-1-4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지원기관 종사자 양성 및 훈련체계 정비 ·지원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시스템 마련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제결혼 및 입국절차 개선 ·주요상대국에 국제결혼이민관 파견 ·불법 국제결혼중개업 단속 강화 ·[중점] 북한이탈여성의 인권보호를 위한 국제적 공조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등 유입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인신매매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E-6 비자 여성노동자 보호 강화
	3-2-3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이민자의 체류자격 제도 개선 ·북한이탈여성의 통합 및 적응지원 강화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1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중·고 대상 통합적 인권교육 추진기반 정비 ·지역사회 주민 및 각종 시설종사자 대상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중점] [신규]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을 위한 인프라 구축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기구 설치 ·안전한 학교 환경 구축
	3-3-2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인권·안전의식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디어 활용 전략 마련 ·여성폭력방지 위한 공익광고 제작·송출 ·여성폭력 관련 대중매체 가이드 라인 제작·배포
	3-3-3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지역사회 여성폭력방지 및 신속대응을 위한 지역 연대 활성화
	3-3-4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업, 학교, 공공기관 등에서의 성희롱 방지조치 마련 ·성희롱 사건처리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성희롱 예방교육 집행을 활성화
3-4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3-4-1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해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가정폭력범죄 처벌의 실효성 제고

176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3-4-2 성폭력·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수사·재판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방지 ▪ 언론·인터넷 등에서의 2차 피해 근절대책 수립
	3-4-3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개선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평가 및 내실화 ▪ 성범죄자 재범방지교육 확대 및 프로그램 개선
3-5 성매매방지 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3-5-1 성매매 알선자 단속·처벌의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단속 및 처벌강화 ▪ 성매매 알선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신규] 식품위생법상 유흥접객원 규정 삭제 ▪ 인터넷 등 전자매체에 관한 규제강화
	3-5-2 성구매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교육의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구매 초범자 존스쿨 교육의 내실화 ▪ 성구매 재범 및 상습범에 대한 처벌 강화
	3-5-3 해외 성매매에 대한 대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로 여성을 송출하는 알선업주 단속 및 처벌강화 ▪ 해외 성구매자에 대한 관리강화
3-6 피해자 보호·집행· 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3-6-1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폭력방지 관련 법제 정비 ▪ [중점] [신규] 여성폭력관련 피해자 지원을 위한 통합체계 구축
	3-6-2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관련 국가통계 생산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대상 폭력통계센터 설치·운영
	3-6-3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점검단 운영 강화 및 체계화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4-1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4-1-1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및 임의가입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 [중점] 첫째자녀까지 출산크레딧 확대 적용 및 돌봄노동에 대한 크레딧 도입 ▪ [신규] 유족연금의 최저기준 마련
	4-1-2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노령연금의 소득보장성 강화 ▪ [중점]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등 타공적연금에서의 분할 연금제도 도입
	4-1-3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의무자 가족관계 단절 인정기준 확대 ▪ [중점] 가족형태별 급여체계 도입방안 검토
	4-1-4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활사업 프로그램의 성인지적 운영 ▪ [중점] 각종 근로연계복지제도 간 연계성 강화
4-2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2-1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고령 여성노인 맞춤형 재무, 여가, 생활, 취업, 건강 등 노후설계·생애설계 서비스 제공 ▪ [중점] 독거여성노인의 보호 및 생활지원 확대
	4-2-2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종 및 직업사회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여성장애인 생애주기별, 장애유형별 요구분석 및 맞춤형 지원
	4-2-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취업 및 양육 지원
	4-2-4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수용자의 성폭력방지 및 모성권보호 강화 ▪ 여성수용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운영 강화
4-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현실화 ▪ [중점] 양육비 이행의 실효성 확보 ▪ 재가한부모를 위한 양육·고용지원 정보전달체계 구축 ▪ 청소년한부모 교육·주거지원 확충
	4-3-2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결혼이민자의 언어적 특수성에 대한 긍정적 가족 환경 조성 ▪ 다문화가족의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4-3-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파악 및 안심지역 설치·운영 ▪ [신규] 저소득 청년여성을 위한 공동체 커뮤니티형 소형 임대주택 보급 ▪ [중점] 혈연과 혼인 이외 생활동반가족 실태 및 지원대책 조사 연구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4-4-1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건강 관련 연구수행 지원 및 여성건강 실태조사 실시 ▪ [신규] 의료서비스 인력에 대한 젠더감수성 교육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여성건강 관련 법, 제도적 기반 마련 ▪ [신규] 여성건강마을 시범운영
	4-4-2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청소년기 여성을 위한 여성적합형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건강한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신규] 과도한 다이어트로 인한 식이장애 청소년 자활 지원 ▪ 청년기 조기질병발견을 위한 국가건강검진 확대 ▪ [신규] 자녀양육기 여성을 위한 공공생활체육시설에서의 돌봄서비스 제공 ▪ 갱년기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소 프로그램 확충 ▪ 노년기 여성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방문보건사업 확대
	4-4-3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산전후 의료관리 지원 강화 ▪ [중점] 민간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및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 및 시범운영 ▪ [중점] 피임교육의 공식화 및 양성평등 성교육 확산 ▪ 사회경제적 사유의 임신중절 논의 확산
	4-4-4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여성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 [신규] 산재보험의 산업별,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통계생산, 공표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 마련	5-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출직 의원 후보 의무할당 법제화 · 비례대표 여성의원 비율 제고 ·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 확대 · 국회 주요 특별위원회 여성위원 비율 확대
	5-1-2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여성정치 후보자 및 실무인력 발굴·육성
	5-1-3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평등한 정치문화 수준 향상교육 확대 · [신규] 성평등한 국회조성을 위한 제도도입
5-2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2-1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관리자 임용목표제 적용 확대 · 주요 보직 참여기회 확대 · 자기개발형 보직순환제 및 보직기간 제한제 등 인사관리 시스템 개선 · 맞춤형 역량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5-2-2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의 여성비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기업·준정부기관 여성임원 목표제 도입 · [중점] [신규]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평가시 여성대표성 및 가족친화 관련 지표 포함 ·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추천위원회 여성위원 30% 비율 의무화
	5-2-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위원회 여성목표비율 상향 · 여성인재에 대한 지속적인 발굴 및 인재DB 등재관리
	5-2-4 대학의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립대 양성평등 임용조치'의 실효성 제고 · [중점] [신규] 대학 평가 및 사업의 선정 심사 시 여교수 임용 비율 등 젠더 관련 지표를 삽입 · 교장·교감 임명에 여성 비율 목표제 지속 추진
	5-2-5 군대 및 경찰 등 특수직에서의 여성 진출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사관학교 및 경찰대학의 여학생 정원 확대 · 특수직 내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 성별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개선 및 모니터링 지속
5-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5-3-1 통일 관련 의사결정과정 여성의 참여 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분야에서의 여성의 참여 증진 · 통일 대비 여성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활성화
	5-3-2 남북여성 공동의제발굴 활성화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대비 남북한 여성교류 확대를 위한 공동의제 개발 민관협의 시스템 구축 · 남북 여성 공동의제 발굴을 위한 지원 강화 · 통일 및 평화교육 확대
	5-3-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행동계획 수립 · [신규] 성평등한 유엔 평화유지군 활동 이행
	5-3-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군위안부 피해 역사 정립을 위한 국제협력 강화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5-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5-4-1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도상국의 여성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프로그램의 확대 ▪ 수원국 여성대상 사업 아이템 발굴 및 중장기 사업 실시 ▪ [신규] [중점] 한국 여성정책의 발전 경험을 공유하기 위한 (가칭)“여성정책 발전 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s)”의 개발 ▪ [신규] 개발도상국 여성 교육을 위한 가칭 글로벌 여성교육센터 등 설치·운영
	5-4-2 Post-부산,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정부-민간협력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글로벌 모니터링 10개 지표 중 ‘성평등과 여성 역량 강화’를 이행하기 위한 세부지표 개발 ▪ [신규] ‘성평등과 여성 역량강화’지표를 이행하기 위한 정부-민간 협력체제 운영
	5-4-3 Post-MDG 대비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MDGs 달성을 위한 한국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중간점검 및 발전방안 제언 ▪ UN Women과의 협력 제고(분담금 제공, 협력사업의 지분 확보, 한국여성의 일정비율 참여 보장 등) ▪ [신규] 2015년 이후(Post-MDG) 새로운 원조 목표 개발 활동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활동에 여성의 적극적 참여 보장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6-1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6-1-1 과도한 미용성형산업 광고 및 지원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중점] 여성건강 유해분야 산업에 대한 지자체 및 공공 지원 제한
	6-1-2 고용 시 용모 차별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시 표준이력서 채택 확대 모집공고 시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외모에 대한 언급 금지
	6-1-3 공공기관부터 성평등문화 실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장 내 인권을 존중하는 성평등한 언어 사용 추진 직장 내 평등문화 확산 활동 지원
	6-1-4 성평등한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양성평등가족제도 확립을 위한 법제도화 기반 조성 일상에서 실천하는 평등문화 사례 발굴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시민포럼 운영 평등문화 확산을 위한 청소년포럼 운영
6-2 성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생태계의 성평등 체감도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인권과 성평등 감수성 제고를 위한 중앙 및 지자체의 공익 선전 시민참여 성인지 관점 매체 모니터링 및 환류체계 구축 (온라인클린센터) 매체 별 심의기구의 성인지 감수성 고양 및 성별영향분석 평가 실시(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미디어 정책연구, 성인지 관점 모니터링 지표 개발
	6-2-2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성평등 확산에 기여하는 작은 미디어 운영 및 제작 지원 성평등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 성평등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 공모
	6-2-3 여성문화예술인 인권보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여성문화예술인 생활개선 대책 [신규] 여성문화예술인 인권보호 [신규] 청소년연예인(연습생) 인권감수성 교육 E-6 비자 여성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및 감독
	6-2-4 정보 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SNS 사용에서 여성혐오와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취약여성의 정보접근성과 역량 제고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6-3-1 제3섹터 여성 활동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지역기반 대안경제영역의 여성활동 지원 지역의 돌봄 공동체 배양 및 활동 육성
	6-3-2 지역 여성운동 역량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지역여성운동 네트워크 지원
	6-3-2성평등한 문화 발굴·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여성문화유산의 계승과 보존을 위한 국립여성사박물관 추진 [중점] 지역여성문화유산 전국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신규] 지역·계층 격차를 줄이는 여성문화예술 활성화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6-4-1 성 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점] 양성평등교육 전담 조직 및 인력 확보 [신규] 시·도교육청별 양성평등 연구학교 의무 시행 및 공동 협의체 구성·운영

182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안) 수립 연구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양성평등 관점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학교의 양성평등 자체진단 결과 분석 및 우수학교 포상
	6-4-2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학교단위 교육과정의 성평등 관점 확립 ▪ 교과서 집필과정에서의 성평등 기준 확립 ▪ [신규] 교과서의 성차별적 교육내용 지속적 발굴 및 개선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운영
	6-4-3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평가영역으로 양성평등 문항 삽입 ▪ 예비교원의 양성평등 교육 확대 ▪ [신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성평등 교원연수의 실효성 제고
	6-4-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 운영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의 양성평등한 학교 운영 책무성 제고 ▪ [중점] 대학정보공시 모든 현황 지표에 성별 분리 통계 제시 ▪ [신규] 대학내 보육시설 설치 확대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7-1. 성평등을 위한 정책도구의 내실화	7-1-1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기반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조정을 위한 성주류화 위원회(가칭) 설치 · 중앙 및 시·도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기능 및 역량 강화
	7-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강화 · [신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및 개선 실적 공표제도 도입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성인지 예산 제도 정비 · [중점] [신규] 심층 성인지 예산 분석의 도입 · [신규] 주민참여예산-성인지 예산 연계 체계 구축
	7-1-4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부처별 성인지 통계생산·점검체계 구축 · 통계 공표시 성인지 통계 생산 확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인지 통계 간행물 발간 및 웹서비스 · [신규] 국가 성인지통계품질진단사업 실시
7-2. 성평등 정책 추진주체 역량강화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고위직·관리직 공무원 성인지 교육 실시 · 성인지 교육 대상 확대 · [신규] 담당 업무별 특성화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여성정책담당부서 및 성인지 정책 담당 공무원 전문성 강화
	7-2-2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신규] 성인지 교육 전문 강사 훈련 프로그램 실시 · [중점] [신규] 성인지 정책 컨설턴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신규] 성인지 교육 교재 개발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 [신규] 대학교육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양성 체계화
7-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7-3-1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여성발전기본법」 개정 · [중점] 성차별 금지 및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7-3-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정책조정기구의 기능 및 위상 강화 · 여성정책책임관, 여성정책협조부서 등 정책 총괄·조정체계 정비 · [신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평가의 성주류화 · [신규] 국가 및 지역 성평등지수 활용도 제고
	7-3-3 성평등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점] 정부·시민단체 연석회의 구성·운영 및 활성화 · 여성단체공동협력 내실화 및 성평등정책 연계성 강화 · [신규] 성불평등정책 개선 건의센터 운영 · [신규] 대학생 및 대학원생 대상 성평등사회 논문 공모
	7-3-4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 다양한 여성친화도시 모델 구축 · [중점] [신규] 여성친화도시 조성 지원 및 이행점검 체계 구축 · [신규] 여성친화도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부록 2. 정책과제별 성과지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성과지표	출처 및 산식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activation) 지원	
전문계고 졸업생 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통계자료
청년층 경력개발 사업 건수	
경력단절 5년 미만 여성들의 취업지원 수혜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여성 중고령자 취업훈련 참여율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새로일하기 센터 및 예산 증가율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자료
신규직종 발굴 및 시범사업 건수	
지역별 업종별 여성 관리자 네트워크 사업 건수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법 개정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국회입법자료
고용보험 관련 법 개정	
고용지원센터의 비정규직 대상 지원건수	
모니터링 센터 설치 실적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통계자료
적극적고용개선조치의 개선 여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여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수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고용복지기금 마련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여성가장/ 한부모 취업지원 통합지원센터 수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통계자료
취약계층 취업지원 수혜자 수	
농어촌지역 여성 취업지원 사업 수	농림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여성농어업인 경영성공사례 DB 건수	
여성결혼이민자 학력수준 제고 및 일자리 지원 사업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여성중심 협동조합 지원건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여성기업 금융지원건수	중기청 통계자료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2-1. 자녀양육지원의 체계화	
국공립보육시설 보육분담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국공립시설 이용아동수/ 보육시설 이용아동수) X 100
영유아육아지원시설 이용율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교육부 교육통계 (보육시설 및 유치원 이용아동수/ 0~5세 아동수) X 100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수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통계
초등돌봄교실 이용아동수	
2-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국공립장기요양기관 비율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사회서비스 인력 이직률	(집계필요)
2-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근로시간제도 법 개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단시간근로청구권 건수 증가율	
유연근로제 실시 공공기관 수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유연근로제 활용 근로자수 비율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통계자료
공공부문 남성육아휴직자 비중	
지역사회 기반 EAP 지원 건수	여성가족부 통계자료
여성친화도시 선정 기준에 지표반영여부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3-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성폭력피해자 지원실적	상담기관의 성폭력 상담건수의 총계
폭력피해이주여성 상담실적	연간 이주여성을 위해 제공한 상담건수
제도개선 실적	성매매피해자지원사업 관련 법령 제·개정, 제도 개선 관련 지침 및 보고서, 관련 부처 협의사항, 성매매 피해자 보호사업 관련 제도개선 건수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불법 국제결혼중개업 단속건수	여성가족부 자료
E-6 비자 여성노동자 모니터링 현황	법무부, 고용노동부 자료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통합적 인권교육 실시율	여성가족부 자료
청소년성문화센터 이용자 만족도	사업실적 결과보고서, 만족도 조사 후 100점 환산
범죄의 위험에 대한 인식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3-4.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성폭력사범의 처분결과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가정폭력사범의 처분결과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공개사이트 이용자수	성범죄자 알리미 접속통계, 성범죄자 알리미 사이트 연간 방문자 총수(365일)
3-5.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성매매범죄 기소율	법무부, 「법무여성통계」
성매매범죄자 1심 선고현황	
성매매사범의 처분결과	
3-6.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여성대상 폭력 통계센터 구축 현황	여성가족부 자료
아동·여성보호대책 추진점검단 등에 대한 모니터링 현황	여성가족부 자료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4-1.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여성 국민연금 가입율	국민연금관리공단, (여성가입자/ 전체가입자) X 100
여성노인 빈곤율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통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빈곤통계연보, 65세이상 여성노인 빈곤율
기초보장 여성수급자 자활성공율	보건복지부, (여성자활성공자/ 여성자활사업참여자) X 100
4-2.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독거노인돌봄 기본서비스,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미지원건수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통계
어울림센터 여성장애인당사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참여자수	
여성북한이탈주민 상담프로그램 지원건수	
여성수용자 자립자활 상담프로그램 지원건수	
4-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저소득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액, 대상자수	여성가족부 통계
비양육부모의 정기적 양육비 이행율	여성가족부 비정기조사, 향후 정기 실태조사로 대체 (정기적으로 양육비 수급한 한부모 수 /양육비지급판결받은 한부모수) X 100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여성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여성 연령별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여성노인, 여성청소년(만12-18세))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10대, 70대이상 여성 규칙적 체육활동 실천율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규칙적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비율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생활체육시설 비율	문화체육관광부 통계
여성 스트레스 인지율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영양조사
인구 10만 명당 여성 자살사망률	통계청, 2010년 사망원인통계.
공공산후조리원 수	보건복지부 통계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 마련	
선출직 의원후보 의무할당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 여성후보자 공천건수	중앙 선거관리위원회
5-2.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여성공무원 관리직 교육훈련 건수	행정안전부
공공기관 관리직 여성임원 임용건수 및 비율	행정안전부
국공립대 여성교원 비율	국공립대 여성 전임교원 수 / 국공립대 전임교원 전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초·중등학교 교장·교감 여성 비율	여성 교장·교감수 / 전체 교장·교감 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사관학교·경찰대학 여학생 비율	여학생수 / 전체 학생수 × 100 국방부, 경찰청
5-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여성의 통일관련 의사결정과정 참여인원수 및 참여 비율	통일부
통일관련 교류협력기구 여성참여건수	통일부
5-4.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성인지적 ODA사업 예산비율	외교통상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6-1.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조성	
과장광고 모니터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중 성형관련 광고에 대한 의식조사 항목 추가 - 위 조사의 소셜커머스 이용현황에 성형 관련 항목 신설 (현재는 '미용'으로 조사)
법 제도 정비 실적	- 가족 개념 불일치로 인한 불편 개선
생활시간 조사 변동율(가정관리 및 여가시간 변화)	- 통계청 『생활시간조사』 기혼남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기혼여성 가정관리·가족보살피기 요일평균시간 * 100 - 여성가족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중 가정생활 부문
6-2. 성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술 환경 조성	
여성문화예술인 실태조사	- 『성별문화인력 통계 디비 연구』(+2008년부터 분야별 격년 실시) 결과 활용(문화부)
정보화교육 실적	-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이용실태조사』(매년)중 인터넷이용현황 부문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지역공동체활동 여성참여 비율	-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조사항목 중 19.자원봉사활동 참여율 성별지표 - 통계청 『사회조사』(각년도) -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조사항목 중 공동체, 사회참여 조사 부분 반영(매5년)
지역여성운동 네트워크 지원 실적	- 각 지자체 통계(예산 및 건수)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시도교육청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비율	양성평등 전담인력 배치 시도교육청 수 / 전체 시도교육청 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고등학교 여학생의 교과선택 비율	[교과별] 여학생 선택건수 / 전체 선택 건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의 보육시설 설치 비율	보육시설 설치 대학 수 / 대학 전수 × 100 교육과학기술부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성과지표	출처 및 수식
7-1. 성인지 정책 도구의 내실화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text{정책개선실적 공표 과제수} / \text{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 \times 100$
특정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권고 반영률	$(\text{정책개선권고 이행 과제수} / \text{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권고 과제수}) \times 100$
7-2. 성평등 정책 추진 주체 역량강화 및 협력구축	
고위직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교육실적	고위직 공무원 교육 참여 시간의 합계 (자료: 정부업무평가 보고서)
공무원 성인지 교육실시 실적 및 교육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육 수료자 만족도 조사 평균값
전문가 양성 교육 실적 및 교육 만족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연간 교육실시 인원수
	교육 수료자 대상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값
7-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국가성평등지수 지수변화 (전체 값, 중점 관리지수)	국가성평등지수 값
	중점 관리 영역의 지수 값 (경제활동, 복지, 안전)
정부·시민단체·전문가 연석회의 개최건수	개최건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에 대한 만족도	각 선정 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값
여성친화도시 사업 목표 대비 이행률	여성친화도시별 사업 이행률의 합 / 여성친화도시 수

부록 3. 정책과제별 주관부서

1.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서
1-1 생애주기별 여성 고용 활성화 (activation) 지원	1-1-1 청년층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행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중기청 행정안전부	-
	1-1-2 초기경력단절 여성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
	1-1-3 여성 연소노인 취업지원 사업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1-1-4 고용지원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
1-2 사회정책 사각지대 해소와 성차별개선	1-2-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고용노동부	-
	1-2-2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여성가족부	-
	1-2-3 고용상 성차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강화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1-2-3 여성 비정규직 활용 감소를 위한 사업추진	고용노동부	-
1-3 대상별 특성에 맞는 역량강화 지원	1-3-1 빈곤층 여성 고용-복지 연계 지원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1-3-2 농촌여성 역량강화 사업	농림수산식품부 여성가족부	-
	1-3-3 다문화 여성 취업 역량강화 사업	여성가족부	-
1-4 여성 협동조합 및 창업지원을 통한 새로운 경제기반 구축	1-4-1 여성 친화적 협동조합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1-4-2 여성창업지원 확대	중소기업청	-

2. 돌봄 지원과 일·가족 양립 기반 구축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서
2-1 자녀양육지원의 체계화	2-1-1 보편적 자녀돌봄지원을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정비	보건복지부	-
	2-1-2 합리적 보육료지원체계 정비	보건복지부	-
	2-1-3 보육서비스 서비스 질 관리 강화	보건복지부	-
	2-1-4 다양한 보육수요 충족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	-
2-2 돌봄의 사회적 분담 강화	2-2-1 돌봄서비스 질적수준 제고를 위한 전달체계 확충 및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
	2-2-2 돌봄서비스 체계적 정보망 구축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2-2-3 가족돌봄자에 대한 지원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
2-3 일·가족 양립을 위한 기반 구축	2-3-1 근로시간 단축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2-3-2 유연근로제도의 확산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2-3-3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교육인적자원부 여성가족부	-
	2-3-4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담 확대	고용노동부	-
	2-3-5 가족친화 지역사회 기반 확립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

3. 여성인권의 보호와 폭력 근절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3-1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내실화	3-1-1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에 대한 신속대응 및 개편·확충	여성가족부	-
	3-1-2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서비스 확대	여성가족부	-
	3-1-3 성매매 피해자의 통합적 지원 강화	여성가족부	-
	3-1-4 피해자 지원기관의 지원역량 및 서비스 질 제고	여성가족부	-
3-2 이주여성 인권보호 강화	3-2-1 국제결혼 등 이주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3-2-2 이주여성의 권리보호 및 성매매 등 유입 방지	법무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3-2-3 한국사회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통합적 지원 확대	여성가족부 법무부	통일부
3-3 여성인권 보호 및 안전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3-3-1 통합적 인권교육 운영 강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3-3-2 미디어를 활용한 여성인권·안전의식 확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3-3-3 여성이 안전한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3-3-4 성희롱 방지조치의 내실화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3-4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 및 수사재판의 실효성 제고	3-4-1 성폭력·가정폭력 가해자 처벌의 집행력 강화	법무부	여성가족부
	3-4-2 성폭력·가정폭력 2차 피해 방지	법무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3-4-3 성폭력가해자 재범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강화	여성가족부	법무부
3-5 성매매방지를 위한 실행력 및 대응력 강화	3-5-1 성매매 알선자 단속·처벌의 실질화	법무부	경찰청
	3-5-2 성구매자 처벌 강화 및 재범방지교육의 내실화	법무부	경찰청
	3-5-3 해외 성매매에 대한 대응력 제고	법무부	경찰청 외교통상부
3-6 피해자 보호·집행·예방의 통합적 추진 기반 마련	3-6-1 통합적 정책추진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
	3-6-2 여성에 대한 폭력 방지 관련 국가통계 생산 체계 구축	여성가족부	지자체
	3-6-3 여성폭력 방지정책 모니터링 강화	여성가족부	-

4. 여성·가족의 복지 및 건강권 증진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서
4-1 여성의 실질적인 노후소득보장 및 탈빈곤을 위한 자립지원 강화	4-1-1 국민연금의 여성친화성 강화	보건복지부	-
	4-1-2 여성의 기초노령연금 및 공적연금 수급권 확보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
	4-1-3 기초생활보장에서의 여성친화성 강화	보건복지부	-
	4-1-4 근로연계복지 프로그램의 성인지성 제고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
4-2 대상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4-2-1 여성노인의 활동적 노후생활 및 취약여성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
	4-2-2 여성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4-2-3 여성북한이탈주민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종합지원서비스체계 운영	통일부 여성가족부	-
	4-2-4 여성수용자 인권보호 및 출소자의 자립지원 확대	법제처 여성가족부	-
4-3 다양한 가족지원 확대	4-3-1 한부모가족지원의 내실화 및 비양육부모 책임 강화	여성가족부	-
	4-3-2 다문화가족의 지원 확대 및 가족문화 개선	여성가족부	-
	4-3-3 가족변화에 대응한 선제적 정책 개발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
4-4 여성의 건강권 증진	4-4-1 여성건강 관련 인프라 구축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
	4-4-2 여성의 생애단계별 건강관리 강화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
	4-4-3 모성 및 생식건강 보장을 위한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4-4-4 일하는 여성을 위한 건강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

5.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처
5-1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 기반마련	5-1-1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 및 의석수 확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행정안전부	국회
	5-1-2 차세대 여성정치지도자 발굴 및 양성	여성가족부	정당
	5-1-3 성평등한 정치문화 조성	여성가족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자체 국회
5-2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5-2-1 여성 공무원의 관리직 진출 확대	행정안전부	-
	5-2-2 공공기관 관리직 및 임원의 여성비율 제고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
	5-2-3 정부위원회 여성 대표성 제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
	5-2-4 대학의 여교수 및 여성 교장·교감 임용 비율 제고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5-2-5 군대 및 경찰 등 특수직에서의 여성 진출 확대	국방부 경찰청	교육과학기술부
5-3 통일과 평화·안보를 위한 여성참여 활성화	5-3-1 통일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여성의 참여 촉진	통일부	-
	5-3-2 남북여성 공동의제 발굴 활성화 기반 마련	통일부 여성가족부	-
	5-3-3 '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통일부	외교통상부
	5-3-4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국제적 공조 및 사회적 인식 확산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5-4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성인지적 수행 및 국제협력네트워크 확대	5-4-1 여성 대상 개발협력사업의 발굴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5-4-2 Post-부산, 글로벌개발협력파트너십 이행을 위한 정부-민간협력 제고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5-4-3 Post-MDG 대비 국제기구와의 협력네트워크 확대	외교통상부	여성가족부

6. 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중과제	소과제	주관부처	협조부서
6-1 미래세대가 건강한 사회문화 환경 조성	6-1-1과도한 미용성형산업 광고 및 지원 제한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6-1-2 고용시 용모 차별 금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6-1-3 공공기관부터 성평등문화 실천	여성가족부	
	6-1-4 성평등한 가족제도 및 가족관계 조성	여성가족부 법무부	
6-2 성차별없는 미디어·문화예 술 환경 조성	6-2-1 미디어생태계 성평등 체감도 향상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6-2-2 성평등 문화를 키우는 미디어 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6-2-3 여성문화예술인 인권보장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법무부 문화관광체육부	
	6-2-4 정보 접근성과 정보역량의 격차 완화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6-3 지속가능한 삶 속의 풀뿌리문화 살리기	6-3-1 제3섹터 여성 활동 지원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지자체
	6-3-2 지역 여성운동 역량강화	여성가족부 지자체	
	6-3-3 성평등한 문화 발굴·지원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6-4 초·중등 및 고등교육에서의 양성평등 관점 강화	6-4-1 성 평등한 학교운영 기반 구축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6-4-2 변화된 교육과정에 대비한 성 평등한 교육과정 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6-4-3 교원의 양성평등 의식 고취를 위한 조치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
	6-4-4 고등교육의 양성평등 운영 강화	교육과학기술부	

7. 정책 추진역량 및 책무성 강화

중과제	소과제	세부과제	협조부서
7-1 성평등을 위한 정책도구의 내실화	7-1-1 성별영향분석평가 총괄·조정을 위한 성주류화위원회(가칭) 설치	여성가족부	-
	7-1-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질적 수준 제고	여성가족부	-
	7-1-3 성인지 예산의 실효성 제고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
	7-1-4 양질의 성인지 통계 생산 및 체계적 관리	통계청 지자체	여성가족부
7-2 성평등 정책 추진주체 역량 강화	7-2-1 공무원 성인지 교육 확대 및 특성화	여성가족부 통계청	통계교육원
	7-2-2 성인지 교육 및 자문 전문인력 양성 체계화	여성가족부	-
7-3 성평등 정책 추진기반 정비	7-3-1 성평등 패러다임 강화를 위한 법제 정비	여성가족부	-
	7-3-2 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 조정 역량 강화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
	7-3-3 성평등정책에 대한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강화	여성가족부	-
	7-3-4 여성친화도시 내실화 및 이행 기반 마련	여성가족부	-